

2009 저작권 연감

KOREA COPYRIGHT YEARBOOK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light blue-grey color with a repeating pattern of small, faint white icons. These icons represent various concepts such as technology (laptops, tablets, smartphones), nature (leaves, flowers), and general objects (gears, tools).

2009 저작권 연감

발 간 사



2009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통합 설립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09년 한해를 뒤돌아 보며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울여온 노력과 그 성과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곧 경쟁력인 지식기반 창조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발전의 원동력이며 문화산업의 토대입니다. 건전한 저작권 환경을 갖추지 않고는 문화의 발전이나 산업의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문화산업 강국을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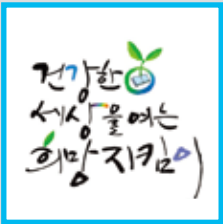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연구 강화, 편리한 저작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해외 저작권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켜질수록 아름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자유로운 생각의 날개를 펴고 꿈과 희망과 용기의 얘기를 그려나갈 수 있는 세상,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환경,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한해의 국내 저작권 정보를 총 망라한 『저작권 연감』을 발간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등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밝고 맑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저작권 CALENDAR	3
발간사	4
2009 저작권 10대 NEWS	6

제1장 |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정책 개관	28
--------------------	----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34
1. 저작권법 제·개정사	34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36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55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59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66
1. 국내 판례	66
2. 조정·중재	84
3. 저작물 감정	94
4. 법률상담	104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108
1. 문화체육관광부	108
2. 한국저작권위원회	108
3. 유관 학회	122

제2장 |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132
1. 보호 정책의 개요	132
2. 침해 현황	134
3. 보호 제도 일반	139
4. 국내 보호 활동	147
5. 해외 보호 활동	163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76
1. 개요	176
2. 교육 내용 및 활동	177
3. 홍보 내용 및 활동	195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207
1. 기술 현황	207
2. 기술 연구 및 활동	217

제3장 |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238
1. 저작권 산업 기여도	238
2.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240
3.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243
4. 시사점	245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246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246
2. 자유이용 사이트	253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263
4. 저작권 등록	275
5. 법정허락	288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00
1. 현황	300
2. 활동	301

부록

2009 저작권 통계	318
1. 심의	318
2. 조정	320
3. 감정	323
4. 상담	324
5. 저작권도서관	329
6. 침해	330
7. 해외 사무소	333
8. 교육	337
9. 홍보	344
10. 등록	346
11. 법정허락	349
12. 임치	349
13. 기타	350

2009 주요 활동	351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351
2. 저작권보호센터	353
3. 저작권 유관 학회	355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66

2009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91
----------------------------	-----

주요 기관 주소록	395
-----------------	-----

저작권법	39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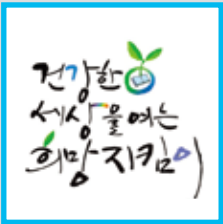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1〉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단속 결과	30
〈표 1-2〉OSP 과태료 처분 결과	30
〈표 1-3〉주요 저작물별 수거·폐기 및 삭제조치 현황	31
〈표 1-4〉ICOP-I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31
〈표 1-5〉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35
〈표 1-6〉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자산권 제한 규정 비교	45
〈표 1-7〉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변화표	54
〈표 1-8〉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현황	58
〈표 1-9〉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가입일순)	61
〈표 1-10〉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65
〈표 1-11〉2009년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79
〈표 1-12〉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91
〈표 1-13〉저작권위원회 연도별·분야별 조정 건수	92
〈표 1-14〉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92
〈표 1-15〉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분야별 조정 건수	92
〈표 1-16〉2009년 분야별 상사중재 현황	93
〈표 1-17〉연도별 감정의뢰 현황(최근 5년 간)	102
〈표 1-18〉최근 5년간 연도별 상담통계	106
〈표 1-19〉최근 3년간 매체별 상담통계	106
〈표 1-20〉2009년 저작물 유형별 상담 통계	106
〈표 1-21〉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제도 연구보고서 목록	112
〈표 1-22〉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연구보고서 목록	115

〈표1-2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및 기타 보고서 목록	121
〈표 2-1〉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36
〈표 2-2〉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 기소현황	139
〈표 2-3〉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141
〈표 2-4〉계정정지 및 계사판 정지 명령 처분 심의 고려 사항	145
〈표 2-5〉2009년 콘텐츠 분야별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현황	148
〈표 2-6〉2009년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	149
〈표 2-7〉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삭제·중단 요구 실적	152
〈표 2-8〉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흡인턴 단속 실적	154
〈표 2-9〉ICOP-I 모니터링 실적	155
〈표 2-10〉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157
〈표 2-11〉오프라인 불법복제물 SW 단속 결과	158
〈표 2-12〉2009년 신학기 출판 집중단속 실적	158
〈표 2-13〉국내 SW 불법복제물 조사 결과	159
〈표 2-14〉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160
〈표 2-15〉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160
〈표 2-16〉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비교	162
〈표 2-17〉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컨설팅 현황	166
〈표 2-18〉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인증)	167
〈표 2-19〉중국 내 우리 저작물의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침해현황(2007년)	167
〈표 2-20〉동남아 국가 내 우리 저작물 불법유통 현황	171
〈표 2-21〉동남아 주요 국가의 연도별 우리 저작물 침해 현황	171

〈표 2-22〉연도별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황	178
〈표 2-23〉연도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현황	179
〈표 2-24〉연도별 교과내용 연구 추진 내용	180
〈표 2-25〉2009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181
〈표 2-26〉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183
〈표 2-27〉연도별 교원연수 담당자 워크숍 운영 현황	184
〈표 2-28〉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187
〈표 2-29〉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188
〈표 2-30〉저작권 교육단 현황	189
〈표 2-31〉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191
〈표 2-32〉교육콘텐츠 개발 내역	193
〈표 2-33〉청소년 교육용 저작권 드라마(3종)	196
〈표 2-34〉2009년 저작권 보호의 날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현황	202
〈표 2-35〉2009년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 참여 현황	203
〈표 2-36〉DRM 호환성 해결 방안 장단점	214
〈표 2-37〉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따른 불법시장 규모	234
〈표 2-38〉IDC의 불법복제물 10%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한국)	234
〈표 3-1〉2008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 기여도(2005년 실질가격)	239
〈표 3-2〉2008년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2005년 실질가격)	240
〈표 3-3〉2008년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명목가격)	241
〈표 3-4〉저작권 산업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243
〈표 3-5〉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ICN 부여	247

〈표 3-6〉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성 항목	247
〈표 3-7〉CLMS 이용 현황	249
〈표 3-8〉자유이용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254
〈표 3-9〉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55
〈표 3-10〉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활용 현황	255
〈표 3-11〉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57
〈표 3-12〉일자리 창출 현황	258
〈표 3-13〉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 대상 교육 실시 현황	258
〈표 3-14〉OS의 오픈소스SW 정의	263
〈표 3-15〉오픈소스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265
〈표 3-16〉웹 버전과 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클라이언트 버전 비교	267
〈표 3-17〉오픈소스SW 컨퍼런스 세션별 핵심 내용	271
〈표 3-18〉저작권 등록 변경된 수수료 체계	283
〈표 3-19〉등록 저작물 아카이빙 구축계획	286
〈표 3-20〉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및 저작권 등록 현황	286
〈표 3-21〉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현황	287
〈표 3-22〉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290
〈표 3-23〉법정허락의 절차(제50조 기준)	295
〈표 3-24〉법정허락 현황	296
〈표 3-25〉2009년 법정허락 세부내용	298
〈표 3-26〉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300
〈표 3-27〉최근 5년간 KOMC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302
〈표 3-28〉KOMCA 2009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302
〈표 3-29〉KAPP 최근 4년간 연도별 신탁 및 보상회원 증가현황	304
〈표 3-30〉FKMP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306



〈표 3-31〉 KTRW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07
〈표 3-32〉 KOS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08
〈표 3-33〉 KSW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09
〈표 3-34〉 KRTR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10
〈표 3-35〉 KM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11
〈표 3-36〉 KBPA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12
〈표 3-37〉 KOCCA 연도별 신탁 기관 증가현황	314
〈표 3-38〉 KPF 연도별 신탁 · 회원 증가현황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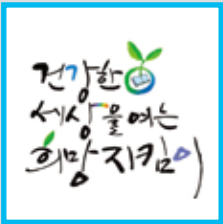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49
〈그림 1-2〉 반복적인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절차	50
〈그림 1-3〉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51
〈그림 1-4〉 시정권고 절차	53
〈그림 1-5〉 분쟁조정 절차	88
〈그림 1-6〉 감정업무 절차	98
〈그림 1-7〉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인 워크숍	103
〈그림 1-8〉 SW 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104
〈그림 1-9〉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세미나	104
〈그림 1-10〉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	105
〈그림 2-1〉 2009년 불법복제물 단속 종합계획	133
〈그림 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5
〈그림 2-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36
〈그림 2-4〉 연도별 불법복제물 추이	137

〈그림 2-5〉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추진 체계	140
〈그림 2-6〉 저작권 포렌식 시스템 개념도	142
〈그림 2-7〉 시정명령 · 시정권고 심의시스템 개념도	146
〈그림 2-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실적	150
〈그림 2-9〉 Copy112 신고사이트	150
〈그림 2-10〉 모니터링 및 신고자 유형별 현황	151
〈그림 2-11〉 저작물 유형별 및 신고 매체별 현황	151
〈그림 2-12〉 ICOMP 구성도	155
〈그림 2-13〉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갱신 체결	164
〈그림 2-14〉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168
〈그림 2-15〉 중국 음악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	168
〈그림 2-16〉 저작권 보호 설명회 및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전시 참가	169
〈그림 2-17〉 중국 내 한 · 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	169
〈그림 2-18〉 중국 국제 영상 ·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	169
〈그림 2-19〉 중국 저작권 실무교류단 및 일본 IP 중재센터 방한	170
〈그림 2-20〉 한 · 태 저작권 보호 협력포럼	172
〈그림 2-21〉 제5차 한 · 중 저작권 포럼(북경)	174
〈그림 2-22〉 2009 한 · 일 저작권 포럼	174
〈그림 2-23〉 2009 서울 저작권 포럼	174
〈그림 2-24〉 제3회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75
〈그림 2-25〉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장	178
〈그림 2-26〉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179

〈그림 2-27〉 2009년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182
〈그림 2-28〉 오프라인 교원연수 현장	183
〈그림 2-29〉 온라인 교원연수 홈페이지 '티처빌'	183
〈그림 2-30〉 2009년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183
〈그림 2-31〉 청소년 교육 콘텐츠	185
〈그림 2-32〉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186
〈그림 2-33〉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 현장	187
〈그림 2-34〉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188
〈그림 2-3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90
〈그림 2-36〉 원격교육연수원 웹사이트	191
〈그림 2-37〉 원격교육연수원 구축 구성(안)	192
〈그림 2-38〉 저작권교육원 개원	194
〈그림 2-39〉 저작권 지킴이 연수 현장	195
〈그림 2-40〉 청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197
〈그림 2-41〉 청소년 저작권 애니메이션(4종)	197
〈그림 2-42〉 지하철 내 홍보방송	198
〈그림 2-43〉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199
〈그림 2-44〉 제4회 대학(원)생 P 우수논문공모 시상식	201
〈그림 2-45〉 미국저작권청(USCO) 방문	201
〈그림 2-46〉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204
〈그림 2-47〉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교실사이트 방문자 현황	204
〈그림 2-48〉 2009년 저작권 문화 발간 현황	206
〈그림 2-49〉 포렌식마크 기술 개념도	209
〈그림 2-50〉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도	212

〈그림 2-51〉 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16
〈그림 2-52〉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 구조의 개념도	219
〈그림 2-53〉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워크숍	221
〈그림 2-54〉 특징점 추출 개요도	229
〈그림 2-55〉 기술위원회 개최	230
〈그림 2-56〉 협의체 워크숍 분임토론	230
〈그림 2-57〉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컨퍼런스	232
〈그림 2-58〉 저작권 기술 체계도	233
〈그림 3-1〉 저작권 산업의 GDP 비중(2005년 실질가격)	239
〈그림 3-2〉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2005년 실질가격)	242
〈그림 3-3〉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구성비 (2005년 실질가격)	242
〈그림 3-4〉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244
〈그림 3-5〉 저작권 산업 고용 증가율	244
〈그림 3-6〉 음악 온라인 ICN 등록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248
〈그림 3-7〉 음악 분야 CLMS 메인 화면	250
〈그림 3-8〉 내 권리 찾기 캠페인	251
〈그림 3-9〉 고 로리타 안 여사 추모 사이트 운영	259
〈그림 3-10〉 고 로리타 안 여사 합장식 지원	259
〈그림 3-11〉 자유이용 사이트 온라인 홍보 포스터	260
〈그림 3-12〉 자유이용 사이트 이벤트 진행을 위한 사이트	260
〈그림 3-13〉 모바일 자유이용 사이트	260
〈그림 3-14〉 자유이용 사이트 메인페이지(RSS 서비스)	261
〈그림 3-15〉 자유이용 사이트 뉴스레터	261
〈그림 3-16〉 CCR 프로토타입 메인 페이지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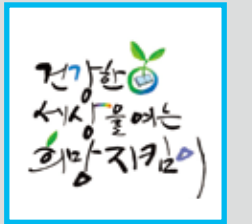


CONTENTS

〈그림 3-17〉CCR 프로토타입 검색 화면	262
〈그림 3-18〉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267
〈그림 3-19〉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268
〈그림 3-20〉코드아이(CodeEye) 비교·분석·검사 시스템 개념도	269
〈그림 3-21〉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내의 귀빈	271
〈그림 3-22〉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전경	271
〈그림 3-2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OSI MOU 체결식	274
〈그림 3-24〉저작권 등록업무 처리절차	276
〈그림 3-25〉저작권 등록심사 처리절차	277
〈그림 3-26〉저작권 등록 반려 및 재심 절차	278
〈그림 3-27〉일반저작물 등록시스템	281
〈그림 3-28〉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온라인등록시스템	281
〈그림 3-29〉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체계	285
〈그림 3-30〉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287
〈그림 3-31〉2009년 저작권 등록 현황	287
〈그림 3-32〉화상 통화를 통한 신청인의 의견 청취 장면	289
〈그림 3-33〉KOMCA 음악저작권 무료순회특강	304
〈그림 3-34〉KOMCA 저작권선진화포럼	304
〈그림 3-35〉KSWA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안성기 초청 토요특강	309
〈그림 3-36〉KMMA 굿다운로드 캠페인	312
〈그림 3-37〉KBPA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세미나	313

약어표

-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 분쟁해결)
-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미국도서관협회)
-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B-CAS(Broadcast Conditional Access System)
- BMG(Bertelsmann Music Group)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 CAFC(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CCK(Creative Commons Korea ; 한국저작물자유이용협회)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자유이용허락 표시)
- CCR(Creative Commons Repository)
-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 DC(Digital Content)
- DDEX(Digital Data Exchange)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저작권 관리)
- DSZ(DRM Security Zone)
- EM(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 EXIM(Export Import)
-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프리소프트웨어재단)
- FST(Free Software Foundation)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GPL(General Public License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ICN(Integrated Copyrights Number ;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 정부간위원회)
-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MD4(Message Digest 4)
- MD5(Message Digest 5)
-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 대우)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MPL(Mozilla Public License)
- NT(National Treatment ; 내국민 대우)
-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 OSI(Open Source Initiative)
-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P2P(Peer to peer)
- RDD(Right Data Dictionary ; 권리데이터사전)
-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 권리표현용어)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
-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상설위원회)
-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
- SHA(Secure Hash Algorithm ; 안전한 해쉬 알고리즘)
- SW(Software)
- TRIPS(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UCC(User Creative Contents ; 사용자 제작 콘텐츠)
- UMG(Universal Music Group)
- USCO(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미국 저작권청)
-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미국특허상표청)
-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 무역대표부)
- URL(Uniform Resource Locator)
- WCT(WIPO Copyright Treaty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 WIPO 설립 협약(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MG(Warner Music Group)
- WPPT(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세계지적재산기구 공연 및 음반 조약)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음반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1. 저작권법 제 · 개정사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1. 국내 판례
2. 조정 · 중재
3. 저작물 감정
4. 법률상담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3. 유관 학회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2009년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원년이었다. 1월에 발표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이라 한다)’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추진 전략에서는 2012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이하 ICOP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OSP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활성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온라인상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통하여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추진 전략에는 권리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User Created Contents)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것 역시 포함되었다.

생활속 저작권 인식제고와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고소 남발에 대한 근원적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정책집행차원에서 2009년에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었다. 먼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2008년도 기준으로 2006년 대비 3조 4,300억원이 감소(약 78%)하였으며 이를 통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06년 대비 약 100억원이 감소하였다.²⁾

이러한 불법복제 유통시장의 위축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와 집중단속이 큰 기여를 했다. 정부는 웹하드·P2P 50여개 업체와 방송 3사간 유료화 협상 타결, 네이버·다음과 음악저작권 3단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였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초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수익금을 21억원(12개 업체)으로 확정, 저작권 침해사범 31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개봉 상영중인 영화 해운대가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업로더와 판매자 1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0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860건에 대해 삭제 조치하였다.

이밖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544건, 214,199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하고 폐기하였으며, 전국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519건 11,753점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2) 2006년은 게임 분야가 제외된 통계이고 2008년은 게임 분야가 포함된 통계이므로 2008년과 직접 대비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복제 시장규모의 경우와 같이 합계액 기준 통계로 한다면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006년 대비 4,06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단속 결과

(단위 : 점)

구분	합계(점)	단속품목						
		DVD	VCD	게임	기타	테이프	음악CD	책
2008	373건 (172,071)	140,836	—	—	18,109	6,447	6,360	319
2009	544건 (214,199)	191,620	324	1,480	5,297	8,267	7,188	23

이처럼 2009년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 한해였다.

불법저작물 전송차단 기술조치를 불이행한 88개 업체에 대하여 총 7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복제물을 올린 업로더와 OSP에 대하여 경고(13,466건), 삭제·전송 중단(21,840건), 계정정지(39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표 1-2] OSP 과태료 처분 결과

2008년				2009년			
횟수	부과일	업체수	금액(천원)	횟수	부과일	업체수	금액(천원)
1	1월 3일	31	270,700	1	4월 16일	21	154,300
2	9월 4일	27	258,700	2	8월 21일	31	265,850
3	12월 30일	22	144,200	3	9월 15일	2	27,000
				4	11월 18일	11	106,100
				5	12월 14일	16	119,000
				6	12월 29일	7	67,250
합계	3회	80	673,600	합계	6회	88	739,500

[표 1-3] 주요 저작물별 수거·폐기 및 삭제조치 현황

(단위 : 건, 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9,956	8,420,925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4,802	1,011,707
	영상	35,650	516,750	50,185	752,463	67,063	3,101,990	150,444	4,413,859
	출판	397	2,066,819	454	3,233,222	7,049	12,156,342	5,553	14,387,822
	게임					1,461	17,030	16,991	101,724
	만화							2,327	7,179,732
	소계	46,003	11,004,494	77,582	12,466,051	99,953	28,149,624	180,117	27,094,844
오프라인	음악	666	88,722	398	32,917	304	34,806	367	35,163
	영상	500	106,584	474	77,126	786	329,451	873	380,769
	출판	419	13,365	522	10,068	615	17,811	541	11,956
	게임							2	1,480
	소계	1,585	208,671	1,394	120,111	1,705	382,068	1,783	429,368
합계		47,588	11,213,165	78,976	12,586,162	101,658	28,531,692	181,900	27,524,212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ICOP을 본격 운영, 음악 분야 664만점을 적발하였고 영상 분야는 12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2010년에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 ICOP-1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구분	모니터링		조치현황(삭제 등)	
	구분	구분	구분	구분
ICOP - I (음악)	38,529	6,643,523	3,188	173,767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 72개 기관을 실시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전국 4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사법경찰이 실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 자체 점검도 확대 시행하여 2008년에는 736개 기관이 실시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전국 1,862개 공공기관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강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OSP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을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복제물의 수량, 불법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OSP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판매용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구상도 본격화 되었다. 2009년 9월 22일에 ‘저작권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을 각각 발족하였는데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얹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원과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저작권포럼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와 담론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슈 발굴에서부터 대안 제시까지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를 이루며 정부가 직접적인 참여보다 간사역할을 통한 측면지원을 하는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의 편리한 이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저작권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에서는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정립 ② 저작권집중관리 체제의 선진화 ③ 편리한 저작권 권리처리 ④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향적인 공개·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저작권 보호 외에 해외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권리구제 서비스도 강화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법·제도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등으로 컨설팅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저작권자 확인 요청 시 원저작자 및 라이선싱 계약 확인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7년 601건에서 2009년에는 1,121건으로 증가하였다.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1. 저작권법 제·개정사

전근대 사회에는 타인의 저작, 특히 시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용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상업 출판시장이 작은 곳에서, 저작권 개념화·법제화의 본격화는 어려운 일이었다. 주지하듯이 저작권은 무체물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며, 이 권리는 결국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시장이 발달하면서 생긴 저작권법은 유럽과 미국에서 성립하였다. 영국은 1709년 앤 여왕법(Queen Ann Act)을 제정해 최초의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1707년 런던의 서적상조합이 영국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받아들인 결과로 원래 1713년까지 독점을 유지하려던 출판업자의 기대와 다르게, 저작권자에게 권리의 중심이 옮겨가도록 했다. 그것은 이 법이 ‘유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작성한 지식을 격려’함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영국에 이어 미국은 1790년 연방 저작권법을, 프랑스는 1793년 ‘문학 및 예술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 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日美)조약’에서부터이다. 해방 이후 미국 군정청이 1945년 11월 2일 공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 21호’에 따라 종래의 일본 「저작권법」이 계속되던 중, 1955년에 이르러서 국회 문교위원회에서 「저작권법」 제도를 주도하여 초고를 작성함으로써, 1957년 1월 28일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86년 전면 개정되어 현 「저작권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그 사이 저작권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1-5]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구분	주요 내용	공포일
제정	신규제정	1957년 1월 28일
제 1 차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	1986년 12월 31일
제 2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89년 12월 30일
제 3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0년 12월 27일
제 4 차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1년 3월 8일
제 5 차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3년 3월 6일
제 6 차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등	1994년 1월 7일
제 7 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994년 3월 24일
제 8 차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년 12월 6일
제 9 차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년 12월 13일
제 10 차	전송권 도입,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년 1월 12일
제 11 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 OSP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년 7월 10일
제 12 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년 10월 16일
제 13 차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2006년 10월 4일
제 14 차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	2006년 12월 28일
제 15 차	「정부조직법」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008년 2월 29일
제 16 차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등	2009년 3월 25일
제 17 차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년 4월 22일
제 18 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2009년 7월 31일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09년에는 세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2008년 5월 30일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2009년까지 총 19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며, 이중 7건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³⁾ 처리된 7건의 개정안 중 2건은 각각 철회·폐기⁴⁾되었으며, 3건은 대안폐기⁵⁾, 나머지 2건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2008년 7월 24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위임에 관한 사항), 2008년 11월 6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권 인정),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2009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 김소남 의원 발의안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가 가능한 범위를 기존 ‘점자’에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 방식’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공표된 저작물을 시

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⁶⁾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즉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인구는 극히 제한적⁷⁾이어서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저작물への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취득 경로가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어 기존 점자만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수단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기록방식을 법률에서 확정하기 보다 장애인보조공학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다.

2) 정병국 의원 발의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안(2008년 11월 6일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⁸⁾ 「도서관법」 개정안에서는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약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참고.

4) 양벌규정의 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동 법률안은 한나라당 소속 172명 발의 형식(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 당론으로 2008년 10월 8일 제안되었으나,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2008년 11월 28일(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다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저작권법」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기(2009년 12월 23일)되었다.

5) 대안으로 폐기된 3건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2009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2000년 개정법에서 점자 복제에서 점자 복제·전송으로, 2003년 개정법에서 시각장애인시설에서 녹음만 가능하던 것을 녹음과 함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7) 점자해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체 시각장애인의 96.9%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가능하며,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경우는 0.7%로 나타났다. (변용찬 외 6인,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06-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2쪽.)

8) 「도서관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병국 의원이 「저작권법」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함께 2009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상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온라인상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를 위해서는 그 복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3) 김창수 의원 발의안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음악이 수록된 음반과 같이 일단 실연이 고정된 후에는 공연·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는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만 방송 또는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⁹⁾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연¹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모두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물론 보상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음반의 공연으로 인하여 생실연 기회가 상실되고 음반 판매가 감소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독일·프랑스 등 79개국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¹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 저작권 보호수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법상 공연보상청구권 부여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¹²⁾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의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고 있는 유흥주점, 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호텔 또는 유원시설, 쇼펍센터,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준용(「저작권법」 제76조제3항·제4항)하고 있으므로, 실연자·음반제작자 단체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진다.

(2) 2009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2008년 11월 27일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4월 22일 공포, 3개월 후인 7월 23일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주무부처가 구 정보통신

9) 다만, 음반이 방송 또는 디지털송신에 이용되는 경우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음반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공연(생실연, Live 공연)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1) 영국 등 44개국은 공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2)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효질,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김창수 의원실 주최, 2008년 11월 12일) 자료집 49쪽 이하 참고.

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

다만 일반저작물과 구별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내용은 특례의 장¹³⁾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은 기존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흡수시키는¹⁴⁾ 등 법률 통합에 따른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저작권법 목적의 확대

저작권 산업 내지 문화 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제 통상 분야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업의 기본 규범임을 밝히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감안, 문화의 향상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저작권법」 목적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3) 시책 수립

시책 수립 규정은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다만, 한·미 FTA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13) 프로그램저작물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내용은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대상,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사용자에 의한 복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등에 관한 규정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저작권 제한사유 규정은 구 「저작권법」(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별도로 두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14)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요건 추가,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보호기간, 프로그램의 양도 규정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프로그램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행사, 공동저작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OSP의 책임감면, OSP의 의무,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벌칙, 양벌규정 등은 그 내용이 구 「저작권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규정으로 흡수시켜 정리하였다.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문제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주요 이슈로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선언적 규정과 교육·홍보,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 정부가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개발 진행 중에 종업원이 미공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어 개발 후 이를 공표함으로써 법인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에서 전략적으로 미공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킬 경우, 법인으로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어 영업비밀로서 가지는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에는 공표 요건을 배제시켰다.¹⁵⁾

5) 학교 교육목적 이용의 저작권 제한 사유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1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규정 내용 상에서도 ‘복제’는 ‘배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법적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배포’를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란 각급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 지

15) 프로그램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 개인 창작물의 권리발생과 형평유지를 위해 저작권자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표’ 요건을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삭제하였다.

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교육지원기관에 해당될 것이다.

6)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추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권의 하나로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법」은 제13조에서 그에 따른 3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 개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이다.

7)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원저작물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하여 원저작자가 창작의 자유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 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자신의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양도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즉 프로그램의 양수인에게 개작할 권리가 없다면 굳이 양도받을 필요 없이 이용허락만으로 충분히 양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8) 등록 규정의 정비

등록의 경우 일반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각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업무처리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등록의 경우에도 각각의 시스템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단시간내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부와 프로그램등록부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창작연월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시키지 않고, 일반저작물도 미공표된 저작물(악보, 설계도 등)의 경우에는 비밀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뿐만 아니라 일반저작물 등록 시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소스코드(source code), 특히 미공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source code)가 외부에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권리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등록업무담당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도 등록된 내용중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등록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다.

9)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제한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실연·음반을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그 형태가 같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위한 준비행위인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면책시키는 것과 같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녹음물은 녹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도록 하였다.

10)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

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 제5장의 2를 신설하였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은 보호의 대상, 저작재산권 제한, 역분석, 백업용 복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 내지 매개체로서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저작물의 예시(제4조)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등에 위치시켜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 규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을 이들과 함께 위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특례의 장에 규정하였다.

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 제한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16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1개의 조문(제12조)에 6가지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재판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 사용 시에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6가지의 제한사유 모두에 걸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적복제의 요건을 보면 「저작권법」은 ‘한정된 범위 또는 개인적 이용’인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이용’이다.

즉, 현행법은 ‘or’의 개념이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and’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가 일반저작물의 허용범위보다 좁다. 이렇듯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제한규정의 경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선불리 통합할 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제4절 제2관(저작권재산권의 제한)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에 관하여는 특례의 장에 규정하

였다. 향후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친 후 통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 비교

구분	일반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재판 등	-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 - 복제 - 부당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23조	- 공표 - 재판 또는 수사 목적 - 복제 - 부당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1호
교과용 도서	- 공표 - 초·중·고등학교 - 교과용 도서에 게재 -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1항	- 공표 - 초·중·고등학교 - 교과용 도서에 게재 - 보상금 지급 - 부당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3호
교육 목적	- 공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 수업 또는 지원 목적 - 복제·공연·방송·전송 - 교육 담당자 및 교육 받는 자 - 대학교에서만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2항	- 공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학력·학위 인정 교육기관에 한함) - 수업 과정 제공 목적 - 복제·배포 - 교육 담당자(교육 받는 자 제외) - 대학교 보상금 지급 안함 - 부당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2호
사적 복제	- 공표 - 비영리 - 한정된 범위 or 개인적 이용 - 복제	제30조	- 공표 - 비영리 - 한정된 장소 and 개인적인 목적 - 복제 - 부당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4호

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프로그램 목적코드를 분석하여 소스코드(source code)로 변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

작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전혀 다른 표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시 EU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대한 정의(제2조제34호)와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허용되는 경우가 규정되었다. 다만,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정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다.

라.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용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위 '백업용 복제'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01조의5항 조문 제목을 수정(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마.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 저작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매체제작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상의 설정출판권제도와 유사하게 배타적발행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제101조의6에 규정하였다.

바.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하자를 보수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개발회사의 해산 등을 대비하여 프로그램의 수정에 필요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제공을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노출 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제공을 반대하게 된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3의 중립적 기관에 맡기고, 개발회사의 폐업 등과 같이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임치(escrow)제도이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20조의2에서 이러한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에 제101조의7로 수용하였다.

1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외에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알선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온라인 불법복제와 관련해 이를 모니터링하여 OSP에게 경고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감정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감정관련 항목을 흡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위원의 숫자도 기존의 15~20명에서 20~25명으로 확대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12)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 대책 강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한번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

는데,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파괴력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OSP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와, OSP에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가.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 중단 및 경고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복제물이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하여 OSP에 해당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3조의2제1항).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회의체 조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OSP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림 1-1]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나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3조의2제2항).

개정안의 계정 정지 명령은 현재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삼진 아웃제’와는 달리 인터넷망 접속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OSP의 이용자 계정만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OSP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해당 OSP의 이용자 계정 중에서도 이메일만을 사용하는 전용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OSP 및 계정소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제외하고 해당 OSP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와는 상관없는 서비스와 관

련된 자료를 확보해 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OSP는 해당 계정을 정지하기 1주일 전에 미리 계정 정지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SP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제·전송자에게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그림 1-2] 반복적인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절차



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에는 카페, 블로그, 자료실 등의 많은 게시판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 게시판 중 한 곳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전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러한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복제물만을 일일이 삭제토록 하는 것은 사후적 대처로 일관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의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3조의2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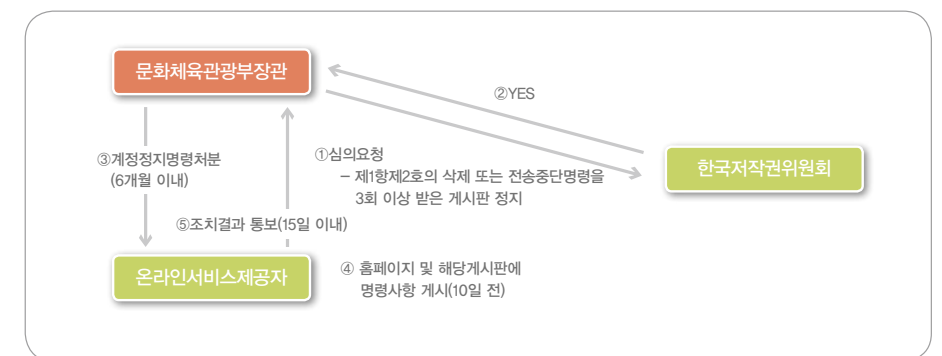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호인 모임에서 운영하는 일반적 형태의 게시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복제물의 수량, 불법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다른 시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OSP는 게시판에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림 1-3]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OSP나 이용자들이 모두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시정명령제도는 강제적인 조치로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는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저작권 이용질서를 이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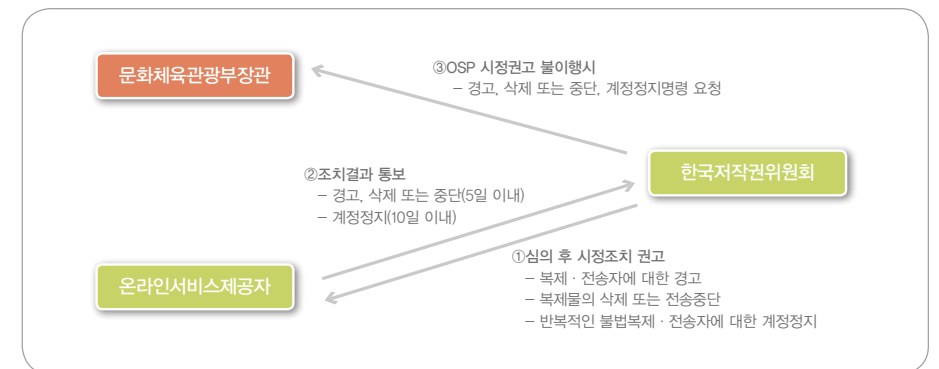
행정부의 강제적인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OSP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였다(제133조의3).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①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를 OSP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OSP는 ①과 ②의 시정권고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③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OSP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생략된다.

[그림 1-4] 시정권고 절차



13) 침해로 보는 행위

프로그램의 경우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는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고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의 업무상 지정 사용죄에 대해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여타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와 동일하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 또한, 형량에 있어서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다.

14) 벌칙의 변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저작권법」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침해죄에 대한 일부 형량이 변경되었다. 복제권 침해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간접적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보다 낮추어 반영되었다. 또한 허위 등록 등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형량보다 무겁게 설정되었다. 프로그램 침해죄에 대하여 벌칙이 강화 또는 약화된 이유는 벌칙 형량이 「저작권법」은 5년, 3년, 1년 이하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5년, 2년, 1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표 1-7]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변화표

내용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변화 내용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29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36①)	동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국내 배포목적 수입, 침해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지정취득후 업무상 사용(§29④1,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36②_4)	감소
기술적보호조치 직접 무력화(§30①)		불수용	-
기술적보호조치 간접 무력화(§30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36②_5)	감소
비밀유지의무위반(§2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37_7)	감소
지정없는 위탁관리업무(§20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6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37_4)	동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29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37_1)	동일
허위등록·제출(§29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36②_2)	강화
권리관리정보(§29④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36②_6)	강화
신고없는 대리·중개업(§20②)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6④)	5백만원 이하의 벌금(§138_5)	동일
상습범(§47)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7)	불수용	친고죄 규정 적용토록 하여 본 규정 불수용

15) 양벌규정

기존의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

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5헌가10)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0)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하였다.

(3) 2009년 7월 31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27조의 법령 제호가 수정되었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2008년 5월 30일에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9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고,¹⁶⁾ 이 중 7건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7건의 처리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인하여 폐기된 안이 3건(김소남, 정병국, 김창수 의원안), 개정이 완료되어서 폐기된 안이 1건(이명수 의원안), 대표 발의자에 의해 철회된 안이 1건(주호영 의원안), 가결된 안이 2건(진성호 의원안, 상임위원장 대안)이다. 미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400)

청소년들이 불법복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를 확대 재생산·유통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 실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였다.

16)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을 포함한 건수를 말한다.

(2) 이미경 의원안(의안번호 720)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3) 정부안(의안번호 1513)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 협정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변재일 의원안(의안번호 2888)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의 개정사항 중 OSP의 책임제한 등 일부 규정을 한·미 FTA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367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6) 최구식 의원안(의안번호 3867)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다.

(7) 최문순 의원안(의안번호 4389)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제거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이성현 의원안(의안번호 4588)

광고 또는 상품판매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상재산권(right of publicity)을 신설하고, 초상재산권의 보호 기간 설정 및 초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9) 홍장표 의원안(의안번호 4995)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저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제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10) 이윤성 의원안(의안번호 6520)

언론보도의 직접 대상자가 된 자가 그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11) 임동규 의원안(의안번호 6787)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도·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김창수 의원안(의안번호 7284)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선출하거나 또는 지명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8]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현황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제출자 (의안번호)	추진 경과	주요 내용
진성호 의원 (400)	2008년 7월 28일 국회 제출 2009년 2월 25일 상임위 상정	- 게시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OSP를 특수한 유형의 OSP에 포함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한 계정정지, 사이트 폐쇄 등 근거 마련
이미경 의원 (720)	2008년 8월 25일 국회 제출 2009년 1월 5일 상임위 상정	기보의 저작물성 인정
정부 (1513)	2008년 10월 10일 국회 제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변재일 의원 (2888)	2008년 12월 5일 국회 제출 2009년 3월 3일 상임위 상정	- 저작물의 공정이용 - OSP의 책임제한 명확화 - 특수한 유형의 OSP의 유형과 기술적보호조치 구체화 등 - 침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형사 처벌 제외
진성호 의원 (3679)	2009년 2월 2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17일 상임위 상정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최구식 의원 (3867)	2009년 2월 17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17일 상임위 상정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마련

최문순 의원 (4389)	2009년 4월 2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22일 상임위 상정	-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 추정 -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허용 -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 제한 사유 추가 - 정부저작물의 자유 이용 - 저작물의 공정이용 - 기술적보호조치 해제 의무 - 적극적 조사행위가 면책 요건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 -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등 삭제 -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
이성현 의원 (4588)	2009년 4월 16일 국회 제출	초상재산권의 도입
홍장표 의원 (4995)	2009년 6월 1일 국회 제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
이윤성 의원 (6520)	2009년 11월 11일 국회 제출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임동규 의원 (6787)	2009년 11월 30일 국회 제출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보도·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
김창수 의원 (7284)	2009년 12월 30일 국회 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7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및 게시물 서비스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함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1)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협력체계 강화

1) WIP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체계 강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이하 WIPO라 한다) 내 지적재산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WIPO 총회(2009년 9월), 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이하 SCCR이라 한다)(2009년 5월, 12월),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 정부간위원회, 이하 IGC라 한다)(2009년 12월),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이하 ACE라 한다)(2009년 11월) 등에 참석하여 글로벌 저작권 환경 정책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WIPO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발제(2009년 6월, 10월)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법·정책과 각종 저작권 관련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저작권 관련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를 2009년 12월 8일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과 이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바쳐진 창작자의 땀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8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과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TO/TRIPS(World Trade Organization/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하 WTO/TRIPS라고 한다), WCT(WIPO Copyright Treaty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WPPT(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 등 의 국제조약 가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표 1-9]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가입일순)

조약	주요 내용	체결년도	가입일
WIPO 설립 협약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설립을 규정 • WIPO 가입시 서명	1967년	1979년 3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저작권 보호에 방식주의(©마크) 적용 • 대부분 국가가 무방식주의를 지향, 영향력 없음	1952년	1987년 10월 1일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음반의 무단 복제·배포 금지 규정 • 단일 내용을 규정, 영향력 없음	1971년	1987년 10월 10일
TRIP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의 실체규정 원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종합적 규정 • 국가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가능 • WTO 일반원칙인 NT(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및 MFN(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1995년	1995년 1월 1일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저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50년	1886년	1996년 8월 21일
WCT (WIPO Copyright Treaty)	• 인터넷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4년 6월 24일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저작인접권 관련 기본협약 • 저작권인접권의 보호 규정 • 보호기간 20년	1961년	2008년 12월 18일
WPPT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인터넷 시대에서의 실연, 음반 보호 • 로마협약 내용 중 실연 및 음반 관련 규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성격의 조약 •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8년 12월 18일

(2) 국제통상협상에의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강화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라 한다)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는 사회, 경제,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되었다.

FTA는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통상문제를 조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FTA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지식산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산업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경제를 분리시켜 볼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하였다.

그 결과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시 TRIPS라는 지적재산권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FTA에도 지적재산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미 FTA에는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하는 실체적 규정부터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이 우리 법체계에 다소 생소한 절차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EU FTA에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고,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사업자 권리를 로마협약 수준으로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인도, 싱가포르, 칠레,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이하 GCC라 한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베트남 등과는 향후 FTA 체결을 위하여 협상준비 또는 공동 연구 중에 있는 등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저작권 통상 이슈에의 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의 최신 저

작권 정보를 수집·연구함은 물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국가와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조약 뿐만 아니라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등과 같은 다자조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제적 보호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EU FTA의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기준: 5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한다(제10.6조 및 제 10.14조).

반면 한·미 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을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2)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10.9조 제5항).

또한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데(제10.53조) 민사소송 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방송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방송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한다.

3) 추급권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

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한·EU FTA에서는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추가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규정하였다(제 10.10조).

4)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수단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제 10.12조)하고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는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고의로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 1-10]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¹⁷⁾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5건, 16개국)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BRISs 국가, 거대시장
체결 (2건, 28개국)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거대 선진경제권
	EU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협상진행 (8건, 13개국)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20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2008년 7월, 2009년 3월, 7월)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페루	총 4차례 협상 개최(2009년 3월, 5월, 6월, 10월)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호주	2007년 2월~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년 10, 12월)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년 9, 11월) 총 3차례 협상 개최(2009년 6월, 9월, 12월)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3차례 협상 개최(2009년 12월, 2010년 3월, 6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17)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new/fta/ftakorea2010.asp>)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1. 국내 판례¹⁸⁾

(1) 2009년 판례 동향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09년에는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종전 판결을 확인하거나, 논란이 있던 사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판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분야의 대법원 판례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종심의 판결이라는 점 때문에 하급심 판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하에서는 주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2009년도 저작권 분야의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아울러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최근의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몇 건 덧붙여 살펴보았다.

(2) 2009년 판례 평석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에는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히 당사자 간에 계약 등을 통해 창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이는 우리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창작자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한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 일정한 기여 또는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 그 자체의 작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 또는 창작적 여건이나 작업 환경을 조성해 준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저작자라 할 수 없다. 비록 당사자 간에 공동저작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면 이 역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2)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링크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WWW(World Wide Web)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 도구 내지는 기술이다. 그런데 링크 대상이 저작물이거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에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초기화면) 또는 메인페이지에 대한 단순 링크의 경우에는 복제 또는 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는 링크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도와 다르게 홈페이지(초기화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내부 웹페이지가 연결·이용됨으로써 광고수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

18) 국내 판례 내용 중 일부 판결에 관한 것은 집필자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2009년도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판례’라는 글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링크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단정 짓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부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판결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신규성이나 진보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창작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

분하다”고 하고 있다.

창작성은 신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판시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인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부분은 마치 창작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요구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기존의 저작물 중에 동일한 것이 있으면 창작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면 창작성이 없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누가 만들어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 체계가 창작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노동이론’이 아닌 이른바 ‘유인이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판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지하철통신설비 제안서도면’ 사건)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을 것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인가? 편집물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창작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성립에 있어서도 창작

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정도는 최소한의 창작성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4)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문학·예술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문예적 저작물에 비하여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것으로,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 96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등과 기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 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

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있다.

5) 서책의 편집형식이나 구성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자 2009카합3104 결정)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5호에서는 이를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는,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저작권법 정의에서 규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송심인 서울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851 판결에서는 이 넥타이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한편, 이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자 2009카합3104 결정은 서책의 편집형식이나 구성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교과서의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산업적 목적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②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분리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는 예를 들어 넥타이의 문양과 같이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의류, 가방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인데, 신청인이 담당하였다는 이 사건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 부분도 상당 부분 문자의 형태(서체, 크기 등)나 배치(줄 간격 등)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문양이나 장식이 여러 물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 점에서도 신청인의 작업물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는 저자로부터 원고를 인도받아 ‘식자, 장정, 활자의 선택, 편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이 더하여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작업에 대한 노력을 이른바 ‘판면권’이라는 형태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향후 입법에 맡겨진 과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¹⁹⁾ 이 판결이 판면권의 보호를 부정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책 디자인’ 일체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여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견해가 있다.²⁰⁾

6) 비영리 공연·방송에 해당하기 위한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이어야 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스타벅스 본

사가 제작한 음악 CD(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 판매는 하지 않는다)를 한국지사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매하여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연한 것이 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음반, 즉 ‘시판용 음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CD는 피고(스타벅스) 매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문언해석), ② 「저작권법」 제29조 제1, 2항의 입법경과를 보아도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역사적 해석), ③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3호),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판매’는 저작물 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점(체계적 해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CD가 피고 매장에서의 재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음반이라고 하여 당연히 판매용 음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여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상업용 레코드’를 ‘시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레코드의 복제물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조문으로서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이 ‘상업용 레코드’의 재생에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오히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1999년 법 개정

19)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23면,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809면.

20) 정진근,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문화(2010. 3.), 38면.

시 폐지된 일본 「저작권법」 부칙 제14조와 유사한 조문인데, 이 부칙 제14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조문들은 중요한 개념들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잦은 개정으로 말미암아 연혁적으로도 복잡하며, 또 「저작권법」상의 각종 정의규정도 그와 관련된 모든 형식이나 패턴을 포섭할 수 없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판결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중 하나인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문언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등 세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²¹⁾

7) OSP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가합9022 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OSP이다. 피고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싸이월드 광장, 싸이월드 클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각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올린 파일은 피고의 중앙서버에 저장된 다음, 이용자들(방문자들)이 접속하면 위 중앙서버에서 불러들여 실행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위 각 사이트의 초기화면에는 위 각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하여 분야별로 분류가 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곡명이나 가수명을 검색한 뒤 그 결과물을 클릭함으로써 위 각 서비스 중 관련 파일이 게재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원고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및 교환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식 및 정도,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과 그 정책, 시스템이 파일공유 기능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위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거나 향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위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의 위 각 서비스 제공 약관에서 가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원고의 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하여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의 삭제요청에 조속히 대응하여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고, 음악 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21) 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53224호로 항소되어 2010. 7. 1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0. 9. 9.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출간되었을 무렵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결론이 주목된다.

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 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이용자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그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동안 이른바 ‘소리바다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OSP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그 중에서는 OSP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판결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위 판결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OSP에게 너무 가혹하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사업이나 이용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저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OSP의 책임을 적절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²²⁾

8) 유명 가수의 가창을 흉내 낸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이른바 ‘가수 손담비 동영상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판결이다. 원고는 다섯 살 된 자신의 딸이 의자에 앉아 가수 손담비가 부른 ‘미쳤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UCC)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동영상의 피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회사에 대하여 복제,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 포털 서비스회사가 위 동영상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동영상의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은 위와 같은 동영상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적인 관점에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어떠한 기본권 주체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하여 공개하는 경우, 일방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 및 문화·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상대방 기본권 주체의 저작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는 일반규정을 두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한(「헌법」 제23조 제1, 2항 참조)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저작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이 「저작권법」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우리 「저작권법」상의 제한규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이념,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세밀한 이익형량과 상위규범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건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후, 위 동영상은 위 음악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22) 박성호, “OSP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저작권문화(2009. 09), 29면.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문화민족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문화민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제9조에서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재산권 일반규정인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저작권과 일반적인 재산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조문에 비추어 분명한 것은 저작권 역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그것이 재산권인 이상 「헌법」 제23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따라서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헌법」 제23조 제2항).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은 다른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 판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3) 2009년 판결 목록

1) 대법원 판결 목록

2009년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 업무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기능적 저작물과 편집물의 저작물성, 복제와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계약의 해석 문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해당 여부, 저작권 침해의 주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링크와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저작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2009년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no.	판결일자	사건번호	내용	비고
1	2009. 1. 15.	2007도10483	2차적 프로그램들의 원프로그램들에 대한 복제도의 비율이 각 45.9%, 77.5% 및 50.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두 프로그램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부인한 사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2	2009. 1. 30.	2008도449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피용자가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3	2009. 1. 30.	2008도9880	1.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2.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 3. 1985년 당시에는 국내에 CD 음반마저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아날로그 형태의 음원을 디지털 형태의 음원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하는 형태의 이용 방법은 거의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실,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2004. 10. 16. 「저작권법」(법률 제7233호)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용허락계약에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허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저작권법위반
4	2009. 1. 30.	2008도29	1. 기능적 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 변용한 정도의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5	2009. 2. 12.	2006도8369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됨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6	2009. 4. 09.	2009도1486	저작물의 전량을 카페 게시판에 인용, 게재하여 누구라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면 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배포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저작권법위반
7	2009. 4. 16.	2008다53812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여부 - '네이버'사건	손해배상(기)등
8	2009. 5. 14.	2009도2324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영상저작물이 녹화된 디브이디를 대여용으로 판매한 행위가 비디오물을 구입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공개상영)까지 허락한 것은 아님	저작권법위반
9	2009. 5. 28.	2007다354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갑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각종 언론기관과의 전제 계약에 따라 받는 전재료는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구「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구「저작권법」 제95조에 정한 '명예'의 의미 및 이에 저작자의 '명예감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 침해금지 등

10	2009. 5. 28.	2009도2488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광고물이 A사와 B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 및 문구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나, 이는 위 회사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문구의 내용이나 형태, 사진의 선택 및 배치 등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 나름대로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자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광고물은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함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11	2009. 6. 11.	2008도8164	양산되는 물품인 넝쿨반지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12	2009. 6. 25.	2008도11985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저작권법위반
13	2009. 6. 25.	2009도3482	주요한 기능·목적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그 사이트에서 불법 자료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음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설에 대한 복제 그림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유료 회원들이 이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식을 채택·시행함으로써 위 소설에 대한 복제권·배포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이 있음	저작권법위반방조
14	2009. 7. 09.	2007다36384	원고와 피고의 골프장 설계도면은 클럽하우스의 골프장 부지 내 위치, 일부 코스노선 및 일부 홀의 형태 등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원형보존녹지의 면적, 각 홀의 파 배열, 티 박스·그린·벙커와 연못 등의 위치·형태 및 자연지형의 변경 부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고의 설계도면은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에 있어서 원고의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15	2009. 8. 20.	2009도3812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을 허락받은 기간 내에 그 사용을 허락받은 자로부터 양도 받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음	저작권법위반
16	2009. 10. 15.	2009도5454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가입 회원들의 TV 프로그램 녹화예약 신청에 따라 방영중인 TV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Divx용 동영상파일로 인코딩하여 복제한 뒤 일정한 요금을 받고 온라인 전송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여부가 회원인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들의 복제 및 전송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통제 및 관리의 주체로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17	2009. 10. 29.	2007도10735	1.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성수신에 관한 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위성방송수신기에 장착하고 위성방송의 컨트롤 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국내 서버로 수신하고 위성방송수신기들로 실시간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92조에 정한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18	2009. 10. 29.	2009도6325	1.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해석 기준 2. 저작권자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거래처(대리점)에 계약기간 내에 제작한 견본책자(종이매체)는 물론 그 책자에 수록된 사진의 이미지파일을 위 계약기간 이후에도 명함의 제작 등 위 계약상 지정된 영업용도에 국한하여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상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위 견본책자의 내용이 담긴 CD-ROM을 교부하는 행위나 거래처 상호 간의 컴퓨터통신을 통한 개별 이미지파일의 전송 및 이에 수반되는 복제행위 역시 허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19	2009. 11. 26.	2008다77412	심층링크(직접링크)가 음악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성명표시권 침해의 여부	손해배상(기)
20	2009. 11. 26.	2008다77405	심층링크(직접링크)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21	2009. 12. 10.	2007도7181	어문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 여부 - '해양정책론' 사건	무고 저작권법위반

이외 2009년 저작권 관련 고등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7건, 부산고등법원 1건으로 총 18건이 있으며, 판결일자와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 ①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826 판결
- ②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39252 판결
- ③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 ④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3368 판결
- ⑤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49778 판결
- ⑥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판결
- ⑦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0427 판결
- ⑧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08585 판결
- ⑨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103382 판결
- ⑩ 서울고등법원 2009. 8. 6. 자 2009초재227 결정
- ⑪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5683 판결
- ⑫ 서울고등법원 2009. 8. 26. 선고 2009나19835 판결
- ⑬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9나21043 판결
- ⑭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 판결
- ⑮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8136 판결
- ⑯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96026 판결
- 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나66254 판결
- ⑱ 부산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8109 판결

2. 조정·중재

(1) 조정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을 두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 촉진하는 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 등 국가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러 분야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1987년 「저작권법」 전면개정과 함께 제7장에서 9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프로그램 분야에서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에는 양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꾸준히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 분쟁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 조정대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①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②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한 경우, ③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

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경우, 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연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연한 경우, ③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방송한 경우, ④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한 경우, 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은 ①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의 실연을 사진촬영, 녹음·녹화 또는 방송하거나,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② 음반제작자의 허락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배포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③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녹음·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보상금에 관한 분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함에 있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2) 조정의 효력

조정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지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재판상의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 제117조(조정) 제1, 2항은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판결문과 동일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원은 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을 두었으나, 1992년 3월 2일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 제1198호)’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법원규칙 제1051호를 폐지하였다.

3) 조정의 특징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조정의 특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혼재될 수 있으며, 유사 분쟁조정기관들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지만 여기서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를 언급해 본다.

가. 조정의 장점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조정부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 정부는 그 구성에 있어 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의 기본 원칙을 세워 두고 있으며, 최대한 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들 역시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둘째,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성립으로 간주, 종결 처리된다. 대다수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은 3개월 내외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대개 1개월)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기일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셋째, 조정은 신청 시에 그 내용에 따라 1만원~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종결 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비용은 최초 법원의 사물관할의 구분을 참고하여 신청취지상의 금액에 연동하도록 정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조정 비용을 신청취지에 연동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남소를 막을 수 있는 등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민사소송과는 달리 청구취지

에 구속되지 않는 조정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액제 내지 정액화 된 기본 신청비에 조정성립 시 그 내용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넷째, 조정은 최초 신청단계에서부터 관련 직원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일 진행 과정에서는 전문가인 조정위원의 도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엄격한 절차가 없으며, 자유롭게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여섯째,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성립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일곱째, 조정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리자의 주장이 과도할 경우 침해자의 입장에서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도 조정을 구할 수 있다. 사실 아직까지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자의 요구는 흔히 있으며(대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에 의한 조정 문의 또한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조정제도만의 장점이라고 생각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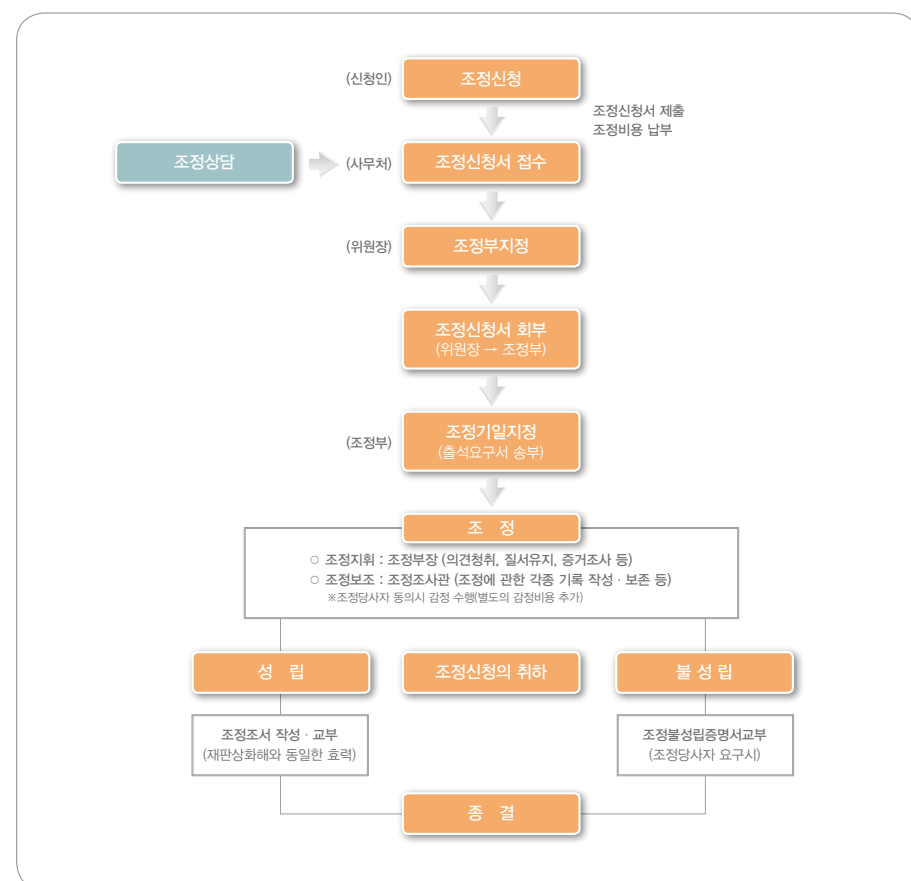
나. 조정의 단점

조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정제도의 본질상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23) 가해자에 의한 조정신청은 권리자가 제기하는 조정 건에 비해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침해자에 의한 조정 신청이 매년 평균 20% 인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침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정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분쟁이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 객체인 소비자분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순수한 사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조정의 당사자인 저작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²⁴⁾에서 저작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림 1-5] 분쟁조정 절차



4) 조정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이 접수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및 심의조정팀 조정 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많은 전화, 내방 및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으며, 조정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 조정신청서 접수, 담당 조정부 지정 및 이송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며, 일반적으로 팩스나 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서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담당 조정부가 지정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번에 따른다.

다. 조정기일 지정

조정은 기일을 지정한 후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법원의 심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조정기일은 일반적으로 조정접수일로부터 3~4주 후에 지정된다.

라. 기일 진행을 위한 검토

기일이 지정되면 조정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조정신청서와 준비서면,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일 진행을 준비하게 된다.

24)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와 이에 대한 문익은 수없이 많다.

마. 기일 진행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명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지배인,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자격과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기일에서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쌍방의 진술 내용과 감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조정실적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을 합하여 25명으로, 7개의 합의조정부와 3개의 단독조정부로 총 11개의 조정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09년 저작권분쟁조정 건수를 살펴보면, 통합 전 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저작물 분야 16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의 6건과 7월 23일 통합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3건을 합하여 총 55건이다. 여기에 통합 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 3건의 알선실적이 있다.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처리된 총 55건의 조정신청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립된 건수가 29건, 불성립된 건수가 10건이며, 취하 등으로 종결된 16건을 제외하면 불성립 대비 성립률은 74.3%로 70%를 상회하는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²⁵⁾

조정건수를 저작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55건 중 어문저작물이 10건, 음악저작물이 3건, 연극저작물 1건, 미술저작물 7건, 사진저작물 11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6

건, 저작인접물 4건, 편집저작물 2건 등이다. 이중 컴퓨터프로그램, 사진, 어문저작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미술저작물, 저작인접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정 건수 못지않게 그 성립률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에게 강제적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저작권분쟁조정제도가 높은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높은 조정성립률의 배경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해당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조정접수 단계에서부터 기일진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정기일 진행과정에서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아무런 격의 없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또 조정부는 이러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조정 특유의 절차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12] 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2009년 7월 22일 이전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²⁶⁾
2005	40	15	12	—	—	—	—	67	72.7
2006	27	21	43	—	—	—	—	91	56.3
2007	17	14	13	—	—	—	—	44	54.8
2008	23	19	7	—	—	—	—	49	54.8
2009	8	2	6	—	—	—	—	16	80.0

25) 조정성립률 = 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 × 100

26) 조정성립률 = 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 × 100

[표 1-13] 저작권위원회 연도별 · 분야별 조정 건수

2009년 7월 22일 이전

연도 분야	2005	2006	2007	2008	2009
어문	31	24	13	9	4
음악	1	30	4	15	1
연극	0	0	0	0	—
미술	12	5	8	5	5
건축	1	0	0	0	—
사진	13	16	8	10	4
영상	0	1	0	3	—
도형	0	0	2	0	—
편집	6	6	4	4	1
이차적 저작물	1	1	0	0	1
저작 인접물	1	6	5	1	—
데이터베이스	1	2	0	2	—
계	67	91	44	49	16

[표 1-14]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2009년 7월 23일 이후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2009	19	8	6	—	—	—	—	33	70.3%

[표 1-15]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 분야별 조정 건수

2009년 7월 23일 이후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이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 인접물	데이터베이스	계
2009	6	2	1	2	—	7	—	—	10	—	1	4	—	33

(2) 중재²⁷⁾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표한 분야별 상사중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지적재산권분야의 상사중재건은 총 6건으로 2008년 0건 대비 600%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1-16] 2009년 분야별 상사중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9년	2008년	전체 증감율
	계	계	
국내상거래	122	105	16
건설	64	62	3
무역 · 국제상거래	64	52	23
해사	28	16	75
기술	8	7	14
금융	3	6	-50
지적재산권	6	0	600
고용	3	1	200
부동산	12	9	33
기타	8	4	100
계	318	262	21

27)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계간중재 제331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년도 사업실적

3. 저작물 감정

(1) 저작물 감정제도

최근 저작권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 및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저작권 분쟁 시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법적·전문적 경험 및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독으로 침해 여부를 가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물 감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및 제119조에 따라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규정한 ‘감정’(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부분)과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정’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저작물 감정을 통해 효과적인 권리보호 및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SW 감정은 기술적 측면의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일반저작물 감정은 특성상 SW 감정보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은 SW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이 동일하지만, 일반저작물 감정은 기술적 분석에 따른 판단뿐만이 아니라 분석을 바탕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1) 감정 관련 법규정

감정 관련 법규정으로 「저작권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인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저작물 감정 분야 및 유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은 크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정(이하, ‘SW감정’)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감정(이하, ‘일반저작물 감정’²⁸⁾)으로

28) 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감정 실무상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유형을 일반저작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분된다. SW 감정은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유사(동일)도 감정, 완성(하자)도 감정, 개발비용 산정 감정 및 기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저작물 감정은 어문, 연극, 미술(응용미술 포함), 건축, 음악, 사진, 영상 및 도형저작물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쟁 대상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유사 여부를 다룬다.

〈감정 유형에 따른 개념〉

- 유사(동일)도 감정 : 두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저작물 감정 및 SW 감정에 모두 해당
- 완성(하자)도 감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위탁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SW 포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의 문제점, 단위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및 개발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 분석과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완성 및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SW 감정만 해당
- 개발비용 산정 감정 : SW 개발에 있어서 그 공정상의 개발비용 등을 SW 공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SW 감정만 해당

3) 감정의뢰 사항의 형태

감정의뢰 유형은 SW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으로 구분된다. SW 감정의 경우 크게는 유사(복제)도, 완성(하자)도, 개발비 산정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관한 감정, 즉 SW 분야 전반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저작물 감정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근거가 되는 유사도 감정이 수행된다.

가. 유사도

- A 저작물이 B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A 저작물이 창작성(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
-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의 유사(복제)도
- 특정된 부분에 대한 두 프로그램의 유사 정도 등

나. 완성도

- A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는지
- A 시스템이 최초 계약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 여부
- 특정된 기능들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구현되는지
- A 프로그램이 계약의 내용과 같은 성능을 갖는지 여부 등

다. 개발비 산정

- A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적정 개발비용 산정
- A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4)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제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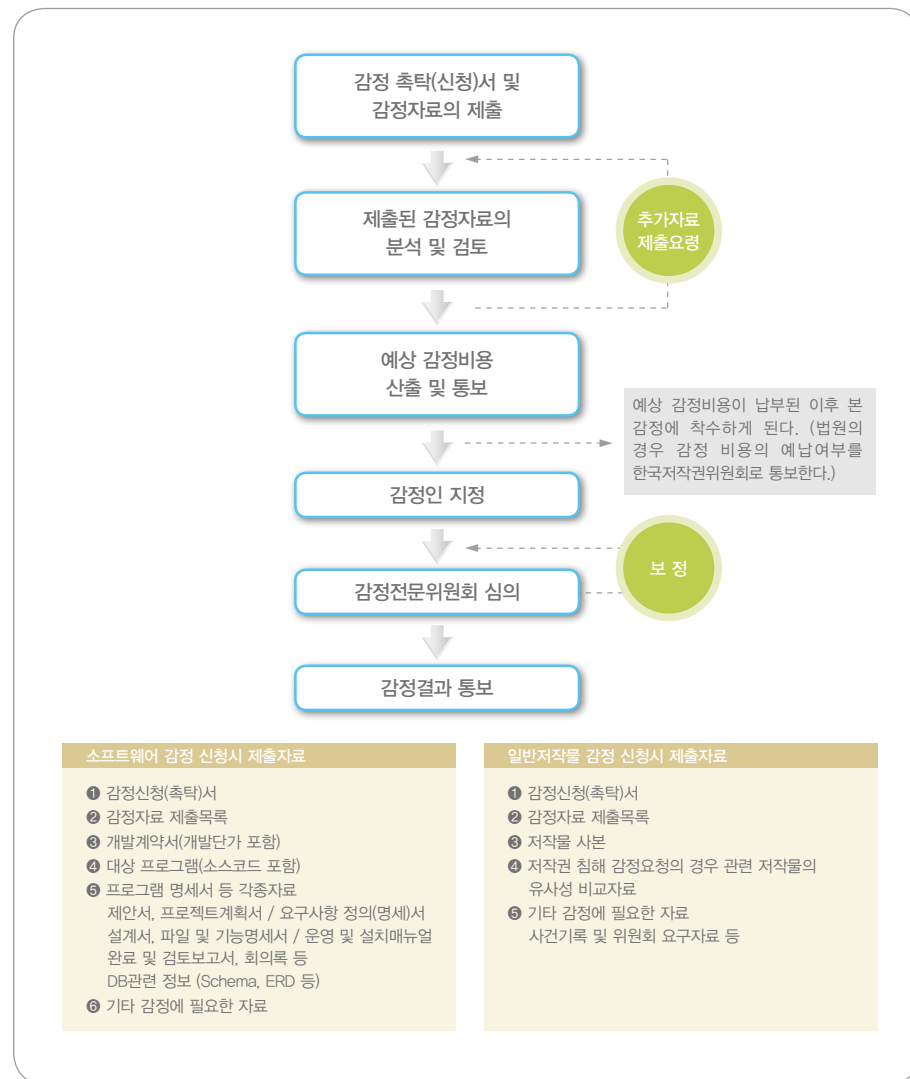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은 각 저작물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고,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감정결과와 신뢰성이 보장된다. 특히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私)감정과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정의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감정을 의뢰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다.

5) 감정업무 절차

감정 착수 및 진행을 위하여 먼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의뢰(법원의 촉탁 등)가 있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감정비용을 의뢰기관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예상 감정비용이 예납되면 본격적인 감정에 착수하게 된다.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의뢰(촉탁)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1-6] 감정업무 절차



가. 사건개요

피고소인(이하, ‘을’)은 고소인(이하, ‘갑’)이 운영하던 어학연구소에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을’은 ‘갑’의 어학연구소를 퇴사한 이후 동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을’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자신의 어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개발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절도 등의 혐의로 ‘을’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을’은 해당 프로그램이 ‘갑’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나. 감정요청사항

이에 ‘갑’의 프로그램 중 공개된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외한 ‘갑’ 프로그램만의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그 부분 중 ‘을’의 등록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감정의 요청사항이었다.

또한 ‘갑’ 프로그램과 ‘을’의 등록 프로그램에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제 때문인지, 아니면 모두 공개된 소스코드(source code)를 사용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를 감정하여야 했다.

다. 감정결과

감정결과, ‘갑’의 프로그램 중 ‘을’의 등록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의 정도는 소스코드(source code)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사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스코드(source code) 유사도는 원본기준 96.9%, 비교본 기준 97.2%이며, 인터페이스 유사도는 원본기준 79.5%, 비교본 기준 85.7%로 확인되었다. ‘갑’과 ‘을’의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소스코드(source code)를 사용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스코드(source code) 유사도가 위와 같이 높게 나타난 점은 그 원인이 공개소스의 사용이 아닌 복제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Visual Basic Control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터페이스 유사도를 산출한 결과, 원본기준 79.5%, 비교본 기준 85.7%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사도가 산출되었다.

(2) 재판 등에서 유형별 감정의 활용 사례

1) 유사도 감정²⁹⁾

29) 2009 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22~25면에서 인용.

일부 프로그램은 design 파일(일종의 데이터 파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행파일과 데이터파일이 모두 존재해야함)이 없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는데, 이 경우 대응되는 ‘갑’ 프로그램의 design 파일을 복사하여 ‘을’의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았을 때 ‘갑’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수행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design 파일은 이진파일(binary file)로 구성되어 있어 이 파일을 프로그램 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에서 같은 design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프로그램 복제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성적 근거가 되었다.

라. 법원의 판단 결과

“이 사건 동영상프로그램이 고소인의 2001년 프로그램과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2001년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동영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프로그램 모두를 서로,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이 사건 동영상프로그램에 사회통념상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인 부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시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 프로그램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2001년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2928 판결)

2) 완성도 감정³⁰⁾

가. 사건개요

원고는 2002년 12월 피고와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이하 ERP이라 한다)시스템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ERP시스템을 개발·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동 ERP시스템이 갖은 오류와 기능 하자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다.

나. 감정요청사항

이에 원고가 피고에 공급한 ERP시스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원고가 피고에 공급한 ERP시스템이 보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하더라도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야 했다.

다. 감정결과

감정 결과, 원고가 피고에 공급한 ERP시스템은 영업관리와 기준관리정보관리 부분을 모두 종합할 때 86.3%의 완성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스템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인원을 참작한 총 하자보수 비용은 해당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핵심 기술자(고급기술자) 1인을 기준으로 약 15일(1일 8시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2,952,885원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은 보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법원의 판단 결과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의 종합완성률은 86.3%(영업관리 완성률 84%, 기준정보관리 완성률 91.3%)이고 미완성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며, 이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5일(고급기술자 1인이 하루 8시간 투입될 때)로서 그 비용은 2,952,885원이다.”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07. 1. 현재 이 사건 정보시스템이 100%로 완성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중략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개발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발주자)로부터 받은 공급대금 19,7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5 211949(본소), 2008나21231(반소) 판결)

30) 2009 SW저작권 등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43~45면에서 인용.

(3) 주요 감정관련 활동

기존 일반저작물 감정과 SW 감정을 각각 담당하고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법」개정으로 2009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감정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표 1-17] 연도별 감정의뢰 현황(최근 5년 간)

구분	SW 감정			일반저작물 감정	합계
	유사도	완성도	개발비 산정 등		
2005년	21	4	1	—	26
2006년	23	8	8	—	39
2007년	29	16	3	—	48
2008년	27	11	8	1	47
2009년	23	13	8	2	46

1)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감정결과와 신뢰성 및 정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 저작물 유형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기준의 적합성, 감정방법의 타당성, 감정내용의 명확성 및 감정결과와 공정성을 심의한다. 현재 4개의 감정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 감정인 워크숍 개최

SW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정기법의 발굴·감정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감정인 상호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감정의 질적 향상도 모를 목적으로 감정인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감정인 워크숍에서는 각 감정인들이 감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저작물 감정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일반저작물에 대한 감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SW 분야뿐만 아니라 각 저작물 분야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1-7]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인 워크숍



3) SW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의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SW의 유사도 감정 시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SW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exEyes)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유형 및 복잡도 등 SW 감정을 둘러싼 기술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감정도구도 지속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 개발된 감정도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4) 감정관련 기초분야 연구 육성

급격히 변화하는 저작물 감정 관련 환경에 적응 및 대응하기 위해 감정기법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매년 초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ERP시스템의 감정수요가 증가하고,

일반저작물에 대한 감정이 시작됨에 따라 'ERP시스템 완성도 감정을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및 '디지털 저작물의 감정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감정관련 기초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감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감정과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 및 각종 컨퍼런스 등을 개최·지원하고 있다.

[그림 1-8] SW 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그림 1-9]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세미나



4. 법률상담

(1) 법률상담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종사자와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적인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법률상담 서비스 유형

1) 온라인 자동상담시스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담·분쟁 사례 및 피해구제 조치 등에 대해 이용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택해 가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자동상담시

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0]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



2) 오프라인 상담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답변을 듣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화·내방·서신·이메일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사안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이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3) 연도별 법률상담 추이 및 현황

디지털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총 상담건수는 70,215건으로 2008년보다 1만4천여 건이 늘어 약 25% 증가하였으며, 2009년 오프라인 상담건수는 8,828건으로 2008년 대비 약 68% 증가하여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상담매체별 및 유형별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1-18] 최근 5년간 연도별 상담통계

(2009년 12월 31일 현재)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 ()는 온라인 자동상담 건수

[표 1-19] 최근 3년간 매체별 상담통계

연도	온라인	오프라인					계
	자동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내방상담	서신상담	소계	
2007	47,382	5,047	253	173	14	5,487	52,869
2008	50,931	4,664	338	236	20	5,258	56,189
2009	61,387	7,831	754	209	34	8,828	70,215

[표 1-20] 2009년 저작물 유형별 상담 통계

저작물 유형	상담건수	비율(%)
어문저작물	12,898	18.4
영상저작물	9,015	12.8
사진저작물	7,766	11.1
음악저작물	6,473	9.2
미술저작물	5,050	7.2
음반	3,137	4.5
실연	3,057	4.4
방송	2,530	3.6

연극저작물	2,198	3.1
건축저작물	2,017	2.9
도형저작물	1,648	2.3
외국인저작물	1,615	2.3
프로그램저작물	1,594	2.3
데이터베이스	867	1.2
기타저작물	10,350	13.4
전체 이용건수	70,215	100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연구(한국 저작권법학회, 오승중)’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 기준 개정의 논거와 디지털 교과서의 보상금 기준 마련,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서책형 교과서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1999년 최초 고시 이후 지난 10년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수준이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며 불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인바, 이를 고려한 금액을 효율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책형에 비해 감액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교과서에 음원과 동영상 파일의 수록이 가능해지면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자체 또는 위탁 연구 등을 통해 발행한 연구보고서는 크게 제도 연구, 기술 연구, 교육 등 기타 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저작권 제도 연구

먼저 저작권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 이전에 발행한 ‘저작권사용료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통합 이후의 ‘SW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 등 총 12권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사용료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권리자(또는 권리자의 위임을 받은 권리단체)와 사용자 간의 저작권사용료 분쟁이나 권리자와 권리단체 간의 보상금 분배 관련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절차 모색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과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분쟁해결제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현행 조정제도의 보완, 중재절차의 활용, 재정절차의 도입, 심판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과 상당성을 정하는 기준 등을 다루었다.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한 결과물을 엮은 것으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및 현재 SW 산업의 실태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SW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수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가급적 넓게 인정하고,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호환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토록 하며,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상안과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공정이용 개념의 도입과 추가적인 예외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이 열거적 제한규정으로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한·미 FTA로 공정이용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이용 법리의 발달과정과 최근의 논의 동향, 미국의 주요 사례를 통한 판단요인별 비중과 상호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타진하고 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상 쟁점적 과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선진각국의 저작권 제도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상대성과 현실성을 논하고 유럽지침, 베른조약 등 국제조약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외국법을 국내에 도입할 때 주의할 점과 국내 저작권 제도의 개선점 및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저작권법」의 해석, 제도연구, 외국 「저작권법」의 도입, 「저작권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학술적 일반이론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아직 입법을 기다리는 사항의 법령작업의 선행적 조사연구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는 건축과 건축저작물의 실체와 특징을 적출하여 그 보호 필요성을 정리하고,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의 중요 요소를 건축물, 건축설계도서, 기타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과 미술성에 대한 견해, 판례기준, 보호범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건축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계약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는 각국의 집중관리제도와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중첩에 따른 사용료 징수배분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내 징수 규정과 비교해보았다. 미국의 경우 포괄계약과 공연권으로 음악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고,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권리가 중첩된 채 이중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송행위에 복제가 동반된다고 해석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시 전송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징수료와 이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이용현황 및 형태, 산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적절함을 밝혔다.

‘통합 저작권법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연구’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관련 규정이 「저작권법」상 특례규정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동 개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명하였다.

‘SW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는 국내 중재 내지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의거, 현황분석 및 국내 중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풀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저작권, 특허권 등 청구권원의 유형별로 중재가능성 및 중재절차진행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중재기관의 현황분석을 정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가 실질적인 기관중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둑 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는 기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바둑 경기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보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외부적 표현·창작성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바둑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바둑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조항에 신설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는 제한적 공정이용 규정 도입과 공정처리 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를, 사적 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독일 「저작권법」처럼 명백히 그 건본의 출처가 불법인 경우에만 사적 복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확장,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적복제 금지 등을, 배제특약과 관련해서는 배제특약이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관련규정 또는 지침을 고찰하여 국내 「저작권법」의 형사처벌조항에 대해 첫째, 상업적 목적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반이용자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문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에서 해석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하여 침해자에게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모면의 기회는 최소한으로 부여하면서 소추의 개시가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셋째, 인터넷상 불법다운로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Ⅲ’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동일 표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마지막 보고서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판례 분석, 각종 가이드라인과 연구윤리규정의 역분석, 서론부터 참고문헌 기재방식까지 각 개별요소의 분석, 표절판정 기준 등을 통해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안)에서 표절의 정의와 유형, 출처표시, 부적절한 출처표시, 출처표시의 방법, 정당한 범위, 자기표절·중복게재, 부당한 저작 표시, 제재, 소급효와 적용기준, 판정 절차, 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안내하고 있다.

[표 1-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제도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1	저작권사용료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박익환)
2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	위원회 (윙킹그룹)
3	공정이용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공동연구 (이규호, 서재권)
4	저작권법상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위원회 (서달주)
5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위원회 (이호흥)
6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위원회 (이진태)
7	통합 저작권법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연구	위원회 (김혜창, 김찬동)
8	SW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법무법인 유일 (전응준)
9	바둑 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박성호)
10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병일)
11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12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Ⅲ	(남형두)

(2) 저작권 기술 연구

저작권 보호 기술과 관련한 연구로는 ‘소스코드 역분석 방지를 위한 난독화 기법 연구’ 등 총 9권의 보고서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스코드 역분석 방지를 위한 난독화 기법 연구’는 기업에서 중요한 SW 소스코드

(source code) 기술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저작권 분쟁 발생 시에는 침해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난독처리기술과 같은 SW 보호 기법 현황을 밝힌 다음 그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또한 국내외 난독화 관련 기술 조사와 분석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난독화 관련 사업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으며, 향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실행코드간 유사도 비교 자동화 검증 방안 연구’는 SW의 불법복제로 인한 소스코드(source code) 도용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의 소스코드(source code) 유사도 감정을 통한 침해 사실 입증 방법이 아닌 소스코드(source code) 없이 실행코드만으로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기술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실행코드 유사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등을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행코드 유사도 감정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 소스코드(source code)의 획득을 위한 선행 감정 방법으로 실행코드 간 유사도 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베디드 SW의 감정기법 표준화 방안 연구’는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된 분쟁 및 감정 수요 증가를 대비, 임베디드 시스템 감정의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에 임베디드 SW 관련 감정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적인 절차를 도출하고 있으나 그 범주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SW의 감정 요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사도 감정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모범이 될 수 있는 감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표준화된 규정이나 규범이 아닌 감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는 저작물 및 저작권의 유통 가치사슬(value chain)상에서 선순환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국내 주요 저작권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체계를 표준화하고, 생성된 권리관리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자원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 저작권 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메타데이터 기술언어의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와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향 등을 다루었다.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의 첫 번째 연구인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인증’은 복잡한 시장상황에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특수한 유형의 OSP가 기술적으로 활용할 때 평가 방법과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에 음악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동향과 국내외 유사 인식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동향, 설문조사 분석,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체계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특징기반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의 요구사항 반영은 물론 시장에서의 기술 수준파악과 OSP들이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의 두 번째 연구로 실시한 ‘음악 포렌식마크 기술 성능평가 인증’ 연구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하 DRM이라 한다)기술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DRM-free라는 상반된 시장의 요구와 혼란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DRM-free 환경에 맞춰 권리자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인 음악 포렌식마크 기술의 동향 및 산업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국내 표준평가인증으로서 시장 및 경제성을 분석, 객관적 근거로써 활용되도록 제시하였다.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의 세 번째 연구로 실시한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표준화 연구’는 DRM이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임은 틀림없으나 호환성 부재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DRM 기술 중 서비스 및 기기의 선택 자유권 보장, 콘텐츠의 사적복제권 보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DRM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충돌 현상 분석 및 이에 대한 방지책과 기술적 가이드라인 등을 다루고 있다.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의 네 번째 연구로 실시한 ‘지상파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

를 위한 표준기술규격 연구’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앞서 방송 콘텐츠의 엄격한 이용통제를 하는 DRM 기술 대신, 일종의 스티드 범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권리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불법복제 혹은 업로드 시 저작권 경고문 또는 권리관리정보 표시문 등을 표시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사용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에 효과적인 대국민 저작권 교육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음악저작물 유사도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는 국내 음악저작물의 표절 기준과 표절로 인한 사후 저작권정보 변경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음악저작물의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및 데이터 생성 프로그램 분석을 기초로 음악저작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인 악보를 통한 유사도 비교 시험프로그램 ‘엔코보’를 개발하고 음정을 기본으로 한 음정 유사도 산정과 박자 유사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음악저작물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범위에서의 음악저작물 감정의 확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의 구축과 실질적 활용을 통한 표절 심의 기구의 표절 심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표절 시비 최소화 및 음악저작물 유사도 판단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예측하였다.

[표 1-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연구보고서 목록

연번	서명	연구수행기관(연구책임자)
1	소스코드 역분석 방지를 위한 난독화 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조성제)
2	실행코드간 유사도 비교 자동화 검증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육세)
3	임베디드 SW의 감지기법 표준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재화)
4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오상훈)
5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인증	상명대학교 (김종원)
6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2: 음악 포렌식마크 기술 성능평가 인증	상명대학교 (김종원)
7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3: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표준화 연구	DRM인사이드 (강호갑)

8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4: 지상파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기술규격 연구	DRM인사이드 (강호갑)
9	음악저작물 유사도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비이소프트이엔씨 (김무승)

(3) 저작권 교육 및 기타 연구

저작권 교육 및 관련 산업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발행한 보고서로는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 등 총 23권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는 국내 저작권 기반산업을 핵심 저작권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으로 분류하고, 2005~2007년도 각 저작권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약 3.14~3.26%이며, 저작권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핵심 저작권 산업의 진흥과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오픈소스SW 관련 국제분쟁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는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라이선스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보내진 리포트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와 같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프리소프트웨어재단, 이하 FSF라 한다)나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 이하 SFLC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이하 GPL이라 한다) 등 라이선스 조건의 준수와 금전적 보상, 오픈소스SW Compliance Officer의 설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응전략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험이 축적된 기업들이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도 관련 자료를 가이드의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W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은 SW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SW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SW 원천기술 유출방지 체계 구축, SW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SW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SW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통합가이드 개발’은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발생한 총 253건의 SW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크게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SW 불법복제 또는 개작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33.60%, SW 기업의 인적 자원이 이동에 따른 SW 저작권 침해가 31.6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SW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통합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가이드에는 SW 저작권 침해 사례, 분쟁유형, 침해 예방 방안 및 예방을 위한 점검리스트, 표준계약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연구’는 국내 SW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SW 자산 관리 체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조직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단계별 개선 모델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50인 이하의 기업에는 ISO/IEC 19770의 Tier 1을 우선 적용한 후 개선활동을 통해 Tier 2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공공부문에는 정보자원관리체계와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이하 SAM라 한다) 연동을 통해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에 조달청의 SW 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Copyright issue report 2009’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한 해 동안 격주로 발행한 저작권 이슈분석 및 동향 정보를 묶은 것으로, 일본의 공정이용 제도 도입동향, 구글박스 프로젝트와 미국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의 이용 등 해외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분석한 것과 국내외 북미, 유럽, 중화권, 동남아, 국제기구의 동향을 조사하여 제공한 내용들을 신고 있다.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과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험본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국어, 도덕, 과학 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를 분석함으로써 저작권 교육의 반영 여지를 조사하였는데, 교육과정에 직접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으나 국어과에 저작권에 대한 용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고, 도덕과나 과학과도 저작권 교육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일부 발견되어,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SW 및 디지털저작물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은 저작물 감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저작물 전문감정인의 자격조건을 저작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현직 대학 교수로 하고, 서류심사와 기존 저작물 전문감정인의 추천서, 저작물 전문감정인 양성 교육 수료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림, 사진, 건축 등 일반저작물에 비해 감정 난이도가 높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일반저작물과 구분하고, 공통 필요 교육,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필요 교육, 일반저작물 필요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합리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SW가격 기준 조사 연구’는 SW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 위반행위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법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법리적 기준을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 법이론 및 판례에 관한 기초적 검토와 국내 시장 조사, SW 유통방식과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 편차 조사 등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유동적인 SW의 가격 속성 상, 세밀한 법리적 검토와 실제 국내시장에서의 실태조사가 꾸준히 병행되어 SW저작권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제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1’은 중국 내 온라인을 통해 국내 영화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과 조사대상 사이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중국 내 전문동영상 무료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율은 80~90%, 유료 웹사이트는 60~70%, 포털사이트, P2P사이트, 한글웹사이트, 검색사이트 모두 80~90%, 통신사 자체 부가서비스 사이트는 단순 평균 62%이나 제공자 표시가 없는 것 중에서 절반을 수권받은 것

으로 가정할 경우 76%, 기타 웹사이트는 80~90%로 추정되었다.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는 중국 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 현황과 조사대상 사이트에 대한 침해증거보전, 경고장 발송, 소송제기 등의 법적조치를 위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 음악 저작권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은 중국 내 저작권 등록기관인 중국판권 보호중심이 중국 내 음악 저작권의 관리 실태와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한류’라 지칭되는 국내 문화콘텐츠의 인기로 인한 우리 저작물의 중국 내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선행 연구이다. 이에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 검색 서비스 제공자, P2P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조사,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 음악 저작권관리 자료를 제시하였다.

‘태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는 태국의 인터넷 사용자와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산업화된 범죄조직에 의한 오프라인 불법 소비시장이 소비자의 자발적 불법복제 및 유통 참여로 변화된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의 침해 방법과 실태를 조사하고 침해 대처 방안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 진행하였다. 이에 태국 온라인상에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우리 저작물을 취급하는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저작물의 불법 소비시장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및 구체조치를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 우리 저작물 인터넷 침해 구체조치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작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는 저작권 교육의 표준화와 내실화를 위한 저작권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저작권 교육 및 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석과 모형을 제시하고 저작권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문항 개발과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행방안을 모색, 앞으로 진행될 표준화,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 평가지표 개발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외국법전 번역을 통한 제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저작권법」이 중요한 법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연구가 부진함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1993년도 출간된 프랑스 저작권법 번역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 제정된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보호와 배포 촉진을 위한 법(HADOPI법)’을 포함하고 있다.

‘SW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감정 사례집’은 SW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SW 감정의 비중과 영역이 확대되자, SW 감정제도와 SW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의 감정사례 및 판례의 소개를 통해 법률정보가 부족한 SW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SW관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사후 해결을 위한 길잡이로 활용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은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생활과 연계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상담사례를 통한 다양한 쟁점 및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슈는 물론 종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례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은 물론 저작권 실무종사자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 저작권 판례집 12’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연구자 및 저작권 산업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된 총 28건의 사건에 대한 「저작권법」의 해석과 판례 및 기타 참고가 될 만한 관련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이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게 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분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작권분쟁조정 신청에서부터 조정 성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담긴 중요한 내용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저작권분쟁조정 사례를 저작권분쟁조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문과 저작권, ‘출판과 저작권’,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은 저작권 아카데미의 분야별 표준교재로서 「저작권법」의 기본적 내용 설명 및 신문, 출판, 공무원 업무 관련 각 분야별 100가지 질의응답을 통하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010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SW 관리체계 구축과 SW 관리업무 표준화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서로 SW 관리의 필요성, SW 라이선스, SW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와 SW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더불어 SW 관리규정, 서약서, SW 관리 체제 자가 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SW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표 1-2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및 기타 보고서 목록

연번	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1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일)
2	오픈소스SW관련 국제분쟁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철남)
3	SW 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전병태)
4	SW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통합가이드 개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김도완)
5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황경태)
6	Copyright issue report 2009	위원회
7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연구: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승 외)
8	SW 및 디지털저작물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용환승)
9	합리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SW가액 기준 조사 연구	한국기업법무협회 (고재종)
10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1: 영화분야	북경안료지적재산권대리유회사 (전효동)

11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 음악분야	북경안륜지적재산권대리유한회사 (전효동)
12	중국 음악 저작권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	중국판권보호중심 (추건화)
13	태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권승호)
14	저작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청소년교육전략21 (정문성)
15	프랑스 저작권법	위원회 (서달주)
16	SW지적재산권 분쟁사건 감정 사례집	위원회
17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위원회
18	한국 저작권 판례집 12	위원회
19	저작권분쟁조정사례집	위원회
20	신문과 저작권	(김규희, 이재근)
21	출판과 저작권	(이영록)
22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최종철)
23	2010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위원회

3. 유관 학회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 조사 연구를 통해 저작권 제도의 향상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회 중에서 2009년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가 있다. 이들 학회의 주요 연구활

동은 세미나·포럼 및 위탁연구의 형태로 저작권법제도 연구에서부터 사회적 이슈인 저작물 이용, 디지털콘텐츠, 이러닝산업, 앱스토어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학회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술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인터넷과 디지털환경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거래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춘추계학술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고 디지털재산법연구서 발행과 관련 산업의 위탁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는 한국 소비자원 이기현 팀장의 ‘DC이용자 피해현황 및 이용보호제도의 문제점’,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의 ‘포털(웹정보) 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의 ‘이-러닝 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 경원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모바일 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등 총 4가지 발제를 통하여 2009년 4월 22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젠테이션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2009년 한국디지털재산법 학회의 포럼은 크게 2건으로 2009년 9월 3일 최진원 박사의 발제로 실시된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물 판매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사례분석’의 연구포럼과 게임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자유주제로 매월 1회 실시되는 게임관련 저작권법제연구포럼이 있었다.

이외 간행물로 디지털재산법 연구 제8권(통권12호)이 있으며, 위탁연구보고서로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및 SKTelecom의 ‘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저작권의 보호’가 발행된 바 있다.

(2)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학문과 산업의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월 실시되는 월례사례연구회와 연 1회 발간되는 학술지 및 위탁연구를 통해 꾸준히 연구조사를 펼치고 있다.

월례사례연구는 2009년 총 8회로 제15회부터 제22회까지 실시되었다. 제15회 월례사례연구는 ‘외주드라마 관련 저작권분쟁 사례연구’의 주제로 SBS 안재형 변호사가 발제했으며, 제16회 ‘온라인 광고와 개인정보’의 주제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양지연 미국변호사, 제17회 ‘게임물등급 심의관련 판례의 분석과 전망’의 주제로 정준모 변호사, 제18회 ‘한국영화산업의 전망’의 주제로 바른손 서우식 부사장, 제19회 ‘미국 Entertainment의 동향’을 주제로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of Oregon 염규호 교수, 제20회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중재’의 주제로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차장, 제21회 ‘TV 프로그램 포맷 유통의 실제’의 주제로 (주)Everyshow 권오형 대표, 제22회 ‘RS-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엔탈서비스 사건)’의 주제로 안혁 변호사가 발제, 진행하였다.

이외 발행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위탁으로 실시된 엔터테인먼트법학이 있다.

(3)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인터넷법학과 관련한 연구, 조사, 발표 및 교류를 기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러가지 현상을 법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정례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연구기반을 다지면서 학술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한국인터넷법학회의 학술대회는 하계·동계 및 공동학술대회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하계 학술대회는 2009년 6월 29일 ‘인터넷 현상과 법규범의 충돌 -새로운 법질서

의 정립은 가능한가?’의 주제로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총 3개 분과로 나뉜 하계 학술대회는 제1분과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의 ‘인터넷 실명제와 법적 문제’를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의 ‘인터넷 포털과 법적 문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김재광 교수의 ‘온라인 행정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제2분과는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의 ‘Web 2.0 시대의 민사법적 과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의 ‘온라인침해에 대한 행정명령제도 - 개정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의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과 그 해석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2008나70720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제3분과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신동일 교수의 ‘스팸메일의 형사책임’,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의 ‘사이버공간상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8월 21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는 ‘신뢰기반의 정보사회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의 주제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찬모 교수의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선문대학교 법학과 김재광 교수의 ‘국가 전체 차원의 사이버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대검찰청 김영일 검사의 ‘사이버범죄 퇴치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2009년 12월 21일 실시된 동계 학술대회는 ‘인터넷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의 대 주제 아래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의 ‘가상세계에서의 이용자 보호’,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와 이용자보호’,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고형석 교수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로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의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연구위원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 정책적 지원방안’, 용인송담

대학 법률실무과 박영철 교수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등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다.

(4)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는 저작재산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 흐름에 맞추어 국내외 저작권관련 법제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향상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어 저작권관련 세미나 및 학술연구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춘계·추계학술세미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연구로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를 실시하였다.

춘계학술세미나는 ‘저작물이용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방안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산업연구원 최봉현 박사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의 ‘어문 저작물 전송사용료 기준’의 발제로 2009년 4월 3일 한국저작권법학회 주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주관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실시한 공동학술대회로 실시된 추계학술세미나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미 교수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관련 미국의 최근판례’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형렬 겸임교수의 ‘동일성유지권에 있어 동일성 개념에 대한 재고’,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태복 교수의 ‘특허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진보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2009년 11월 13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한 저작권 포럼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의 주제 하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의 발제로 2009년 11월 25일 저작권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5)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 정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2009년 총 5건의 정례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정보법학회의 2009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3월 10일 ‘공간정보통제의 법적 문제’, 12월 8일 ‘개인화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건국대학교 정연덕 교수의 ‘구글뷰(Google View)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가톨릭대학교 이민영 교수의 ‘개인화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의 발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한국정보법학회 제13회 정기 심포지움은 ‘융합콘텐츠와 법 : 공정거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 2분과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제1분과는 ‘콘텐츠 이용계약과 대가산정’의 대 주제 아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의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계약 실태’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의 ‘창작 환경의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경제학박사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적정 가격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어진 제2분과는 ‘디지털거래 불공정행위’의 대 주제 아래 세분화된 4개의 발제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경쟁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김앤장 황창식 변호사의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 양면시장이론의 관점에서 본 티브로드 케이블 TV 대법원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율촌 이선희 변호사의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쟁점과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 공정경쟁 유도방안 ; 지상파재송신과 콘텐츠 동등접근 문제’로 진행되었다.

2009년 9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한화리조트설악에서 이루어진 한국정보법학회 야외세미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의 대 주제 아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TPS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의 ‘저작권법상의 계정정지 및 게시판정지’, 특허법원 박태일 판사의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한국정보법학회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최근 경향과 국제재판관할 문제’의 주제로 2009년 10월 2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 4개의 발제로 이뤄진 국제세미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김종운 위원장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Paul D. McGrady의 ‘Issues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부장판사의 ‘도메인이름 국제분쟁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법률사무소 강호 조정옥 변호사의 ‘WIPO 조정절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경향 비교’로 진행되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세미나 외에도 정기 사례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음, 네이버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원격방송프로그램저작서비스와 저작권’, ‘포탈의 책임범위에 관한 최근 해외동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문제’를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연구 발행물로 4월, 8월, 12월, 연 3회 발간하는 정보법학 학술지를 통해 연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6)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어 한·중 지적재산권 학술교류 및 연구·강연회 개최, 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의 상반기 국제세미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

결방안’의 주제로 2009년 1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중남재정정법대 지적재산권대학의 Zhao Jiay(자오 지아이) 부원장의 ‘중국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과 한중지적재산권 보호’를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한중 기업 간 상사분쟁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 변호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콘텐츠 분쟁해결 방안’ 주제로 대한상사중재원 서정일 위원, ‘한중 게임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주제로 법무법인 세화 정정석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의 하반기 국제세미나는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의 주제로 2009년 12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총 7개의 주제로 이뤄진 하반기 국제세미나는 북경대 법학원 曲三强(취싼치양) 교수의 ‘국제 저작권 질서와 중국의 저작권 법체제’를 시작으로 인민대 지식재산학원 刘春田(리우춘티엔)교수의 ‘중국저작권법제의 모순과 그 해결책’, 중국국제판권교역센터 殷秩松(인즈송) 총경리의 ‘판권거래공개시장이 중국판권보호와 개발에 미치는 촉진작용’, 중남재정정법대 지적재산권 胡開忠(후카이중) 교수의 ‘중국 저작권 보호의 실천과 개선’의 중국 측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한춘영 중국 변호사의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사례’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인 김형렬 박사의 ‘게임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의 주요 쟁점 고찰’로 마무리 되었다.

이외에도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위탁 연구로 ‘저작권집중 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2009년 9월에는 중국의 길림대학 법학원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1. 보호 정책의 개요
2. 침해 현황
3. 보호 제도 일반
4. 국내 보호 활동
5. 해외 보호 활동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개요
2. 교육 내용 및 활동
3. 홍보 내용 및 활동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 기술 현황
2. 기술 연구 및 활동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1. 보호 정책의 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9년도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조 2,497억 원이며, 이 중 온라인에 의한 침해금액은 전체의 63%인 1조 4,251억 원에 달하고 있다.³¹⁾ 우리나라가 2년 연속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 무역대표부, 이하 USTR이라 한다)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웹하드·P2P(peer to peer) 사이트 내에서 제휴 콘텐츠가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³²⁾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일류 선진 문화국가 건설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2008년 2월 정부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불법저작물 근절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2월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과 문화 창작 의지 고취를 위하여 ‘2009년도 불법복제물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 첫째, ICOP 구축 등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직업적·상습적 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시 단속 강화 셋째, 웹하드·P2P(peer to peer)서비스를 운영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및 시정권고·명령 등 행정조치 강화 넷째, 대학가, 용산 등 집중 단속 및 불법저작물 유통·제작업자에 대한 단속, SW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오프라인 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 등이 있다.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제고 활동과 더불어 불법저작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 역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1] 2009년 불법복제물 단속 종합계획³³⁾



3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안), p6

31) 출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32)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4조에서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저작권 보호, 교육·홍보 등과 함께 「저작권법」 제2조의 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시책 규정에 포함됨

2. 침해 현황

(1) 2010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라 한다)는 매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분석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경인)에 사는 20대 남성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 콘텐츠 사용량을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는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을 주로 이용하고, 10대는 출판물과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많았고, 불법복제 출판물은 수도권(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영화물과 방송물은 수도권(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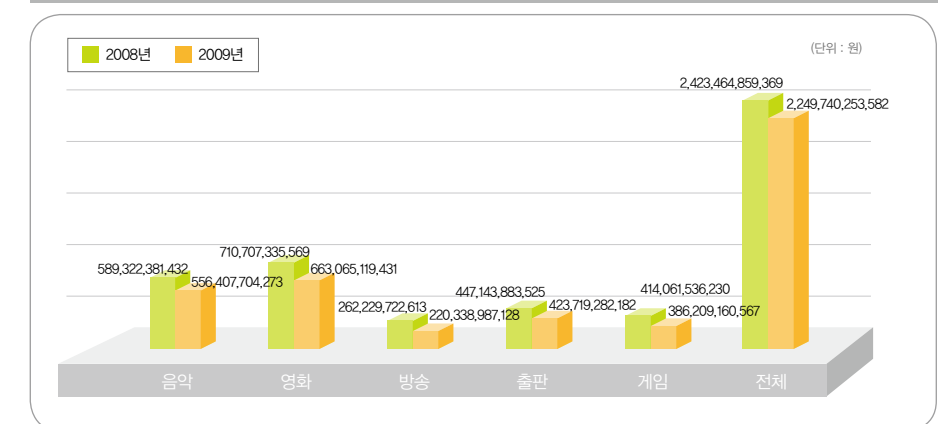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약 4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5.15개(1년 평균 61.8개)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데 매달 약 1,886원(1년 평균 약 22,632원)을 지출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8,784억 3,976만 1,225원으로 2008년 9,659억 7,530만 5,951원에서 약 900억 원(-9.1%)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 강화에 따라 일부 OSP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총 2조 2,497억 4,025만 3,582원으로, 2008년의 2조 4,234억 6,485만 9,369원 대비 약 1,961억 원(7.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합법콘텐츠의 판매가격이 이용하기에 비싸다고 느낀다는 것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가격은 실제 유통가격의 약 65~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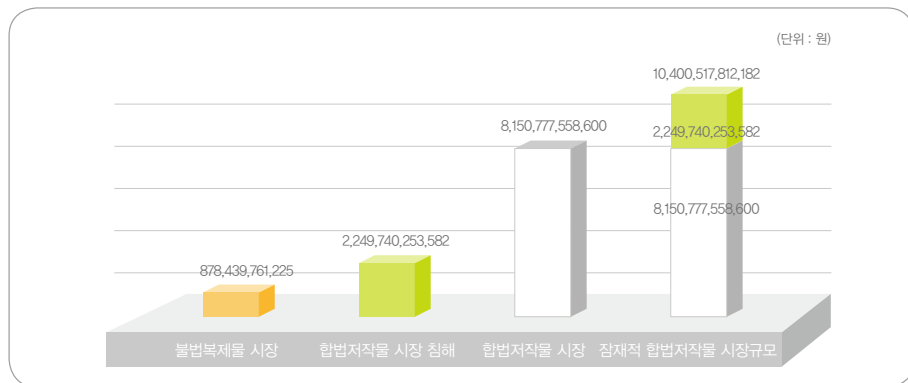
[그림 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630억 6,511만 9,43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음악이 5,564억 770만 4,273원, 출판은 4,237억 1,928만 2,182원, 게임은 3,862억 916만 567원, 방송이 2,203억 3,898만 7,12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0조 4,005억 1,781만 2,182원에 이른다.

[그림 2-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합법저작물이 침해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적인 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고려한 경우 불법복제물 근절 시 약 2조 2,000억 원 이상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1.6%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B/C)
2006년	4조 5,370억원	2조 191억원	6조 5,561억원	30.8
2008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22.3
2009년	8조 1,507억원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21.6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 대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및 출판사의 신간 발행부수 감소에 따라 규모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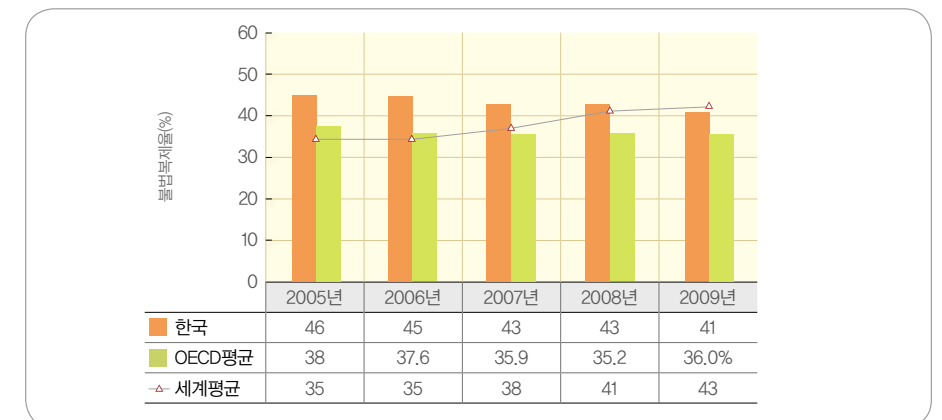
(2) SW 불법복제율 및 경제적 효과 분석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이하 BSA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사기관 IDC를 통해 매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Seventh Annual BSA and 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³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SW 불법복제율은 41%로 사상 최초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 43%보다 2%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미화 5억 7천만 달러(약 5천 7백억원)로 전년 대비(미화 6억 2천만 달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2-4] 연도별 불법복제율 추이



* 세계 28위, OECD 31개국 중 22위 (1위 : 미국 20%, 2위 : 일본 · 룩셈부르크 21%, 3위 : 뉴질랜드)

한편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가 감소했으나 피해규모는 미화 165

34) 2010년 5월 발표 자료

억 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했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였다.

‘Seventh Annual BSA and 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로는 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SW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도별 검찰 기소현황³⁵⁾

대검찰청은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89,20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기소유예 24,676건, 혐의없음 등 기타 8,655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처리 건수는 2008년 91,683건 비해 2,477건이 감소했으며, 저작권 위반자 처리결과를 2008년과 비교해 보면, 고소장 각하는 12,458건에서 24,702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16,772건에서 24,676건으로 증가한 반면, 공소권 없음은 전년 51,348건에서 27,150건으로 대폭 줄었다.

한편, 전체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소폭 감소한 데 비하여 청소년 위반건수는 22,200건으로 266건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13,707명을 고소장 각하, 2,936명을 공소권 없음, 4,243명을 기소유예한 결과 실제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납용으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35) 출처 : 대검찰청

[표 2-2]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 기소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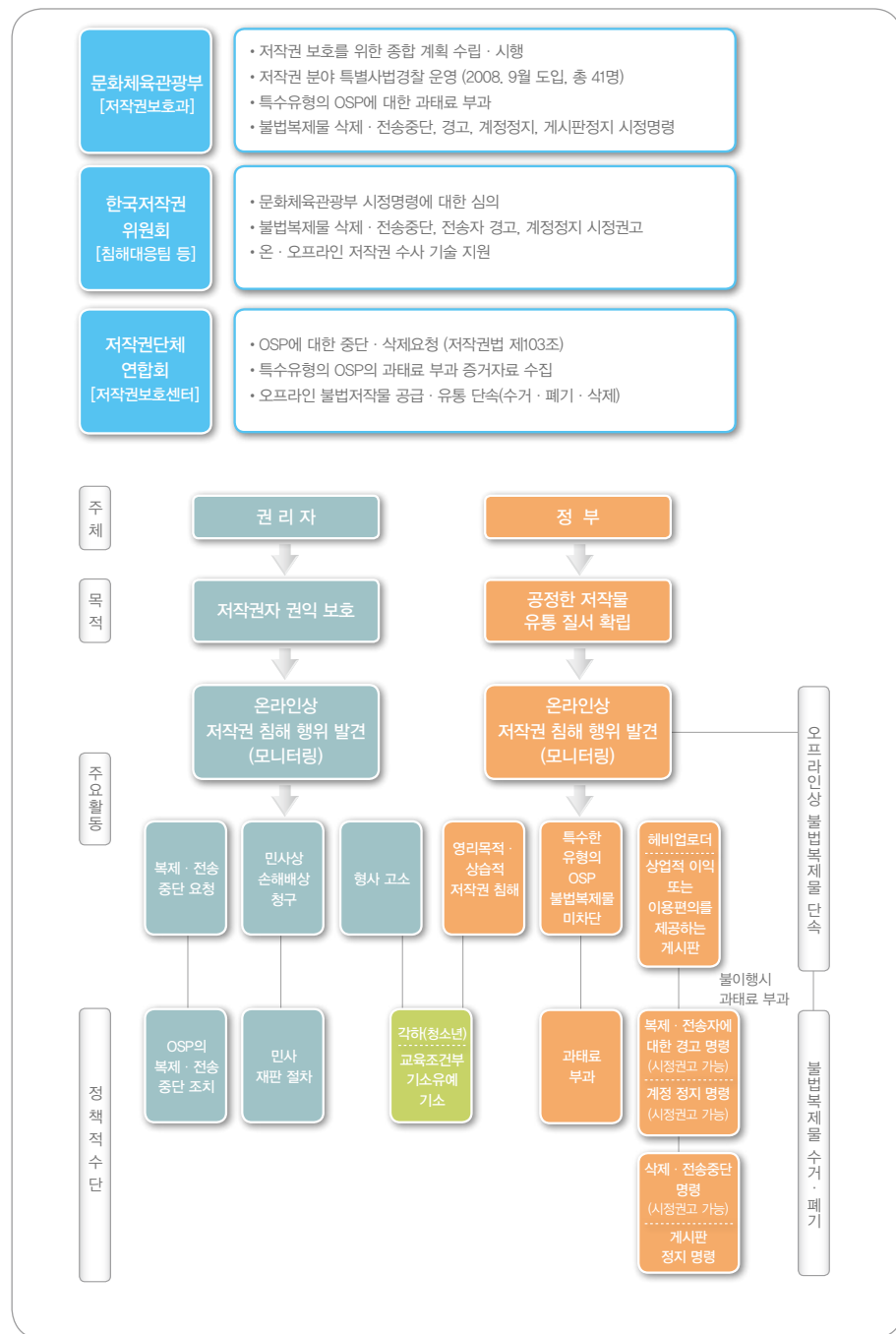
연도별	구분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타관송치 (이송)
					소계	기소 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타		
2007	저작권법	전체	25,271	1,720	23,044	2,005	3,842	15,262	781	1,154	10	497
		청소년	2,824	76	2,708	379	313	1,865	15	136	10	30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전체	5,616	2,998	2,554	143	366	1,907	93	45	2	62
		청소년	118	4	106	27	9	67	1	2	2	6
2008	저작권법	전체	91,683	4,220	86,174	16,772	12,458	51,348	1,899	3,697	58	1,231
		청소년	21,934	118	21,509	6,056	1,575	11,855	119	1,904	58	24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전체	5,888	3,010	2,828	355	143	2,170	115	45	4	46
		청소년	195	5	184	76	4	97	2	5	4	2
2009 ³⁶⁾	저작권법	전체	89,206	4,023	84,252	24,676	24,702	27,150	3,893	3,831	16	915
		청소년	22,200	17	22,132	4,243	13,707	2,936	68	1,178	16	3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전체	3,825	1,264	2,465	365	345	1,546	110	99	1	95
		청소년	333	0	332	83	144	64	0	41	1	0

3. 보호 제도 일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는 크게 그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자의 활동과 공정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나눌 수 있다.

권리자는 민사상 손해 청구, 형사 고소,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으로 권리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수사·사법처리,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조치, OSP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계정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36)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의 통합으로 인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됨

[그림 2-5]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추진 체계³⁷⁾

[표 2-3]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구분	권리자	정부
목적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공정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
수행내용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 형사 고소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법』 제103조)	- 영리·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및 수사 (『저작권법』 제140조, 사법경찰관리 직무 법률 제5조)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저작권법』 제13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법』 제133조의 2)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133조의 3) -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저작권법』 제104조)
수행주체	- 해당 저작권자(사)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분야별 저작권 관련 단체 -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등	- 법무부(검찰·경찰) -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민간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SW 불법복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 방조 웹하드, 해비업로더 등 모든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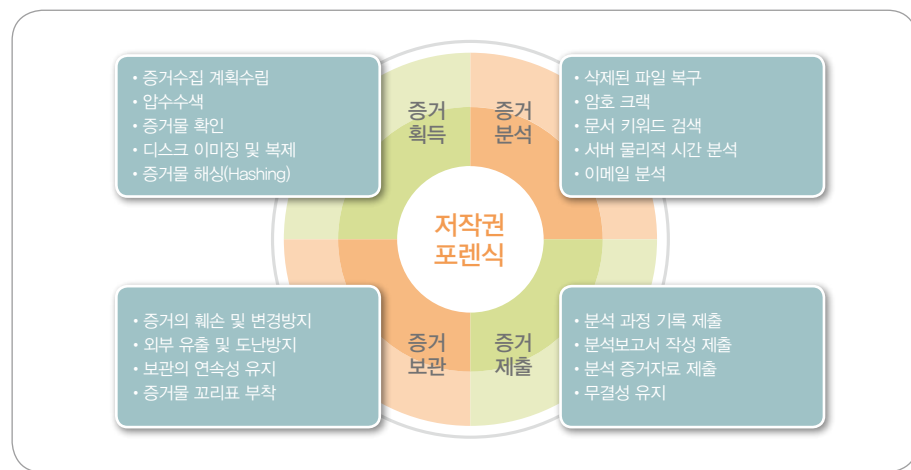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지능화·첨단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인터넷 모니터링으로는 해비업로더 혐의자 추출, OSP와 유착관계, OSP의 방조범 요건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OSP들은 업로더 보호정책을 펼쳐 아이디와 인적사항, 로그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해비업로더도 이름·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수사망을 회피하거나, 증거훼손 및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기록, OSP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포

3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편. 개정 저작권법 해설, p.85

렌식 기법을 통한 분석과 감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6] 저작권 포렌식 시스템 개념도



(2)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필터링 등)를 하여야 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로서 특수한 유형의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2009. 9. 1. 일부개정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본다.

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다.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22]

[별표 1] 〈신설 2009.7.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2,000
75% 이상	2,500

[별표 2] <신설 2009.7.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경고	500	1,000
나.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라.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500	700	1,000
바.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3)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가 전송되는 경우에 OSP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 3회 이상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OSP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계정정지, 게시판 정지 명령 처분을 심의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 3, 4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4]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명령 처분 심의 고려 사항

처분내용	심의 고려 사항
계정정지	•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 게시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불법복제물 등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게시판 정지	•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 불법복제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 • 게시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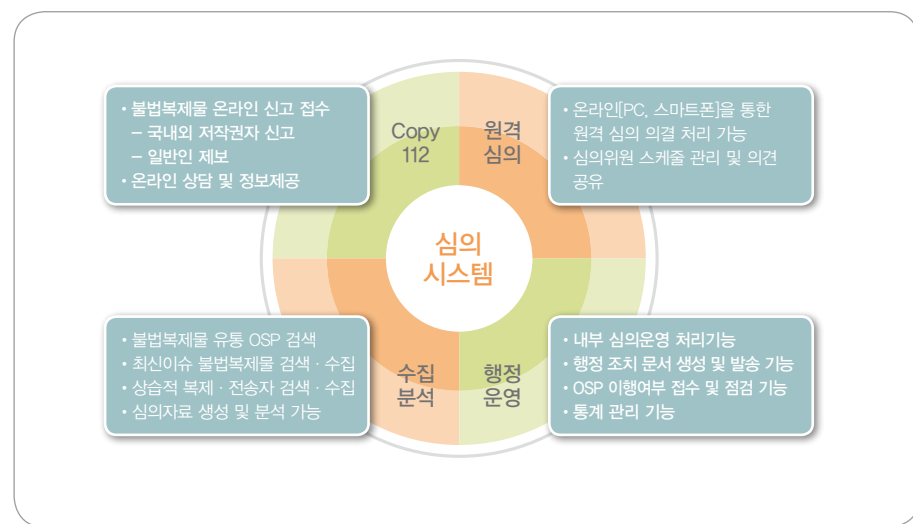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를 OSP에게 권고할 수 있다.

OSP는 경고,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2, 3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심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7] 시정명령·시정권고 심의시스템 개념도



(5)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음악·영상·출판·게임 분야의 불법복제물과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OSP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전송중단 요구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복제·전송 중단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 등 권리자 단체나 개별 권리자들은 활발하게 복제·전송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COP은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인터넷상에서 사람을 대신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업무를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4. 국내 보호 활동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4개 지역사무소, 저작권경찰 32명 운용)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의 기관 간 상호 협조 하에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단속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위탁기관 지정 등 통보에 근거하여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단속하고, IT 기반 단속체계 구축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클린사업과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사·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단속

1)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받은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특수한 유형의 OSP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결과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표 2-5] 2009년 콘텐츠 분야별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현황³⁸⁾

구분	음악	방송	출판	게임	만화	비고
기술조치 요청자	KT뮤직 외 6개 기업	KBS(398)	한국복사전 송권협회 (872)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만화 출판협회	총 5개 장르 14개 기술조치 요청자
		MBC(120)	한국대중문학 작가협회 (1,287)			
		SBS(359)				
위임 저작물수	12,229	877	2,159	197	117	15,579

2009년 중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음악·영화·방송저작물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8년에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OSP는 총 138개로 기술적 조치 평균 미차단율³⁹⁾은 19.1%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88개 업

체에 대해 총 7억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2-6] 2009년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⁴⁰⁾

구분	과태료		모니터링			
	금액(천원)	부과업체수	기간	대상 저작물	대상 OSP수	평균 미차단율
1차	154,300	21개	2009년 2월 24일~3월 25일	음악·방송	40개	11.35%
2차	292,850	33개	2009년 4월 29일~6월 30일	방송·출판·게임	38개	17.58%
3차	106,100	11개	2009년 9월 16일~10월 16일	게임·만화	20개	17.1%
4차	119,000	16개	2009년 10월 26일~11월 20일	음악·만화	20개	18.3%
5차	67,250	7개	2009년 11월 17일~12월 11일	게임	20개	31.3%
합계	739,500	88개	5차(10회)	5개	138개	19.13%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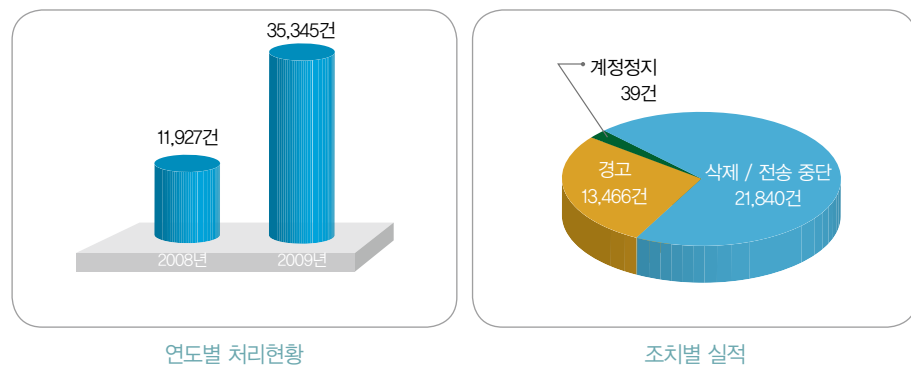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159개의 OSP(웹하드 140개, P2P 14개, 포털 5개)에게 35,345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실시하였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9년 7월 23일)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SW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진행하였으며,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는 저작물 전 분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진행하였다. SW불법복제물 위주로 진행한 2008년도 실적에 비해 2009년도 시정권고 실적은 전년대비 196%로 대폭 향상되었다.

38) 출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39) 미차단율(%) = (다운로드 저작물 개수 / 표본 저작물 개수(50개)) × 100

40) 출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그림 2-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실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다량의 불법복제물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업무처리·원격심의 시스템, OSP 핫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장르별 전담 조사요원을 배치하고 Copy112 신고사이트(<http://www.copy112.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2-9] Copy112 신고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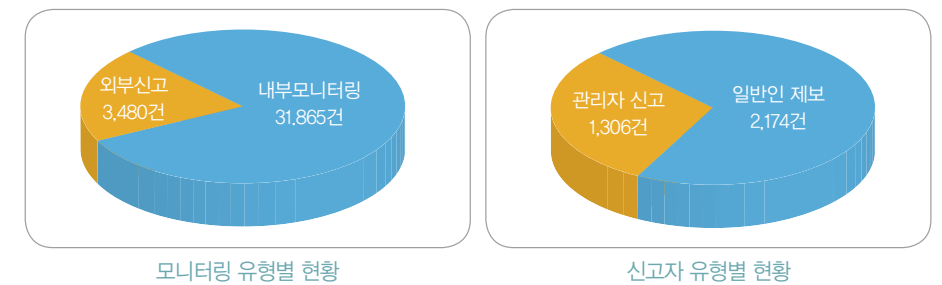


2009년도 시정권고(35,345건) 중 내부 모니터링에 의한 시정권고가 90.1%(31,865건),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가 9.9%(3,480건) 차지하고 있다. 외부 신고 건수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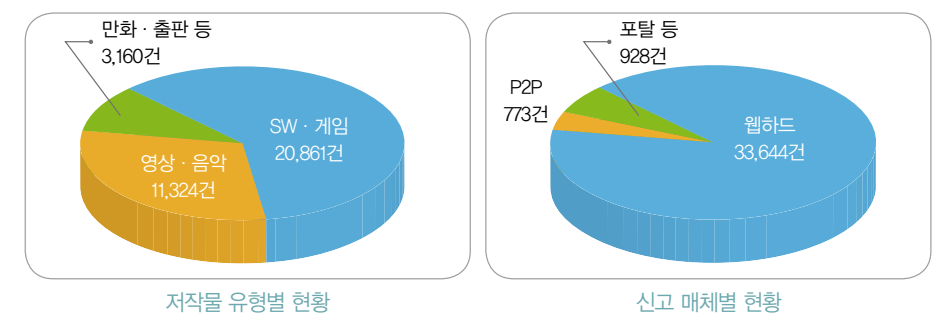
조한 이유는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09년 9월부터의 약 4개월간의 실적이기 때문이며, 향후 권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르별로는 SW·게임이 59.0%(20,8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음악이 32.0%(11,324건), 만화·출판 등이 9.0%(3,160건)로 나타났다.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실시한 시정권고(24,394건) 중 영상·음악이 46.4%(11,32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SW·게임이 40.6%(9,910건), 만화·출판 등이 13.0%(3,160건)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SW·게임 분야의 모니터링 건수가 많은 이유는 2009년 7월 23일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시정권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10] 모니터링 및 신고자 유형별 현황



[그림 2-11] 저작물 유형별 및 신고 매체별 현황



매체별로는 웹하드·P2P(peer to peer) 위주로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시정권고 중 웹하드·P2P(peer to peer) 유형의 OSP가 전체의 97.9%(34,417건)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최신 저작물, 고가의 SW·게임 위주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여 2009년도 침해방지액(적발된 불법복제물의 정품가액)이 약 254억원에 달하는 등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유통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화 ‘해운대’, 드라마 ‘아이리스’, 부산 국제영화제출품작, 영화 ‘아바타’ 등 최신·이슈 저작물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 및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동영상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다.

3)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권리행사 실적

2009년도 한해 동안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 OSP에게 180,028건 (27,094,562점)의 삭제 요구를 했다.

[표 2-7]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삭제·중단 요구 실적⁴¹⁾

구분	유통 경로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음악물	P2P	1,236	1,863,445	30	48,382	▽ 1,206	▽ 98	▽ 1,815,063	▽ 97
	웹하드	4,870	7,648,271	111	238,718	▽ 4,759	▽ 98	▽ 7,409,553	▽ 97
	포털	18,274	3,362,546	4,661	724,607	▽ 13,613	▽ 74	▽ 2,637,939	▽ 78
	소계	24,380	12,874,262	4,802	1,011,707	▽ 19,578	▽ 80	▽ 11,862,555	▽ 92
영상물	P2P	4,976	502,451	4,263	845,814	▽ 713	▽ 14	343,363	68
	웹하드	61,622	2,591,736	145,299	3,558,427	83,677	136	966,691	37
	포털	465	7,803	882	9,618	417	90	1,815	23
	소계	67,063	3,101,990	150,444	4,413,859	83,381	124	1,311,869	42
출판물	P2P	662	1,077,051	59	125,564	▽ 593	▽ 91	▽ 951,487	▽ 88
	웹하드	5,877	10,951,960	5,347	14,158,018	▽ 530	▽ 9	3,206,058	29
	포털	520	127,331	147	104,240	▽ 373	▽ 72	▽ 23,091	▽ 18
	소계	7,049	12,156,342	5,553	14,387,822	▽ 1,496	▽ 21	2,231,480	18

게임물	P2P	65	1,516	1,055	7,754	990	1,523	6,238	411
	웹하드	1,363	14,941	13,706	89,046	12,353	913	74,105	496
	포털	43	573	2,230	4,924	2,187	5,086	4,351	759
	소계	1,461	17,030	16,991	101,724	15,530	1,063	84,694	497
만화물	P2P	-	-	478	1,686,339	478	-	1,666,339	-
	웹하드	-	-	1,849	5,513,393	1,849	-	5,513,393	-
	포털	-	-	-	-	-	-	-	-
	소계	-	-	2,327	7,179,732	2,327	-	7,179,732	-
총계	P2P	6,929	3,444,463	5,885	2,693,853	▽ 1,044	▽ 15	▽ 750,610	▽ 22
	웹하드	73,722	21,206,908	166,312	23,557,602	92,590	126	2,350,694	11
	포털	19,302	3,498,253	7,920	843,389	▽ 11,382	▽ 59	▽ 2,654,864	▽ 76
	소계	99,953	28,149,624	180,117	27,094,844	80,164	80	▽ 1,054,780	▽ 4

* 홈인턴(home intern)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를 포함한 수치임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물은 약 101만점(4,802건)으로 전년대비 92%가 감소하였고, 영상물은 약 441만점(150,355건)으로 42%, 출판물은 약 1,439만점(5,553건)으로 18%가 증가하였다. 게임물은 약 10만 2천점(16,991건)으로 497%가 증가하였고, 만화물의 단속실적은 약 718만점을 기록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home intern)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30여명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을 선발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야간 및 주말(휴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한 결과 총 2,450만점의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41)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또한 2009년에는 영상분야 ICOP-II 시스템 구축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 ① 영상 특징점 인식 기술 개발, ② 영상저작물 및 방송저작물에 대한 특징 점 및 메타정보 구축, ③ 포털, UCC 등의 개방형 OSP로의 검색범위 확대 등이 있다. ICOP-II 시스템 구축의 완료를 통해 ICOP-I의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과 ICOP-II의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징점 인식 기술을 적용한 어문저작물, 게임저작물의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인 ICOP-III 개발시, ICOP-I(2008, 음원), ICOP-II(2009, 영상) 시스템 과 유기적 연동을 통한 어문, 게임, 영상, 음원저작물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활동

1)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한해 동안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83건, 42만9천여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⁴⁴⁾ 이를 2008년과 비교하면 건수 기준으로 78건, 점수 기준으로 47,300점이 증가하였다.⁴⁵⁾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음악물은 35,163점(367건)으로 1%, 영상물은 380,769점(873건)으로 16% 증가하였고, 출판물은 11,956점(541건)으로 33%가 감소하여, 2009년에는 영상물에 대한 단속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4)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집계하는 단위인 '건'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노점상(제작공장 등) 수를 의미하며, '점'은 적발한 불법 콘텐츠 수를 의미한다.

45)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 게임물에 대한 단속은 2009년 4월부터 실시하였다.

[표 2-10]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⁴⁶⁾

구분	품목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음악물	테이프		20,180		17,374			▽2,806	▽14%
	음악CD	304	14,626	367	17,789	▲63	▲21%	▲3,163	▲22%
	기타		—		—			—	—
	소계	304	34,806	367	35,163	▲63	▲21%	▲357	▲1%
영상물	VCD		—		392			—	—
	DVD	786	304,603	873	374,869	▲87	▲11%	▲70,266	▲23%
	기타		24,848		5,508			▽19,340	▽78%
	소계	786	329,451	873	380,769	▲87	▲11%	▲51,318	▲16%
출판물	책	615	17,811	541	11,956	▽74	▽12%	▽5,855	▽33%
	기타		—		—			—	—
	소계	615	17,811	541	11,956	▽74	▽12%	▽5,855	▽33%
게임물	게임CD		—	2	1,480			—	—
	기타		—		—			—	—
	소계		—	2	1,480			—	—
합계		1,705	382,068	1,783	429,368	—	—	—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속·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312명의 저작권 침해자를 단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14개의 웹하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중 11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20억 7,700만원으로 산정하여 몰수·추징을 추진하였다.

46) 출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표 2-11] 오프라인 불법복제 SW 단속 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단속기관수(건)	2,090	2,005	454	4,549
적발기관수(건)	1,417	1,446	386	3,249
불법복제율(%)	26.6	28.8	37.2	92.6
적발액(억원)	222.1	284.4	88	594.5

*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SW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임

2) 신학기 출판 집중단속

출판물의 경우 전문 기술 없이도 불법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국 주요 대학의 개강 시기에 맞춰 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복제가 기승을 부렸다. 이러한 불법복제가 저자의 창작의욕 상실 및 출판사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2009년 상반기(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학기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 출판 분야 합동단속 결과 5,992점이 적발되었으며, 하반기 출판 분야 합동단속 결과 5,761점이 적발되었다. 2008년과 대비해서는 21건(4%)이 증가, 4,798점(29%)이 감소하였다.

[표 2-12] 2009년 신학기 출판 집중단속 실적⁴⁷⁾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증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2008년	295	6,070	203	10,481	498	16,551	▽92 (▽ 31%)	▲ 4,411 (▲ 73%)
2009년	273	5,992	246	5,761	519	11,783	▽27 (▽ 10%)	▽ 231 (▽ 4%)
증감	▽ 22 (▽ 7%)	▽ 78 (▽ 1%)	▲ 43 (▲ 21%)	▽ 4,720 (▽ 45%)	▲ 21 (▲ 4%)	▽ 4,798 (▽ 29%)		

47) 출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09, 2010)

(3) SW 공정이용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SW 사용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2008년 808개, 2009년 1,862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품 SW 사용실태 점검은 공공부문이 솔선해 정보화 측면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정품 SW 구매환경을 조성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정품 SW 사용 모범기관 시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품 SW 사용율이 100%이고 SW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업체⁴⁸⁾ 등을 시상(장관상, 위원장상)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모범사례로 홍보하여 정품 SW 사용 의식과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SW 사용실태 및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는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지적재산권보호 의식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SW 불법복제율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제공,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SW 불법복제가 대외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BSA의 조사결과에 논리적·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등 SW 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13]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 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업부문 SW 불법복제율	25.0%	23.3%	40.6%

48) ㈜디아이씨, 목포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에프케이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충주시청, ㈜코스콤, 한화S&C(주)가 우수기관(이상 가나다순)으로 선정됐다.

[표 2-14]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체점검	실사점검	자체점검	실사점검	자체점검	실사점검	자체점검	실사점검	실사점검
기관수	196개	20개	364개	40개	679개	41개	736개	72개	461
복제율	2.65%	2.34%	2.76%	3.28%	2.35%	1.91%	1.39%	1.18%	1.46%

(4) 저작권 침해 예방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OSP를 클린사이트⁴⁹⁾로 지정해주는 것으로, 저작권보호센터·법조계·학계·업계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저작권 ‘클린지수(clean index)’를 개발하고, OSP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합법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클린지수는 클린사이트 지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배포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표 2-15] 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⁵⁰⁾

구분	사이트명	클린사이트(URL)	분야	지정일
1	(주)씨네로닷컴	www.cinero.com	영화	2009년 7월 1일
2	엠넷미디어(주)	www.mnet.com	음악	2009년 7월 1일
3	(주)휴피소프트	www.piuri.com	출판	2009년 7월 1일
4	메가스터디(주)	www.megastudy.net	교육	2009년 7월 1일

49) ‘클린사이트’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50) 출처 : 클린사이트 홈페이지 (www.cleansite.org)

5	(주)엠더블유스토리	www.gamefos.co.kr	게임	2009년 7월 1일
6	(주)네오위즈 박스	www.bugs.co.kr	음악	2009년 9월 1일
7	(주)소리바다	www.soribada.com	음악	2009년 8월 1일
8	북큐브	www.bookcube.com	출판	2009년 10월 1일

*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매월 1일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발표함

향후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의 방향으로 ① 음악, 영상, 문서, 컴퓨터프로그램(SW)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시·배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OSP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클린사이트로 지정 ② 중소 OSP의 사업기반인 콘텐츠 구매 지원 ③ OSP대상 저작권 교육 및 서비스 컨설팅 제공 ④ 모니터링 인력 지원 ⑤ 국내외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홍보방안 마련 ⑥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범국민 의식개선 캠페인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저작권보호센터는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항은 사실 조화와 법률 검토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의 권리 구제 절차 진행과 수사기관 등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과 신고내용, 관련 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09년도 불법복제물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접수는 11,178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81건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6]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비교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불법복제물	온라인	229	3,063	1,117	▲ 8,115
	오프라인	54	70	81	▲ 11
합계		283 ⁵¹⁾	3,133 ⁵²⁾	11,259 ⁵³⁾	▲ 8,126

* 2009년 1~9월까지의 접수현황을 집계함

(5) 보호 활동의 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2010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8,784억 원으로 2008년 9,660억 원에서 약 900억 원(-9.1%)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총 2조2,497억 원으로, 2008년의 2조4,234억 원 대비 약 1,961억원(약 7.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를 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의 감소 외에도 불법시장의 합법시장 전환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2009년 8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 다음과 음악저작권 3 단체와의 사이에 상생협약이 이루어졌고, 2009년 10월에는 웹하드·P2P(peer to peer) 49개 업체와 방송 6시간 유료화 협상이 타결되는 등 OSP와 권리자 간의 상생 노력이 더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불법시장이 합법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에 발표하는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로 악명 높은 시장의 예로 우리나라의 웹하드 사이트를 지적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OSP에 취하는 해당 복제물의 삭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활성화 하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OS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화 '해운대'의 경우와 같이 개봉 영화 불법파일 유통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개봉 전 영화 등 불법 동영상 파일 유포 시 즉시 발견 및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한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활동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합법적인 저작권 유통 환경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 해외 보호 활동

(1) 해외 사무소 운영 및 협력 체계 강화

1) 해외 사무소의 운영 및 각국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콘텐츠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지역의 저작권 보호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중국 북경, 2007년 5월 동남아 방콕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보호 상시지원 체계를

51) 2007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접수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다.

52) 2008년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접수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다.

53) 2009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접수 건수를 합산한 수치이다.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판권보호중심(2009년 9월) 등 각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판권보호중심과의 MOU 체결로 양국 간 저작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판권보호중심에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통한 시범적 분쟁조정을 시행하고, 양국 간 SW 저작권 등록 및 정보 교환 등 SW 저작권 협력사항을 새롭게 발굴하는 활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13]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갱신 체결



2)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대책수립 및 홍보 활동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유통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내 영상, 음악, 게임 등 주요 콘텐츠 분야별 실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내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중장기 발전방안(로드맵) 연구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등 법제도의 효율적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저작권 보호 정책과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등을 소개한 국·영문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국 해외 문화원 등에 배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대한 대외적 홍보 활동도 강화하였다.

3) 해외 침해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저작물 불법복제·유통에

따른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된 해외 사무소는 중국 북경, 동남아 방콕 2개소에 불과하여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해외 사무소 신설의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증대되어 왔었다. 이에 중국 최대 도시이자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해(上海)지역에 2010년 하반기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고, 향후 시장규모의 확대 가능성이 큰 베트남(하노이), 중동(두바이 등) 지역은 물론 일본(동경), 미국(LA),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 까지 진출할 계획에 있다.⁵⁴⁾ 또한 각국 지역 사무소별로 현지 특성과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 상호 유기적인 저작권 보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 중국 북경사무소 운영 및 보호 활동

1) 전문 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북경사무소에 중국 법제도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였다.

54) 국가별 한류 진출의 경우 동남아 중심에서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란의 경우 드라마 ‘주몽’이 80%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모’가 국영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한국영화제’가 개최(2002년, 2004년, 2005년)되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뿌까’(2006년)가 알려지면서 브라질 5대 캐릭터로 선정돼 ‘뿌까 패션쇼’가 개최되는 등 멕시코, 몽골,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출처: 한류재점화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청와대 정책소식, 2009년 10월 21일)>

[표 2-17]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컨설팅 현황

분야		구분		건수
2007년	조사컨설팅			36
	상담 (126)	면 담		32
		전 화		2
		온라인		92
	컨설팅 (53)	북경	법률자문	27
			구제조치 자문	26
합계			215	
2008년	상담 (188)	면 담		12
		전 화		10
		온라인		166
	컨설팅 (65)	북경	법률자문	27
			구제조치 자문	38
	합계			253
2009년	상담 (252)	본부 (169)	면 담	—
			전 화	11
			온라인	158
		북경 (32)	면 담	10
			전 화	22
			온라인	—
		방콕 (51)	면 담	15
			전 화	15
			온라인	21
	컨설팅 (50)	북경 (50)	법률자문	16
			구제조치 자문	34
	합계			302
총계				770

2) 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중국국가관권국에 의해 2006년 11월 북경사무소가 인증기구로 허가받아 저작권자 확인 요청 시 원저작자 및 라이선싱 계약 확인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 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중국에서의 저작권 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는 등 국내 저작물의 권리 보호 강화 활동을 추진하여, 2007년에는 601건, 2008년에는 1,493건, 2009년에는 1,121건의 저작권 인증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18] 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인증)

분야 / 구분		요청건수	처리건수	보류건수
2009년	영상	540	435	105
	음악	686	686	—
	어문 기타	—	—	—
	합계	1,226	1,121	105

[표 2-19] 중국 내 우리 저작물의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침해현황(2007년)⁵⁵⁾

부 문	조사 대상 콘텐츠(개)	조사표본수	침해율	
			최소	최대
드라마	6	582	58.5%	91.1%
음악	9	355	69.6%	82.9%
영화	5	380	62.0%	88.0%
온라인 게임	1	344,000개의 프리서버		

3)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현지 당국 및 저작권 유관기관과의 각종 포럼 개최 등 저작권 보호 교류·협력 강

55) 출처 : 중국 내 한국저작물 유통실태조사 (2007)

화를 통해 중요 침해사안의 행정처벌을 위한 단속활동 지원 등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음원에 대한 중요침해 사이트인 '아이엠디제이'(www.imdj.net)와 '오투스카이'(www.02sky.com)등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행정단속 대응 공조를 통해 2009년 10월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대응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증거보전, 경고장 발송 및 구제조치 지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MBC의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을 방영한 중국의 지방 방송사를 상대로 중국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9년 3월 법원 조정권고를 거쳐 민사합의로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등 한·중 저작권 협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음악, 영화)'를 통해 중국 내 우리나라 영화 및 음악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증거보전 대상을 선정하고, '중국 음악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음악분야 저작권 관리 방법과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9년 하반기에는 이슈가 되었던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에 대해 즉각 현지 북경사무소를 통하여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6개 사이트에 대해 증거보전 및 경고장발송을 행하는 등 중국 내 유통을 추적·저지하였다.

[그림 2-14]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영화분야

음악분야

[그림 2-15]

중국 음악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



4) 현지 홍보 활동 강화

현지 진출 국내 업체 및 중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구제조치 등의 사업을 홍보하여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국가관권국 주최 국제 판권박람회에 참가(주빈국)하여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2-16] 저작권 보호 설명회 및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전시 참가



국제박람회장 전경



한국 전시관

[그림 2-17] 중국 내 한·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



행사 전경



개회사

[그림 2-18] 중국 국제 영상·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



행사장 전경



주제발표

[그림 2-19] 중국 저작권 실무교류단 및 일본 IP 중재센터 방한



중국 저작권실무교류단 내방

일중 IP중재센터 내방

(3) 동남아 방콕사무소 운영 및 보호 활동

1) 동남아 지역 저작물 유통 실태 조사·연구

동남아 지역 온·오프라인 유통 현황과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조사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 태국 내 30여개 사이트에서 1,081편(누적 산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약 63%의 침해율을 보여, 2007년 조사된 7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국 내 51개 사이트에서 62,000곡 이상이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의 경우 대부분 불법저작물인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남아 지역 주요 4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내 우리나라 저작물의 불법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태국의 경우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20] 동남아 국가 내 우리 저작물 불법유통 현황

부문	조사 대상 웹사이트(개)	누적 제공 편수	침해율	
			최소	최대
드라마	30	1,081편	62.9%	81.4%
영화	30	749편	—	약 100%
컬러링	19	2,034곡	63.6%	81.8%
음악	51	62,000곡 이상	—	대부분

* 개별 작품별로는 드라마 148편, 영화 155편, 컬러링 591곡, 음악 573곡이 제공되고 있음

* 최소 침해율은 총 제공편수 대비 수권확인 필요 수량(최소 침해율=(수권확인필요 수량/제공편수)×100), 최대 침해율은 최소 침해율과 수권되었다고 가정되는 수량 중에서 절반만 수권되었다고 가정하여 합산(최대 침해율=최소 침해율+(수권가능 수량/제공편수 × 1/2))

[표 2-2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연도별 우리 저작물 침해현황 ⁵⁶⁾

구 분			총판매점	정품 취급점	불법복제 판매점	불법비율
2007년	태국	오프라인	229	49	180	80%
		온라인	30	10	21	70%
2008년	인도네시아		202	13	189	93%
	말레이시아		122	63	59	48%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협력 강화

최근 저작권 이슈 관련 정보 교류는 물론 동남아 지역 저작권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태국 단속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태국 IP페어 참가 등 저작권 보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56) 출처 : 태국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2007),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2008)

[그림 2-20] 한·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



한·태포럼 태국 상무부차관 우호증진물품 교환



포럼 발제자

3)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현지 진출 국내기업 대상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국 내 우리나라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태국 저작권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동남아 주요 4개국(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통신원을 활용한 한·동남아 저작권 정보 교류 e-newsletter 및 동남아 저작권 최신 동향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4) 국외 저작권 정보제공 확대

국내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각국의 상이한 저작권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으로 국외 7개국에 대한 해외저작권 가이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였고, 뉴스브리핑·동향리포트 등 기존 메뉴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전문 법률상담(158진), 법률상담사례 구축, 전문가 칼럼 수집 및 제공 및 해외업체정보를 추가로 업데이트 하는 등 정보제공을 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해외저작권가이드’ 저작권 정보 제공 국가를 10개국으로 확대하고, 영문 저작권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 및 주요 우리 저작물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 홍보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신규 회원이 2,700명으로 증가했고(전년 대비 27% 증가), 사이트 방문자수 역시 월평균 4,400명으로 전년대비 19% 늘어 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 및 확대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

향후 기존 해외저작권 정보플러스사이트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도화 및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에 있다.

(5)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

1) 국제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법제도 및 산업 관련 국제적 이슈와 전망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2009년 서울 저작권포럼’과 ‘제5차 한·중 저작권포럼’을 개최하고, 한·일간의 저작권법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자 ‘2009년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였다.

특히, ‘2009년 서울 저작권포럼’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권리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나누며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 한·일 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 및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09년 한·일 저작권 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저작권 정책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각국과의 국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정보교류와 체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국제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발도상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저작권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미래 우리 저작물에 대한 지킴이로 육성토록 하는 ‘(가칭)글로벌 저작권 챌린저 발굴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향후 우리 저작물 보호와 시장 확대 거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림 2-21]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북경)



포럼 전경

주제발표(저작권정책과 주무관 김민호)

[그림 2-22] 2009 한·일 저작권 포럼



포럼 패널 기념촬영

참가자들

[그림 2-23] 2009 서울 저작권 포럼



환영만찬

WIPO 기초연설

2)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체계 강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매년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009년 3회를 맞이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선진 법제도 경험을 전수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4] 제3회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연수 참가자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 기념촬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션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개요

2009년 9월 22일 경찰청의 국회 제출 자료⁵⁷⁾에 따르면 2006년 19,080명이었던 저작권 침해사범이 2007년 25,271명에 이어 지난 2008년에는 91,68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 들어서도 9월까지 모두 66,687명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처리된 초·중·고생은 24,231명으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같은 기간 전체 입건자 수가 12,960명에서 80,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에 비해 1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져,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각적 방면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힘썼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저작권교육원’을 개원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저작권 교육 및 활용촉진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3대 중점 과제, 즉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체계화’, ‘저작권 인적 자원 개발 체제 구축’, ‘생활 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로 구체화하여, 일반인 및 전문 인력 대상 저작권 아카데미, 문화학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초·중등 교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원직무 연수를 운영,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규교과 내 저작권 교육내용 반영을 통한 학교 내 저작권 교육 시간 확보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외에 고소장 각하제도를 운영하여 청소년 범법자 양산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 관련 지식 함양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 청소년 글짓기 대회, 논문 공모전, 매월 26일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 개최 등의 국민 친화적 홍보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식 확산 및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교육 내용 및 활동

(1) 청소년 및 교사 대상 교육

최근 들어 청소년 저작권 침해건수가 증가하고 이와 비례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층에서의 저작권 침해비율을 낮추고 청소년이 저작권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학교중심의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2009년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지원

초·중등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 도출을 위하여 2007년부터 운영된 저작권 연구학교는, 도입 첫 해 수도권 15개교(총 12,600명)에서 2008년 수도권 및 전남 지역 23개교(19,320명)로 확대 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2007년~2008년도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현실에 맞게 운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수도권 및 일부 전남 지역에서 전국 10개 시도의 27개교로 확대하였다.

57) 인터넷 한국일보,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 크게 늘어’, 2009년 9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에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운영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운영교사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구학교의 운영 방법을 전달하였으며, 학교 수업 시 활용할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함으로써 추후 학생들에게 교육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의 형태로 강의를 지원하였다.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운영결과 보고회를 해당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도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서 창작된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포상하여 저작권 의식제고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표 2-22] 연도별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학교수(증가율)	15개교	23개교(153%)	27개교(180%↑)	65개교
교육 인원	학생	12,000명	18,400명	43,427명
	교사	600명	920명	2,114명

* 산출기준 : 학교당 학생수 800명, 교사수 40명, 증가율은 2007년 기준, 2009년은 실 참여 인원 기준

[그림 2-25]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장



2)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급 및 동아리 단위의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교내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을 저작권 연구학교와 별도로 운영하였다. 2006년 시작된 저작권 체험교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개 학교에서 진행을 해왔으나 순차적으로 운영 범위와 참가학교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117개 학교에서 운영하였다.

체험교실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발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교사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해당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달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교사를 해당 지역 저작권 교육 수요 발생 시 저작권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사로 양성하였다.

[표 2-23] 연도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교실수(증가율)		20교실	20교실(0%)	79교실(395%)	117교실(585%)	236
교육 인원	학생	921명	745명	3,479명	4,095명	9,240
	교사	20명	20명	79명	120명	239명

* 산출기준 : 교실당 학생수 35명, 증가율은 2006년 기준

[그림 2-26]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3) 교과내용 연구 및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과서 내에 저작권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 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2006년부터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초등 5·6학년 국정교과서 및 지도서 실험본에 저작권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 2-24] 연도별 교과내용 연구 추진 내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구 과목	4개 과목 (사회, 도덕, 실과, 미술)	2개 과목+일본 (국어, 음악)	실험본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국어)	실험본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국어, 사회)
활용·협의 내용	—	설명회 개최 (80명)	설명회 개최 (69명)	교과서 편찬위원· 집필진에게 문서로 전달

[표 2-25] 2009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구분				반영 페이지		
국정 도서	국어	정본	쓰기 2-2	1쪽		
			듣기·말하기·쓰기 3-1	3쪽		
			읽기 4-1	7쪽		
			교사용지도서 3-1	5쪽		
			교사용지도서 4-1	24쪽		
		실험본	듣기·말하기·쓰기 3-1	3쪽		
			읽기 4-1	7쪽		
			교사용 지도서 4-2	6쪽		
			듣기·말하기·쓰기 5-1	5쪽		
			교사용 지도서 5-1	3쪽		
			듣기·말하기·쓰기 6-1	2쪽		
			교사용 지도서 6-1	5쪽		
			도덕	실험본	도덕 4-2	4쪽
					도덕 5	11쪽
	생활의 길잡이 5	3쪽				
	교사용 지도서 5	11쪽				
	도덕 6	2쪽				
	생활의 길잡이 6	2쪽				
	교사용 지도서 6	1쪽				
검정도서	검정교과서(중등교과)		기술·가정 등 11개 과목	149쪽		

또한, 2009년부터 기존 연구 결과물이 교과서 정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표 집필진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 추진하여 각 교과 종류별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시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하고 저작권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2-27] 2009년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4) 온·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 연수는 디지털콘텐츠의 주된 소비층인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저작권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원직무연수는 2006년부터 매년 특수 분야 교사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해 온·오프라인 교사연수와 2007년 외부용역 형태로 시작된 온라인 교사연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오프라인 교사연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각 1회씩, 총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 외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교육 부문 저작권 실무 등의 다양한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고 교사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저작권 교사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원연수원으로 지정된 외부 전문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연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7년 1,209명(1회), 2008년 총 5회에 걸쳐 2,727명, 2009년 총 7회에 걸쳐 3,305명을 교육하였으며, 교육내용은 2007년 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30시간 분량의 온라인 저작권 교육콘텐츠 '수업시간이 즐거워지는 저작권 비밀 노트'를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교사연수 두 과정을 모두 수료 시 교육이수학점 2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2-28] 오프라인 교원연수 현장



[그림 2-29] 온라인 교원연수 홈페이지 '티처빌'



[표 2-26]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온라인(증가율)	-	1,209명	2,727명(225%)	3,305명(110%)	7,241명
오프라인	80명	80명	75명	76명	311명

5) 교육청 교원연수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교사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및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교원의 저작권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2008년에 이어 개최하였다.

[그림 2-30] 2009년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외부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저작권 연구학교 지정 확대 및 시도 교육연수원 내 저작권 강좌 개설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연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청소년·교사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27] 연도별 교원연수 담당자 워크숍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계
개최횟수(참여인원)	1회(15명)	1회(26명)	2회(41명)

6)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저작권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2006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주제별 교육드라마 3종 및 플래시애니메이션 4종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드라마는 EBS를 통해 3회 방영되었으며, 전국 초·중·고교에 DVD 형태로 제작·배포되었다. 기타 개발 완료된 콘텐츠는 청소년 교육 사이트 및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하여 전국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보급하고 있다.

[그림 2-31] 청소년 교육 콘텐츠



7)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사이트

청소년 저작권법 의식 함양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 1월 오픈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http://1318.copyright.or.kr>)는 매년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콘텐츠가 추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탑재할 공간을 확보하고 메인페이지 기능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방문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사이트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개정 저작권법 내용 반영 및 통합기관 출범에 따른 CI 등의 변경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래시 게임대회 및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사이트 방문자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2-32]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8)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청소년 침해사범 161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 중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대검찰청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고소장 각하제도를 2년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전국지역 청소년 침해사범 291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저작권 전문인력양성

1) 저작권 아카데미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저작권 아카데미는 현장인력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교육대상이 산업군의 관련 협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운영되며 권리처리방법, 실제 분쟁사례 소개 및 분쟁 대응방안 등 개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3]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 현장



1기당 보통 10개 과정이 진행되는 저작권 아카데미는 2009년 제5기 과정까지 총 52회 개최되었으며 1,3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http://academy.copyright.or.kr>) 및 이메일을 통해 각종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28]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료인원	395명(11회)	261명(11회)	229명(10회)	258명(10회)	250명(12회)

2) 저작권 문화학교

1988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입문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아카데미 과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작권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국제협약 및 관련법,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쌓고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림 2-34]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저작권계의 대표적인 강좌인 저작권 문화학교는 개설 이후 2009년까지 약 1,80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일반과정과 단기과정, 야간과정을 각각 연 2회씩 개설하여 문화 산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2-29]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료인원	179명(4회)	175명(4회)	178명(4회)	182명(7회)

3) 저작권 교육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분야별, 계층별로 저작권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청소년 강사’, ‘입문 강사’, ‘전문강사’로 분야를 구분하여 저작권 기본 교육과 강의 시 필요한 강의기법 등을 교육 후 강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2008년 71명, 2009년 289명으로 총 36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전문성 확보 및 강사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저작권계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형태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0] 저작권 교육단 현황

연도	활동기간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 강사	비고
2008	2009~2010	31	22	18	71
2009	2010~2011	57	180	52	289
계		88	202	70	360

* 2009년 진행된 저작권 아카데미 법조인 과정 수료 변호사의 경우 저작권 입문강사로 위촉

또한, 교육단에 소속된 강사의 경우 저작권 교육뿐만 아니라 저작권 콘텐츠 제작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4) 저작권 교육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

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 문화학교, 교원직무연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평가·분석하고,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한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 실시 대상자들의 저작권 교육이수 효과를 측정, 교육성과 등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저작권 교육의 평가 척도와 홍보 방안으

로 활용할 예정이다.

(3)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1)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의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하여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산업 분야 관련 단체 및 업체, 각급 교육연수원 등으로부터 교육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 통합 전 양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강사 풀 및 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사 발굴을 통하여 증가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 저작권 보호 의식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림 2-3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교육 현장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해당 분야의 사례를 Q&A 방식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2-3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횟수(회)	58	198	295	336	374
인원(명)	7,032	70,722	96,160	120,201	93,977

* 통합 전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통계 합산 산출

2)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저작권 원격교육이 가능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2009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교육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였으며, 대국민 저작권 의식제고와 저작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사·청소년·일반인 등의 대상별, 또한 각 산업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인프라 환경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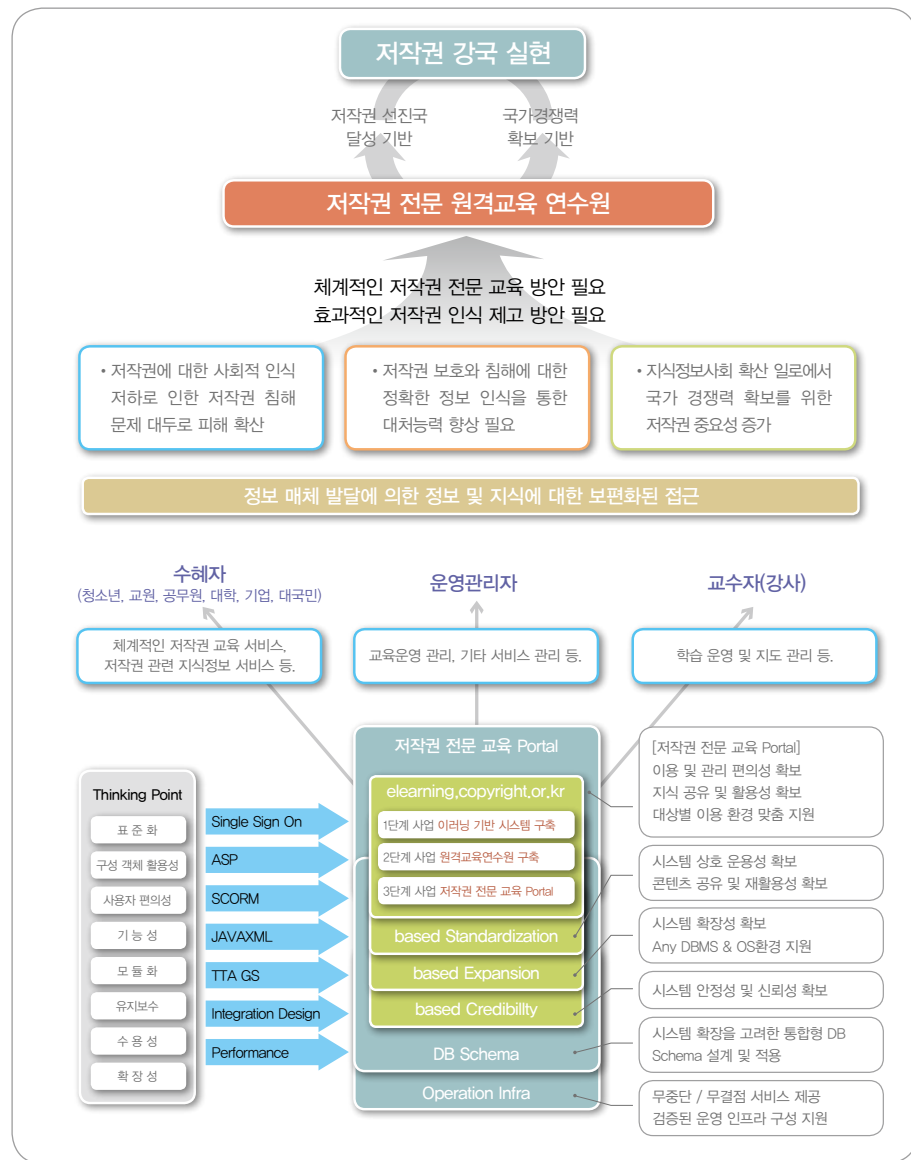
[그림 2-36] 원격교육연수원 웹사이트



추후 원격교육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과 동시에 교과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

로부터 교원 원격연수를 위한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취득하고, 교원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2-37] 원격교육연수원 구축 구성(안)



3) 원격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국민 저작권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에 탑재할 계층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 5종(저작권 산업 분야 종사자용 3종, 교사용 1종, 대학생 및 일반인용 1종)을 개발하였다.

[표 2-32] 교육콘텐츠 개발 내역

구분	과목명	차시
대학생 및 일반인 입문자용		12차시
교사원격연수	개론	30차시
	실무사례	15차시
	수업활용	15차시
산업분야별	개론(공통)	6차시
	음악	6차시
	출판	6차시
	인터넷	6차시

개발된 콘텐츠는 전국 단위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저작권 교육에 활용되어 대국민 저작권 의식제고와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4) 저작권교육원 개원

저작권 의식 확산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저작권 관련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장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영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장의 장소 및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생 중심의 접근성과 쾌적한 교육 환경, 최첨단 강의실 및 장비를 갖춘 저작권교육원을 2009년에 개원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관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림 2-38] 저작권교육원 개원



저작권교육원은 수도권 및 지방 교육생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역으로 그 위치를 선정하고 강의장 3개(중강의장, 소강의장, 컴퓨터 강의장), 회의실, 강사대기실, 행정실, 휴게실 등을 배치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육환경 및 지리적 민원사항을 개선하였다.

5) 저작권 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 국민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저작권 교육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저작권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6)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009년 3월부터는 전국 18개 지검으로 관할을 확대하고 성인 침해사범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총 66회에 걸쳐 7,521명의 성인 저작권 침해사범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2-39] 저작권 지킴이 연수 현장



3. 홍보 내용 및 활동

(1) 미디어를 통한 저작권 인식제고

1) 저작권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제작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드라마를 제작하고 EBS를 통해 방영하였다.

각각 30분 분량의 3편으로 구성된 드라마는 콘텐츠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유형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여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방영하였다.

이외에도 총 4편 각 5분 분량으로 개발한 저작권 교육용 애니메이션은 단순 사례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내용을 포함한 에듀라마(educational drama) 형식으로 제작하였고, 저작권 드라마와 함께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 탑재하여 저작권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

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애니메이션(4종)을 교육용 DVD로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11,966개 학교 및 기관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다.

[표 2-33] 청소년 교육용 저작권 드라마(3종)

주제	주요 내용
제1화 파이오니아의 파멸	최신 영화나 만화, 음악, 게임 등을 누구보다 먼저 웹 하드에 올리는 것을 영웅적 행동으로 여기는 '릴그룹 파이오니아'의 행적과, 그 후 로펌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수 천 만원의 소송을 당하고 결국 은행 강도로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그렸다.
제2화 영혼을 저당 잡힌 클릭	최연소 편집장으로 유명해진 미모의 여 주인공 나윤서. 하지만 동창생인 기자가 과거사실을 추적하게 되고 과거행적이 모두 드러나면서 자살을 결심하는 등 화려했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제3화 미래의 경고	국내의 모든 창작물들이 소멸 하면서 한국은 문화 식민지로 전락한다. 어느 날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과거 아이돌 스타였던 동엽에게 미래를 구원할 임무를 부여한 후로부터 점차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악한 터미네이터가 이런 동엽의 행동을 방해하고, 이러한 방해 공작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림 2-40] 청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제1화 파이오니아의 파멸



제2화 영혼을 저당잡힌 클릭



제3화 미래의 경고

[그림 2-41] 청소년 저작권 애니메이션(4종)



제1화 사라지는 우리의 별



제2화 한국영화 천만관객 시대! 그러나...



제3화 한국저작권위원회, 그게 뭔가요?



제4화 우리들의 별은 우리가 지킨다

2) 개정 저작권법 국민 홍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개정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저작권 인식 함양 및 이용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 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모니터를 통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을 인터뷰 및 Q&A로 구성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1개월간 총 120회 송출,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인식함양을 위해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이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올리는 저작권 파파라치’, ‘달라진 저작권 이용 환경’, ‘인식 제고로 신 저작권 시대 열자’의 3가지 특집 기사를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2-42] 지하철 내 홍보방송



이외에도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한 저작권 홍보 책자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를 청소년과 군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전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와 전국 육군부대에 배포하는 등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홍보를 추진하였다.

(2) 저작권 공모전

1)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저작권’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 및 저작권 연구학교·체험교실 등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배너 게시 및 이벤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작품은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홈페이지(<http://writing.copyrigh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았다.

2009년 제5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는 3,855명이 응모하여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수내고등학교 이지원 학생이 ‘이제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이다’로 수상하였으며, 2008년(3,316편) 대비 16.3% 증가한 3,855편의 응모작수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창작자로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43]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2)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공모전

2006년도부터 시작한 우수 논문 공모전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적재산권 연구의 저변 확대와 폭넓은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실시하였다. 2009년 5월에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원)생 대상 '제4회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9년 공모전 홍보를 위하여 전문홍보기관 및 전국 대학 방문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 분야 논문접수 비율이 전년대비 140% 증가(2008년 30편→2009년 72편)하였으며, 참가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 및 연구방향 지도를 위한 워크숍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문공모전 참가자들에게 주관기관 연구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최종 논문 제출까지 지적재산권 동향과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멘티·멘토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98.5%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논문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IP동향 파악 및 차기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2008년 일본에 이어 2009년에는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전반적인 산업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USCO(US Copyright Office ; 미국저작권청),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미국특허상표청), CAFC(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포담대학교(Fordham University) 등을 방문하였다.

[그림 2-44] 제4회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시상식



[그림 2-45] 미국저작권청(USCO) 방문



(3) 대국민 의식제고

1)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은 매년 4월 26일로 UN 전문기관 중 하나인 WIPO에서 제정하였으며 2001년 처음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하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제9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는 SW 할인구매 행사 ‘Hello, SW copyright! 2009’와 연계하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년 4월 24, 25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특히 Hello, SW copyright! 2009 행사에서는 SW의 저작권 보호와 정품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서명과 나모인터랙티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한글과 컴퓨터 등 17개 SW 저작권사가 참가하여 할인된 가격의 정품 SW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 홍보UCC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또한, 저작권사와 사용자 대표가 정품사용선언 및 결의문을 교환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2) 저작권 보호의 날(매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선포식에서 매월

26일을 저작권 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날로 지정한 매월 26일에는 서울광장, 대학교 등에서 저작권 보호 서명운동 및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특히 2009년 8월 행사는 강원도 속초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음악 대항연’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등 전국으로 홍보를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한 ‘저작권 퀴즈대회’에는 3주 동안 19,748명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2-34] 2009년 저작권 보호의 날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현황

일 정	장 소	참여인원	행 사 내 용
3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461	저작권 보호 서명 및 홍보물 배포
4월 24~25일	코엑스	766	2009년 Hello, SW Copyright!와 연계 저작권 보호 서명 및 홍보물 배포
5월 21일	고려대학교	780	저작권 보호 서명운동 및 저작권 OX 퀴즈
6월 20일	서울광장	655	청소년 대상 U클린 청소년 문화마당 행사와 연계 저작권 보호 서명 및 캐리커처, 저작권 상담 등
7월 21일 ~8월 9일	온라인퀴즈대회	19,748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퀴즈대회' 개최
8월 11일	강원도 속초	559	제6회 대한민국 음악 대항연 연계 저작권 보호 서명 및 퀴즈대회, 연예인 사인 회 등
9월 19~20일	홍익대학교 인근	1,816	서울와우북페스티벌과 연계 저작권 보호 서명, 퀴즈대회 및 다트놀이 등
10월 31일	용산 전자상가	1,021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와 연계 저작권 보호서명 및 저작권 OX퀴즈대회 등
12월 7~13일	온라인 및 가두 캠페인	8,461	온라인 캠페인 '저작권은 네모이다' 및 가두캠페인 추진(교대역, 서울역, 여의도역)
합계		34,267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인터넷의 주 사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퀴즈를 통해 풀어보며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례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2-35] 2009년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참여자	1,349	1,487	1,200	1,273	1,387	868	1,499	1,240	1,302	11,605

*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됨

3) 청소년저작권교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저작권 관련 콘텐츠에 청소년들의 쉽게 접근하고 저작권에 대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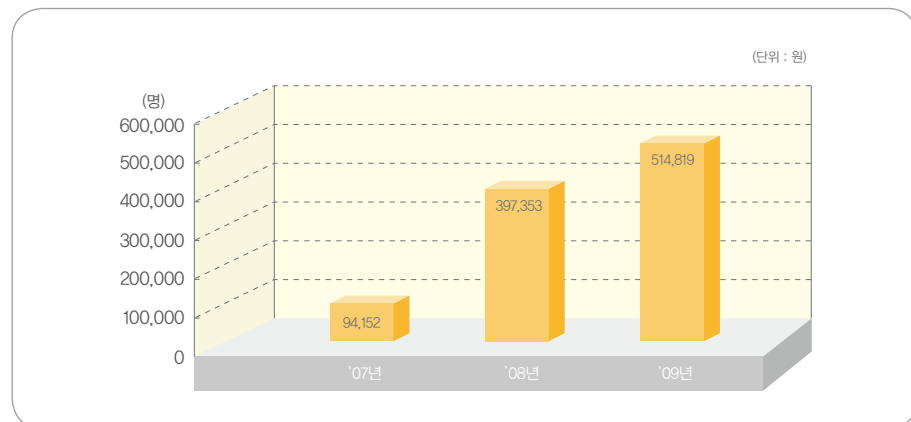
2007년 1월 오픈한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저작권 사례 30가지를 우비소년 캐릭터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미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게임에 저작권 내용을 담은 ‘재미짱~ 청소년 저작권 게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저작권, 만화로 보는 저작권(12가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저작물의 소중함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알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연구학교’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6]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⁵⁸⁾

2009년부터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된 청소년 드라마·애니메이션(4종)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교에도 보급한 바 있다.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매년 개편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사이트로 한층 더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림 2-47]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교실사이트 방문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방문자 수	94,152명	397,353명	514,819명	1,006,324명

4) 월간 '저작권 문화' 발간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일반인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최신 소식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월간 저작권 문화를 발행하고 있다.

1994년 9월 '저작권 소식'이라는 제호로 창간된 월간 저작권 문화는 매월 5,000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국회 등 공공기관과 대학 도서관, 구독 희망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알리기 위해 e-book, e-news-letter 등의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월간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기자, 방송작가 등 대중적 영향력이 강한 집필진을 확보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저작권 전문지로 자리매김하였다.

58)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는 2010년부터 어린이청소년저작권교실(<http://youth.copyright.or.kr>)로 변경되었다.

[그림 2-48] 2009년 저작권 문화 발간 현황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 기술이란 「저작권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로 정의된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사적복제권 등 저작권 제한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불법콘텐츠가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나 라이선스 유통 과정에서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RM 기술이 권리자 보호를 위한 기술이라면, 온라인상의 합법유통모델이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같은 것은 공정한 유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이라고 하겠다.

종래에는 저작권 기술의 중점이 저작권 침해기술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 또는 예방하는데 있었다면, 최근에는 합법적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의 기술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한편, 저작권 기술은 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근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1. 기술 현황

주요 저작권 기술에는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구매자 정보를 삽입·추출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워터마크(watermark) 및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과 콘텐츠 고유의 DNA 특징점을 추출하여 저작물을 식별해내는 특징 기반 인식 기술 등 디지털 콘텐츠 필터링 기술, 라이선스 부여에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저작물 및 방송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RM 및 CAS 기술, 저작물의 유통비리터·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DRM 상호 호환성 기술, 공유 저작물의 생성 촉진 및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유이용활성화 기술이 있다.

(1) 워터마크 및 포렌식마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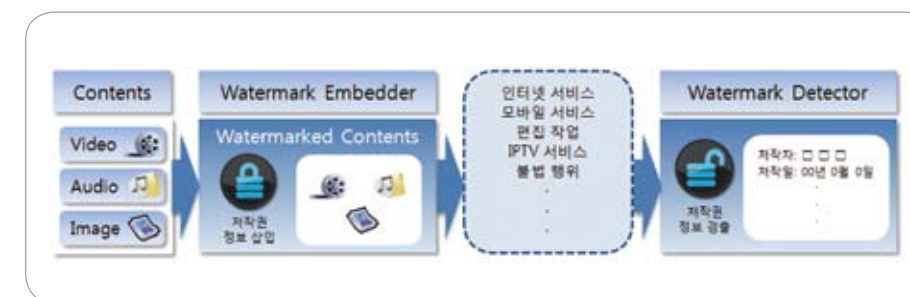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게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워터마크(watermark)라 하며, 이러한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및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포렌식마크(forensic mark)라 부르고 있다.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소유권자의 저작권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로 삽입하고 불법복제된 콘텐츠에서 워터마크(watermark)를 다시 추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의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 내에 삽입하여 추후 발생하게 될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무단 복제된 경우, 데이터의 판매자로 하여금 복제된 복사본의 원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사후 검출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디지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2진 마크를 삽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워터마크(watermark)와 유사하지만, 데이터에 대해 삽입되는 마크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각각을 식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워터마크(watermark)와 구별된다. 즉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인증 기능만을 제고하는 것이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이라면, 소유권 인증 기능뿐만 아니라

배포자 식별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이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이다.

[그림 2-49] 포렌식마크 기술 개념도



애플사의 iTunes-iPod의 폐쇄적 DRM(FairPlay)으로 독점적 시장에 반감을 갖기 시작한 유럽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일명 '반 애플법'을 제정하여 DRM 호환성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르웨이 정부로부터는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DRM 기술에 대한 해체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애플사는 2007년 4월 EMI(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와 합의하여 DRM을 해체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 음반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 BMG(Bertelsmann Music Group), EMI, WMG(Warner Music Group), UMG(Universal Music Group)가 DRM-free에 참여함에 따라 2009년 1월 800만곡에 달하는 iTunes서비스의 모든 음악 콘텐츠에 DRM-free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의 소리바다, 멜론, 도리락 등 대부분의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DRM-free로 음원을 공급하는 등 음원 분야에서는 DRM-free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DRM-free환경에서 적합한 저작권 기술로서 워터마크(watermark) 및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반의 저작권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UMG는 DRM-free파일에 워터마크(watermark)를 삽입하여 음악 트랙을 제공한 판매자들을 구분하여 아마존이나 베스트 바이 등의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09년 8월 국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솔루션 전문업체 마크애니는 UMG에 향후 3년간 매년 70만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오디오 및 비디오) 공급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네덜란드 Philips,

프랑스 Thomson은 오디오·비디오 워터마킹을 통해 디지털시네마 규격(DCI)을 만족하는 포렌식마킹 솔루션을 개발하여 디지털시네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IPTV, 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추적과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등 워터마크(watermark) 및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디지털 콘텐츠 필터링 기술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OSP는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보호조치로 검색어 기반 필터링(제목 필터링·문자열 필터링·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해시(Hash)기반 필터링,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은 스팸메일을 필터링하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콘텐츠에 해당되는 키워드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검색되는 것을 막아 불법적인 콘텐츠의 전송을 막는 기술(파일명 등 주요 키워드)을 의미한다.

검색어 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제목 필터링, 문자열 필터링, 특정 유형(확장자 명)의 필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OSP 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많은 OSP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키워드를 우회하는 지능적인 방법들(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며, 불법적인 콘텐츠와 무관한 사용자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적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열 비교를 통한 필터링이 도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해시 기반 필터링⁵⁹⁾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필터링 작업을 한다. 해시 함수는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입력하여 해시 값인 짧은 ‘전자지문(signature)’를 만들어 낸다. 해시 함수로는 MD4(Message Digest 4)⁶⁰⁾, MD5(Message Digest 5)⁶¹⁾, SHA(Secure Hash Algorithm ; 안전한 해쉬 알고리즘)⁶²⁾ 등을 사용하며, 좋은 해시 함수는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같은 해시 값을 출력하고, 서로 다른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해시 값을 출력하는 빈도수가 적은 함수이다.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필터링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들에 대한 해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 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서버단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값들과 비교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시 기반 필터링은 텍스트 기반 필터링의 취약점인 제목 변경 등에 강하고, 해시 함수의 계산이 빨라 저작물 콘텐츠들에 대한 해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시 값은 콘텐츠 파일의 미세한 변화에도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본 저작물 콘텐츠를 사용자가 압축포맷 변환, 단축 등 파일크기 변환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 변종파일에 대한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인식 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은 음원 또는 영상파일 고유의 특징인 주파수나 화면 전환 정보, 위치정보, 컬러정보 등 특징점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하여(이것을 음원 DNA, 영상 DNA라고 부르기도 함) 복제물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제목 필터링 등에서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문제점(파일 압축·확대·편집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P2P(peer to peer), 웹하드, UCC 등의 저작권 보호 외에 콘텐츠 검색 분야에 활용할 경우 개인의 콘텐츠 활용도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59) 김종안 외 3인, IPTV 불법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2009. 8. 27 ~ 29)

60) 입력 데이터(길이에 상관없는 하나의 메시지)로부터 128비트 메시지 축약을 만들으로써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61) 128비트 암호화 해시 함수로 RFC 1321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원본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된다. 1991년에 로널드 라이베스트가 MD4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했다.

62) 서로 관련된 암호학적 해쉬 함수들의 모음으로 이들 함수는 NSA(National Security Agency :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이 1993년에 처음으로 설계했으며 미국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평가 되고 있다.

[그림 2-50]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도



국내에서는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을 필터링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엔씨즈 등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활발히 적용 중에 있으며 미국 Midomi사는 콘텐츠의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음성 및 노래의 특징 기반 검색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DRM 및 CAS 기술

DRM은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 권리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관리해 주는 기술 및 서비스로, 광의의 DRM과 협의의 DRM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분배, 유통, 과금, 거래내역의 관리 및 보고, 정산 등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며, 협의의 DRM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를 수행하는 패키징 기술과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관리기술 및 권한통제기술을 의미한다.

한편 방송콘텐츠 보호를 위한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는 디지털방송(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DMB, IPTV 등)의 제한수신을 통해 허가된 수신자만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로, IPTV시청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된 콘텐츠 보호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악의 경우는 DRM-free로 가는 추세이나, 디지털시네마, 디지털방송, IPTV, 교육콘텐츠와 같은 동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영역에서는 동영상콘텐츠의 특성상 DRM 및 CAS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송사, 인터넷 포털, 영화전문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MS-DRM을 적용하여 인터넷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S 기술 분야에서는 NDS, Nagravision, Irdeto 등 기존 CAS 공급업체들이 DVB, ISMA, OpenCable, TV-Anytime, CPTWG 등의 DRM 표준화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시네마의 보급이 매우 급속한 속도로 증가되고 2013년에는 전 세계 상영관의 50%정도가 디지털스크린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⁶³⁾됨에 따라 디지털시네마 관련 DRM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영서버 제품의 경우 Doremi·QuVIS·GDC 제품이, 디지털 영상기 제품의 경우 Christie와 Barco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량 외산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DRM 상호 호환성 기술

DRM 상호 호환 기술이란 다양한 서비스 환경 및 상이한 DRM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기술로 다양한 기기,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가 혼재된 디지털 홈 환경에서 특히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특정 서비스나 단일 매체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DRM 기술이 기기간 호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이용권한을 축소

63) 출처 : 디지털 시네마 리포트, 2007. 11

하고 불편함을 초래했던 것과 달리, DRM 상호 호환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DRM 간 상호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강화와 동시에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DRM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졌던 5가지의 접근 방식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36] DRM 호환성 해결 방안 장단점

DRM 호환성 해결 방안	장 점	단 점
단일 규격의 DRM 방식	DRM 호환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간편하게 해결	산업계에서 하나의 표준만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음
복수 DRM 클라이언트를 내장한 기기 방식	- 기기제조업체 입장 서비스 업체의 DRM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다양한 DRM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 - 사용자 입장 서비스의 선택권이 다양해짐	클라이언트 기기에서 복수 DRM 탑재를 위한 비용부담 발생. 현존하는 모든 DRM을 한 기기에 탑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숫자의 복수 DRM 만이 탑재될 수밖에 없음
복수 DRM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	- 서비스 사업자 입장 사용자 기기에 탑재된 DRM 종류와 무관하게 DRM 콘텐츠 제공이 가능 - 사용자 입장 기기의 선택권이 다양해짐	서비스업체에서 복수의 DRM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발생. 현존하는 모든 DRM을 한 서비스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숫자의 복수 DRM 만이 지원될 수밖에 없음
DRM 변환 기술 방식	- DRM 변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 - 서비스 사업자 입장 사용자 기기에 탑재된 DRM 종류와 무관하게 DRM 콘텐츠 제공이 가능 - 사용자 입장 사용자의 기기간 콘텐츠의 이용편리성 제공	1:1 변환 방식이기 때문에 변환기측에 변환 대상이 되는 DRM 기술이 공개되어야 함 변환되는 DRM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변환기의 복잡성이 증가함 현재는 PC에서만 가능
DRM 상호연동 기술 방식	DRM 변환기술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M:N의 변환방식을 지원하므로 변환되는 DRM의 종류가 많아져도 변환기 또는 연동의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음	각 DRM에서 연동 표준에 맞는 연동 입출력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DRM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으로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단일 기술규격으로 DRM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나 세계를 하나의 표준아래

통일하는 것은 이미 많은 DRM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DRM 상호연동기술은 국내에서 출발한 새로운 표준화 접근방식으로 연동 표준을 정하고 각 DRM이 이 연동 표준을 준수하면서 타 DRM으로 콘텐츠를 변환하여 전달함으로써 DRM 변환 기술에서의 문제점이었던 상호 기술에 대한 공개가 필요 없는 기술이다. 그 예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DRM 연동 기술인 EXIM(EXport IMport)을 들 수 있다. 이외 2008년 12월 CAS와 DRM이 상호 호환성 지원을 위한 CADII 표준과 음악 DRM 및 CAS-DRM간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나, 향후 동영상 및 IPTV DRM을 대상으로 상호 연동을 위한 기술과 표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자유이용활성화 기술

자유이용활성화 기술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자유이용허락표시, 이하 CCL이라 한다) 등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CCK(Creative Commons Korea ; 한국저작물 자유이용협회, 이하 CCK라 한다)에서 ‘내 콘텐츠의 CC라이선스 달기’를 통해 저작물 자유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 블로그 및 카페, 사진 공유 서비스와 포털의 게시판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CCK에서는 CCL 적용사이트의 콘텐츠를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CC Sear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미국도서관협회)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평가하는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툴 ‘FairUse Evaluator’를 발표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자유이용 저작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과 기증 저작물을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등과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에 대해 정책 공조를 하는 한편, 자유이용 공유 저작물(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CCL부착 저작물,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

방하는 저작물 등)의 사회적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유이용 공유 저작물을 개인 창작(UCC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1인기업 시대의 초석이 되고 콘텐츠 산업의 도약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1] 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저작권 기술이 DRM 및 CAS 등 단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향후에는 디지털 워터마크(watermark) 및 포렌식마크(forensic mark) 기술 등 다양한 저작권 기술들을 결합하여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 및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체 연구 또는 기술제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점점 증대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및 IPTV, VOD 등 신규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과 기기종 단말기의 경계가 없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와 기기종

단말기 간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끊임없는(seamless) 저작물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 친화적인 저작권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만 앞으로의 저작권 기술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폐쇄적인 기술이 아닌 사용자의 공정이용 및 이용권한을 포함한 공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실효성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프라 기술로서 매김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 유통 기술수준은 미국의 83.4% 수준⁶⁴⁾으로 3.8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DRM 기술은 MS, Adobe등 글로벌 IT업체가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많은 자금을 기술 로열티로 해외에 유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로열티에 의한 국부유출을 막고 저작권 기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어 국책 R&D 사업으로 추진된 ‘DRM 상호 연동기술’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 지원한다면 저작권 기술 관련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2. 기술 연구 및 활동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권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

64) 출처 : 2008년 기술수준 평가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2009)

보의 생성 및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유통사업자와 집중관리단체 및 기타 저작권 산업 분야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자원의 경우는 저작물의 설명정보, 저작권자 정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저작권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저작권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 및 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정보의 교환 및 공유가 되지 않고, 분야별로 점차 세분화되어 관리되는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및 기관에서 저작권 정보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중복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초래한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한 각 권리자별(단체 및 사업자별) 저작권 정보(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및 공유·교환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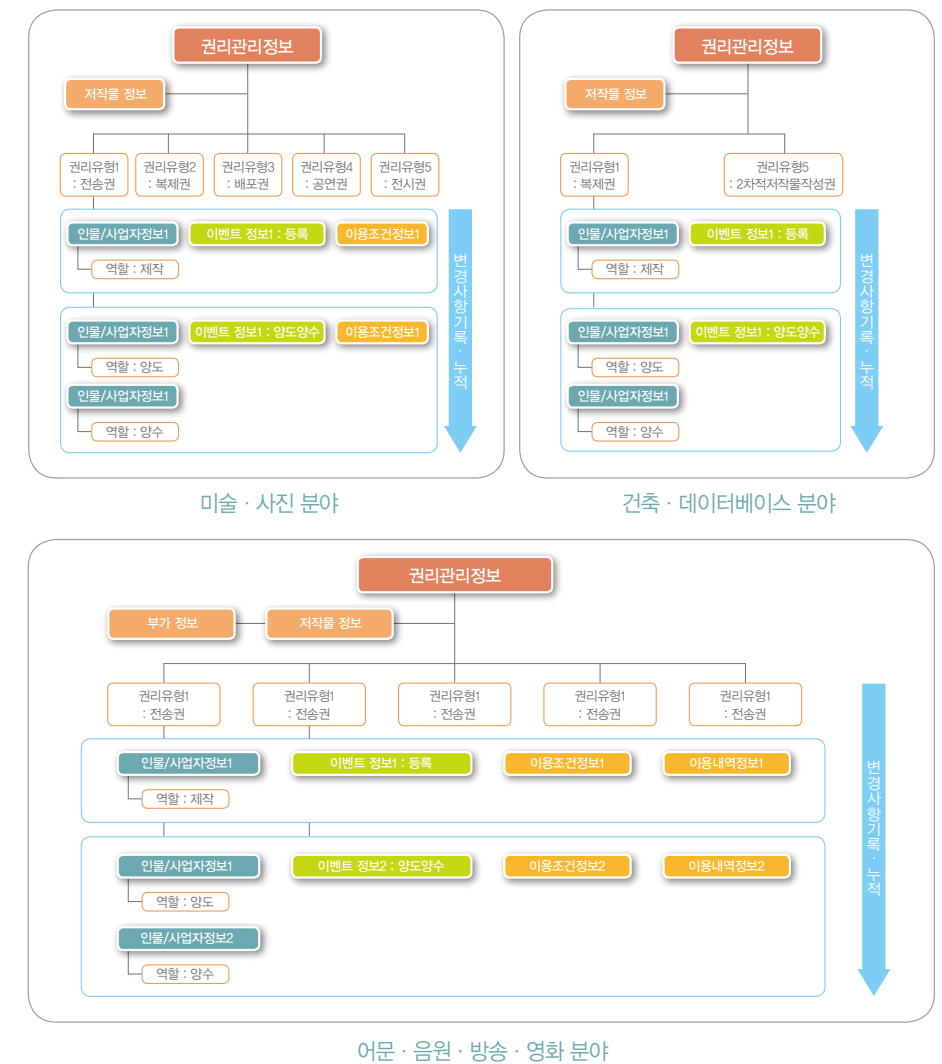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표준화는 크게 ①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통합관리체계 표준 연구(2008~2009년) ②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표준 연구(2008~2009년) ③ 국내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연구 및 한국형 용어사전, 기술구조 개발방안 마련(2010년)의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

1)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통합관리체계 표준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통합관리체계 표준 연구는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표준화의 부재로 산업 간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어문, 음원, 방송, 영화, 사진, 미술, 건축, 데이터베이스 등 콘텐츠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표준화 요소를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 권리자 및 사업자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관리관리정보의 구조 및 저작물 유통구조에 대한 연구와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관리관리정보, 그리고 이용계약서, 사용내역 등의 유통정보에 관한 표준화 요소 도출과 해당 요소들의 표준화 추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의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다.

[그림 2-52]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 구조의 개념도



2)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표준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리관리정보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표준 연구는 어문, 음원, 방송, 영화, 사진, 미술, 건축, 데이터베이스 등의 콘텐츠 분야별 저작

권 정보(메타데이터)의 공유·교환을 위한 유통구조와 해당 요소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권리자 및 사업자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권리관리정보 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와 유통 정보의 단계별 배포·교환 등 상호 연계에 필요한 표준 기술규약 및 지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권리자와 사업자 간 권리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였다.

3) 국내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연구 및 용어사전·기술구조 개발

2010년 수행하게 될 국내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연구 및 한국형 용어사전, 기술구조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각 권리자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유 및 교환 등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용어사전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작물 권리정보의 상호거래 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음원·방송·영화 분야별 저작물 권리정보의 상호운용을 위한 요건정의서를 개발하고, 음원·방송·영화 분야별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용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한국형 권리관리정보 용어사전의 모델 및 그 개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형 RDD(Right Data Dictionary; 권리데이터사전)⁶⁵⁾ 및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권리표현용어)⁶⁶⁾ 개발을 통한 저작권 권리정보 프레임워크(framework) 연구와 그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해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관리 및 접근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며, 저작권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유통사업 비용

감소, 효율적이고 양질의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인프라 확보, 다양한 저작물 및 저작권자에 관한 정보의 통합 및 서비스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다.

[그림 2-53]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워크숍



(2)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사업자별로 다양한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 용에 따른 사용자 불편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산업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2009년도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는 3개의 세부 과제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으며, ① 폐쇄적 DRM이 가지고 있는 비호환성 문제 및 사회적 중복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DRM 호환성 방안 연구 ② 2차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재전송 및 소비자의 허가되지 않는 복제 행위 제어 등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연구 ③ DRM-free에 대응한 음악 분야 포렌식마크(forensic mark)·특징기반 필터링기술 기술인증 및 평가표준 연구로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다루고 있다.

1) DRM 호환성 방안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원본과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 제공자들은 DRM 기술과 같은 불법복제 방지 솔루션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하려 한다.

65) 저작권 권리정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사전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 모든 영역에서 표준화된 구문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66) RDD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권리(rights)와 허가(permission)를 선언할 수 있는 언어로 표준구문을 사용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형식으로 권리의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DRM 기술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반면, 현재까지 사회적, 산업적 합의를 이룬 표준 DRM 기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까닭으로 시장에서는 다수의 DRM 솔루션 업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다양한 DRM 기술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DRM 기술의 환경적 요인은 사용자들이 구입한 콘텐츠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에 의해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DRM 기술의 폐쇄성은 소비자 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애플사의 iTunes를 중심으로 DRM-free의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모든 콘텐츠 부분에서 DRM-free가 적용된다면 DRM 호환을 위한 표준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DRM-free 현상의 원인이 DRM 기술의 호환성 부재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할 때, DRM 호환성 표준이 제공되고 복수의 DRM이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가장 강력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DRM 기술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DRM 호환성 방안 연구'는 DRM 비호환성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첫째, 서비스 및 기기의 선택 자유권 보장 측면, 둘째, 콘텐츠의 사적복제권 보장 측면,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이다.

아울러 DRM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DRM 기술이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돌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표준화 연구사업으로 추진된 DRM 호환성 기술 연구의 2차년도 연속사업으로, 1차년도 연구결과로 도출된 DRM 호환기술의 요구사항 및 표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DRM 호환성 표준기술규격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용 DRM 기술이 커널 레벨의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수준의 탬퍼링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이한 DRM 기술 간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DRM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DRM 기술의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용 DRM 기술 및 제품의 고유 기술 공개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곧 DRM 기술의 보안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DRM 충돌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DRM 업체 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DRM 업체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이 유지되면서도 상호 간 DRM 모듈의 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DRM 기술의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사용자의 DRM 콘텐츠 이용의 편리에 일조함과 동시에 DRM 기술 개발 업체들의 안정적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DRM 호환성 표준화를 위하여 1차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DRM 호환기술의 요구사항 및 표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DRM 상호연동기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기술규격을 개발하고 DRM 호환성 표준기술의 적합성 시험 인증을 위한 평가 프로파일 개발 및 DRM 호환성 표준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상용 DRM 기술 및 제품의 DRM 충돌 사례 분석, 국내 주요 DRM 업체의 DRM 구현 메커니즘 분석, DRM 충돌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 조사를 통해 상용 DRM 기술개발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DRM 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DRM 기술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산업적·정책적 현안을 발굴하고 DRM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과제 도출을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표준 규격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발업체별로 상이한 보호 메커니즘과 보안기술들을 사용하여 개발된 DRM 기술들이 자신들의 고유 기술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도 상호연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더 이상 특정 DRM 기술만을 지원하는 기기나 서비스에 의존적일 필요가 없게 되며, 이는 DRM 호환성 표준 규격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기기 선택 자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요소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표준 규격은 자신이 구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DRM 기

술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다른 기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는 허가된 도메인 내에서 DRM 콘텐츠가 DRM의 DSZ(DRM Security Zone)과 무관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개인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DRM 기술 개발업체나 시장지배적 위치의 서비스사업자들은 DRM 호환성을 지원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DRM 호환성 제공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폐쇄적 DRM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지만 DRM 호환성 해결을 위한 표준규격을 통해 폐쇄적 DRM 정책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2009년 6월 12일 미국의 아날로그 방송 전면 중단 및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한국(2012년 12월 31일), 일본(2011년 6월 24일), 프랑스(2011년 11월 3일) 등 전 세계 21개 방송사들은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만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다.⁶⁷⁾ 이는 향후 수년 내에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지상파 방송이 전면적으로 디지털 방송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방송은 HD급 이상의 선명한 화면을 수신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영상물들에 대한 보관, 편집, 배포면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방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 관련 업체와 시청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의 전면 시행은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을 이용한 무차별 복제 및 배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체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우려도 배재하기 어렵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의 미비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콘텐츠의 부족으로 디지털 방송이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우려감이 반영되어 2003년 11월 4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일명 'Broadcast Flag'라고 불리는 방송 및 방송기기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5년 5월 콜롬비아 법원에서 FCC의 월권 결정에 따라 무효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 의회에서 입안자들과 소비자 단체들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2002년에 관련 행정명령을 수정하였고, 2004년 4월부터 일본 내 모든 BS 디지털 방송과 지상 디지털 방송에 대해 복제제어 신호를 탑재하고 방송을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이른바 B-CAS(Broadcast Conditional Access System) 방식의 DTV 방송보호조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 상황을 지켜 볼 때 2012년 12월 디지털 전면 방송을 앞둔 국내 방송 환경에서도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술, 표준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 결과로 도출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요구사항, 그리고 표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표준 규격을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참조모델별 기술적 장단점의 분석 및 위험분석, 회피전략을 수립하고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송출 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표준 규격 및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녹화를 위한 표준 포맷의 규격 연구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을 연구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의해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가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기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및 시행 방안 연구와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을 통하여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을 통해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기술적보호조치 실효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 기반의 지상파 방송콘텐츠 기술적보호조치는 엄격한 이용통

67) 출처 : <http://www.Nationalmaster.com>

제하의 DRM 기술 대신 일종의 스피드 범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리관리정보 기반의 기술적보호조치는 방송콘텐츠를 암호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권리관리정보를 기반으로 복제 및 업로드를 할 때 저작권 경고문 또는 권리관리정보 표시문 등의 표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경고문 등은 사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흐름으로 사용자들에게 방송 저작물은 허락된 이용 범위 한도 내에서 이용이 되어야 하며,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P2P 또는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음악 분야 포렌식마크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인증 및 평가표준

디지털 저작물 유통으로 콘텐츠 산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OSP의 진화, 저작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시장 이해관계자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기술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DRM-free라는 상반된 시장 요구가 상존하고 있어서 시장에서의 혼란은 권리자와 OSP,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보호 조치와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장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기반과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혼재하면서 합법과 불법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표준화 지연과 객관적 성능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권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OSP가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표준규격이 개발되었으나 기술적보호조치의 성능 기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 정립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와 권리자, 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기술적보호 조치 표준규격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기술성능 인증을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도 필요하다.

이에 ‘음악 분야 포렌식마크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인증 및 평가표준 연구’를 통해 포렌식마크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체크포인트 개발 및 체크 기준 데이터와의 비교표 개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스펙을 분석, 국내의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기술 사양을 분석하여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권리자와 사업자의 해당 기술적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해당 기술의 사양분석 결과를 이용,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국내 표준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적보호조치 성능평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한 유형의 OSP 및 권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신뢰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저작권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서비스 시범사업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0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불법복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4,234억원이며, 이중 ‘방송’이 2,622억 2,97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콘텐츠의 온라인(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징점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및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로서 현재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적보호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특징점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 원활하게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본 콘텐츠에 대한 특징점 정보(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권리자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간 수익배분, 콘텐츠 유출 등의 문제로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워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적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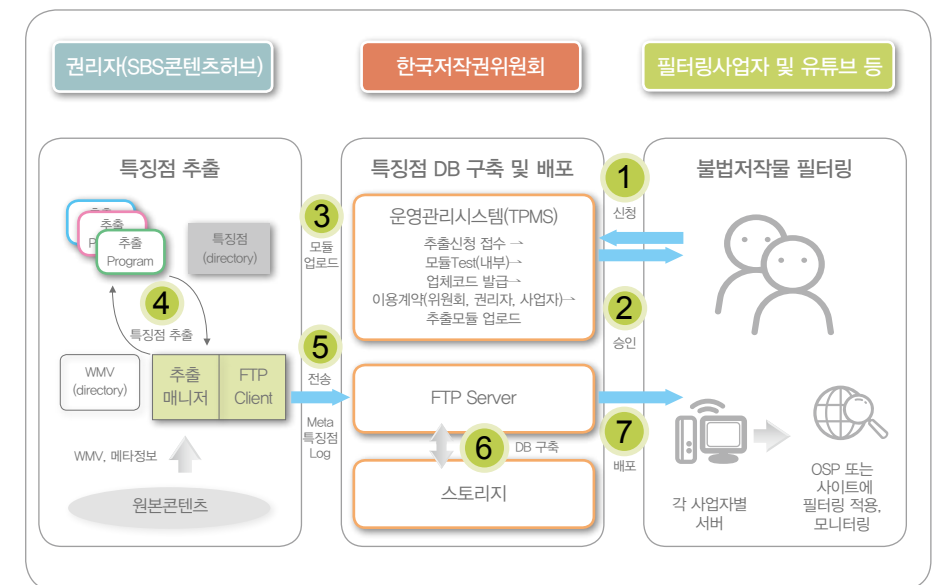
따라서 온라인상의 특징점 기반 필터링 적용 확산을 위해 권리자와 중립적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간의 공용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권리자, 기술업체, OSP 간 상생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정립과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서비스 시범사업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음악, 방송, 영화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징점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에 필요한 공용 특징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필터링 기술 업체에게 특징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기술을 확산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에 공용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를 위한 표준서비스 시스템(음악분야)을, 2009년에는 공용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를 위한 표준 서비스 시스템(영상분야)을 구축했으며 오는 2010년에 지상파 방송콘텐츠(SBS콘텐츠허브)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를 위한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권리자를 비롯한 OSP 모두가 합리적 이익과 효용을 누릴 수 있는 클린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54] 특징점 추출 개요도



- ①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을 위해 필터링 사업자 및 OSP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특징점 추출을 신청
- ②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한 업체의 특징점 모듈을 내부에서 테스트(인터페이스 규격 등) 후 승인 또는 미승인 통보(승인 시 권리자, 사업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간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 ③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을 위해 각 필터링 기술업체의 특징점 추출 모듈을 '특징점 추출 인터페이스 서버(방송사 내 설치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버)'에 설치
- ④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점 추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각 사의 특징점 추출 모듈이 실행되면서 특징점 추출(파일로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
- ⑤, ⑥ 추출된 특징점 및 메타데이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FTP 서버로 전송, 스토리지에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저장
- ⑦ 신규 콘텐츠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필터링 기술업체 및 저작권보호센터로 특징점 전송(필터링 기술업체를 통한 OSP 사업자로 특징점 전달, 필터링 수행)

(4) 기술위원회 및 교류협력

1)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술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림 2-55] 기술위원회 개최



[그림 2-56] 협의체 워크숍 분임토론



현재 법조계, 학·연구계, 협회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17명의 기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통합되어 9월에 기술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고,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사업,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 자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교류협력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기술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산업간 중복투자 손실 및 호환성 문제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산업적·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자 기술적보호조치(DRM 등)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를 시행 첫 해

인 2008년 5회, 2009년에는 4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추진과 관련 이해당사자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광운대학교는 2009년 11월 26일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뤄진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의 제도적 기반'의 주제로 정필운 박사가 디지털시대 저작권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정재 팀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광운대학교의 MOU 체결은 앞으로 관련 기술의 학문적 발전과 산업에의 효율적인 적용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12월 9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지침 및 인증업무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업계 및 학계 등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진행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정품 저작물의 이용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동향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다.

[그림 2-57]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컨퍼런스



(5) 저작권 기술 R&D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Web 2.0 환경에서의 P2P(peer to peer) 및 UCC 등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저작물의 공유 및 유통의 증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순식간에 대량으로 확산되어 저작권 침해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2조 4천억원이며, 2009년 BSA 조사 결과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3%로 피해액만 7,440억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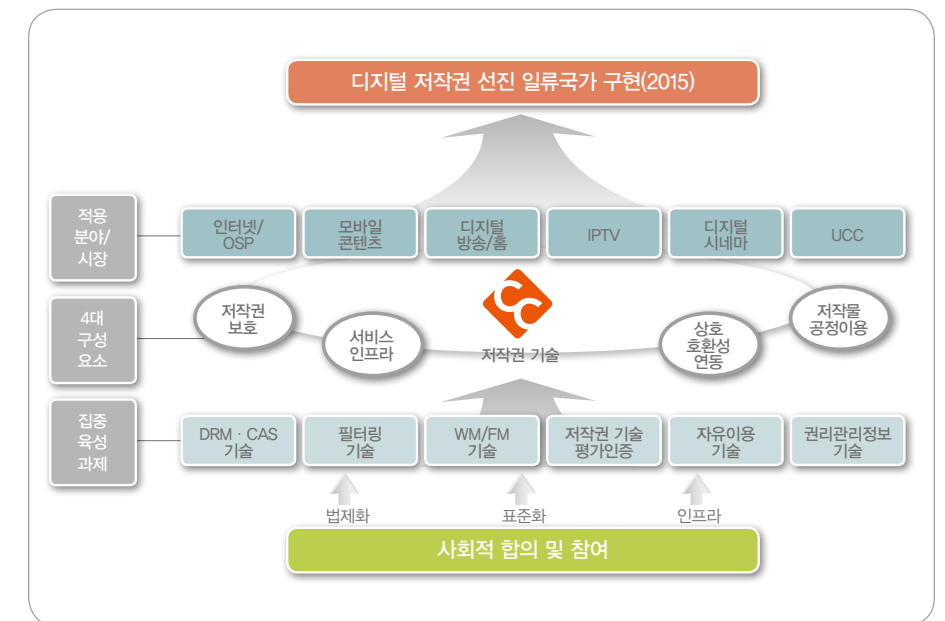
더욱이 3D 입체영상, e-book, 스마트폰, IPTV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발생에 따른 각종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창작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저작권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작권 기술 수준은 이제 미래 저작권 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공유 증가와 IPTV, P2P, UCC 등 디지털 기반 신규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기술 R&D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 기술 R&D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발생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 기술 체계 및 집중육성 과제로 도출한 분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58] 저작권 기술 체계도



저작권 기술 R&D에서는 향후 3D 입체영상, e-book 등 새로운 콘텐츠 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과 모바일 환경(스마트폰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기기를 통한 불법저작물 사전 점검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라 '사업기획 → 사업공고 및 신청 → 과제평가 및 선정 → 협약·연구비지급 → 과제관리 → 최종평가 → 연구비정산 → 성과활성화'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 중 '사업기획'단계에서는 차년도 R&D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6개월 동안 기술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R&D 기본계획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인터넷 공시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최종 후보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기술의 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연간 1조 2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온라인 불법복제시장의 50% 축소시)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표 2-37]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따른 불법시장 규모⁶⁸⁾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침해규모	30%감소시 침해규모	40%감소시 침해규모	50%감소시 침해규모	60%감소시 침해규모
음악	710,707	497,495	426,424	355,353	284,282
영화	589,322	412,525	353,593	294,661	235,728
출판	447,143	313,000	268,286	223,571	178,857
게임	414,061	289,843	248,436	207,030	165,624
방송	262,229	183,560	157,337	131,114	104,891
합계	2,423,464	1,696,425	1,454,078	1,211,732	969,385

* 2009 불법시장 규모 기준으로 산정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SW 불법복제율 10% 감소시 GDP 기여 1,336백만달러, 세수 증대 736백만달러, 하이테크 일자리 7,556개 창출효과가 예상되면서 저작권 기술 R&D가 문화콘텐츠 산업 및 SW 산업 등 연관 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38] IDC의 불법복제율 10%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한국)⁶⁹⁾

구분	2003년 보고서	2005년 보고서	2008년 보고서
불법복제율 감소	48% → 38%	46% → 36%	45% → 35%
감소기간	01년(48%)~06년(38%)	04년(46%)~09년(36%)	08년(45%)~11년(35%)

68) 출처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010)

69) 출처 : 소프트웨어 경제영향보고서(IDC, 2008)

4년간 일자리 증가	7,956개	18,234개	7,556개
4년간 세수 증가	318백만 달러	887백만 달러	736백만 달러
4년간 GDP 증가	3,186백만 달러	2,925백만 달러	1,336백만 달러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1. 저작권 산업 기여도
2.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3.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4. 시사점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2. 자유이용 사이트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4. 저작권 등록
5. 법정허락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현황
2. 활동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저작권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IPO가 2003년말 발간한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에서 구분한 핵심 저작권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 산업의 4가지 범주와 국제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응시켜 우리나라의 저작권 산업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의 자료에서 각 산업별 취업자수, 매출액, 부가가치를 조사하여 저작권 산업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이하 GDP라 한다)와 대비하였다.

1. 저작권 산업 기여도

〈표 3-1〉에는 2008년의 저작권 산업 실질산출액, 실질부가가치, 종사자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의 저작권 산업의 산출액과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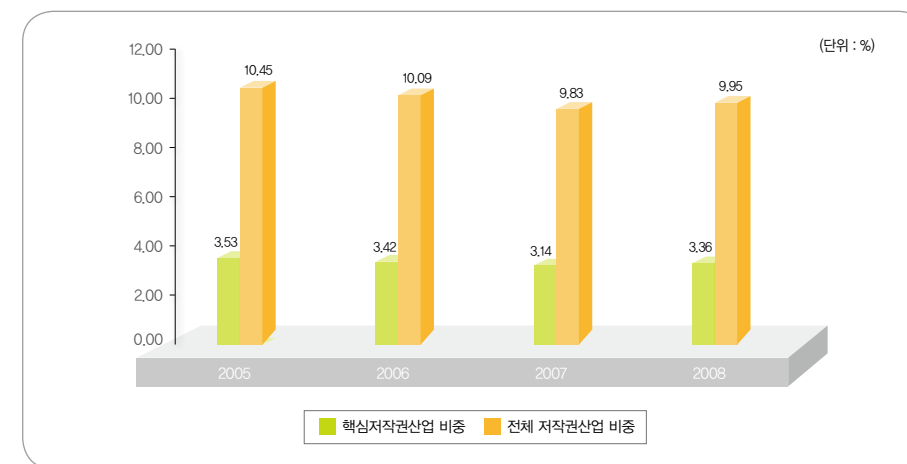
- 실질산출액 223조 4,440억원
- 실질부가가치 97조 8,499억원(실질 GDP의 9.95%)
- 종사자수 129만 6,000명(국가 전체 종사자수의 5.5%)

[표 3-1] 2008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 기여도(2005년 실질가격)

산업	산출액	부가가치	GDP 비중 (%)	종사자수 (천명)	취업자 비중 (%)
	2005년 실질가격(10억원)				
핵심 저작권 산업	72,727	32,878	3.36	519	2.20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70,800	29,015	2.97	254	1.08
부분 저작권 산업	24,516	12,329	1.26	223	0.94
저작권 지원산업	55,401	23,151	2.37	300	1.27
전체 저작권 산업 합계	223,444	97,371	9.95	1,296	5.50
한국 경제	NA	978,499	100	23,577	100

〈그림 3-1〉에는 저작권 산업의 GDP에의 비중이 나타나 있다. 저작권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05년 10.45%에서 2008년 9.95%로 경제 기여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핵심 저작권 산업의 실질부가가치도 2005년 우리나라 실질GDP의 3.53%에서 2008년 3.36%로 경제 기여도가 약간 축소되고 있다.

[그림 3-1] 저작권 산업의 GDP 비중(2005년 실질가격)



반면,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고용 기여도는 2005년 119만 4,000명(전체 취업자의 5.22%)이었는데, 〈표 3-1〉에서 알 수 있듯 2008년 129만 6,000명(5.5%)으로 약간

확대되었다.

핵심 저작권 산업의 고용 기여도도 2005년 2.02%에서 2008년 2.20%로 전체 저작권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약간 확대시켰다.

2.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표 3-2〉에는 저작권 산업 부문별 실질산출액, 실질부가가치, 고용의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실질산출액 구성비는 32.5%, 실질부가가치 구성비는 33.8%, 고용 구성비는 40.0%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의 실질산출액 구성비는 31.7%, 실질부가가치 구성비는 29.8%, 고용 구성비는 19.6%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부분 저작권 산업의 실질산출액 구성비는 11.0%, 실질부가가치 구성비는 12.7%, 고용 구성비는 17.2%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저작권 지원산업의 실질산출액 구성비는 24.8%, 실질부가가치 구성비는 23.8%, 고용 구성비는 23.2%이다.

[표 3-2] 2008년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2005년 실질가격)

산업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10억원	구성비(%)	10억원	구성비(%)	천명	구성비(%)
핵심 저작권 산업	72,727	32.5	32,878	33.8	519	40.0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70,800	31.7	29,015	29.8	254	19.6
부분 저작권 산업	24,516	11.0	12,329	12.7	223	17.2
저작권 지원산업	55,401	24.8	23,151	23.8	300	23.2
전체 저작권 산업	223,444	100	97,371	100	1,296	100

〈표 3-3〉에는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명목산출액, 명목부가가치의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명목산출액 구성비는 32.0%, 명목부가가치 구성비는 33.2%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의 명목산출액 구성비는 32.2%, 명목부가가치 구성비는 30.3%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부분 저작권 산업의 명목산출액 구성비는 10.9%, 부가가치 구성비는 12.6%이다.

전체 저작권 산업 중 저작권 지원산업의 명목산출액 구성비는 24.9%, 부가가치 구성비는 23.9%이다.

[표 3-3] 2008년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명목가격)

산업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10억원	구성비(%)	10억원	구성비(%)	천명	구성비(%)
핵심 저작권 산업	78,451	32.0	35,484	33.2	519	40.0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78,995	32.2	32,313	30.3	254	19.6
부분 저작권 산업	26,800	10.9	13,447	12.6	223	17.2
저작권 지원산업	61,077	24.9	25,480	23.9	300	23.2
전체 저작권 산업	245,323	100	106,723	100	1,296	100

주지하다시피, 저작권 산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 저작권 산업으로서 핵심 저작권 산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2〉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핵심 저작권 산업의 우리 경제에의 기여도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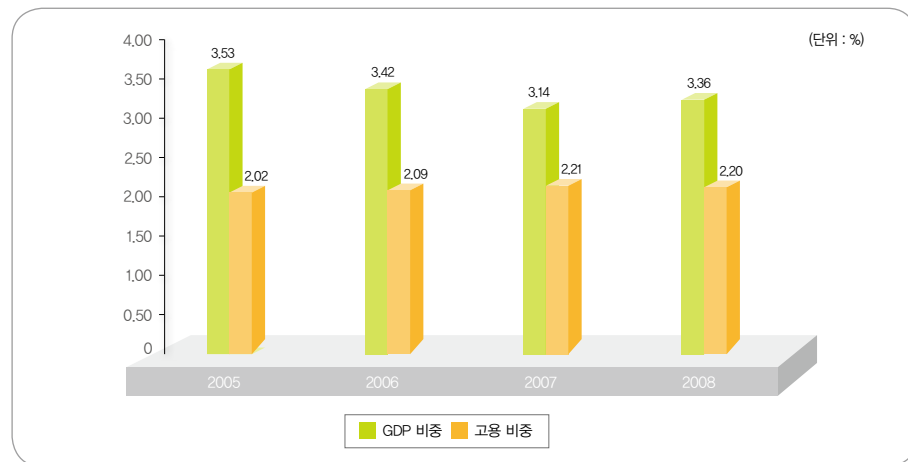
-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 2005년 3.53%, 2008년 3.36%
- 핵심 저작권 산업의 우리나라 전체 고용 기여도 2005년 2.02%, 2008년 2.20%

우리나라의 2007년 핵심 저작권 산업 GDP 기여도가 3.1%인데 반해 미국의 2007년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가 8.0%로 나타나 우리나라 핵심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미국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⁷⁰⁾

70) 2009년 국내 저작권 산업규모 통계조사에서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가 3.37%였는데, 이는 명목기여도와 실질기여도의 차이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부문 산업분류가 2010년에 변경되어 공표된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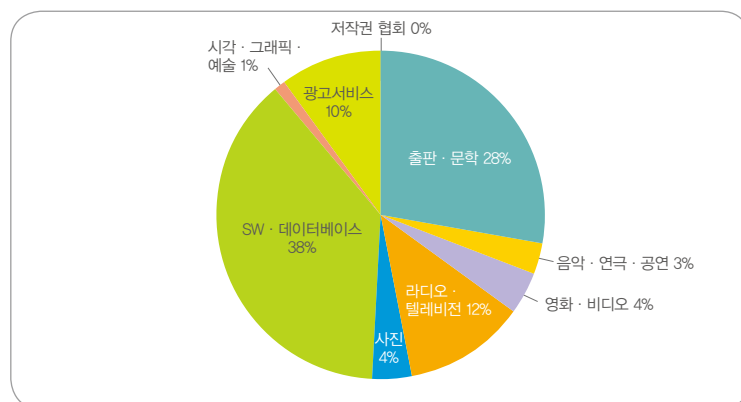
한편, 핵심 저작권 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경제 기여도가 약간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사자수의 2.20%가 핵심 저작권 산업의 종사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2005년 실질가격)



〈그림 3-3〉에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산출액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핵심 저작권 산업 산출액의 38%를 SW·데이터베이스산업이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다음으로 출판·문학산업(28%), 라디오·텔레비전(12%), 광고서비스(10%) 순이다.

[그림 3-3]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구성비(2005년 실질가격)



3.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표 3-3〉에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실질산출량, 부가가치, 고용과 성장률이 제시되어 있다.

저작권 산업 실질산출액은 2005년 195조 3,390억원에서 2008년 223조 4,440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실질 증가율이 4.59%이다.

저작권 산업 실질부가가치는 2005년 90조 3,850억원에서 2008년 97조 7,371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2.52%이다.

저작권 산업 고용은 2005년 119만 4,000명에서 2008년 129만 6,000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77%이다.

[표 3-4] 저작권 산업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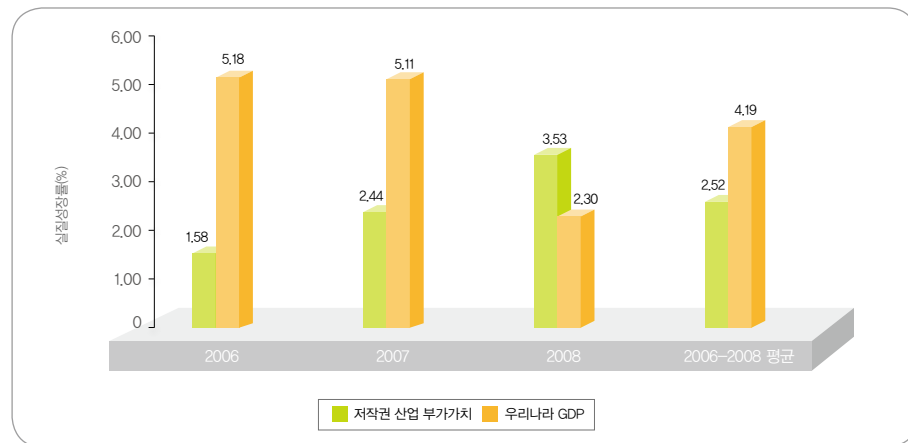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2008년 평균
산출액	5.85	4.22	3.69	4.59
부가가치	1.58	2.44	3.53	2.52
고용	3.15	3.47	1.70	2.77
GDP	5.18	5.11	2.30	4.19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수	1.29	1.22	0.61	1.04

〈그림 3-4〉에는 저작권 산업의 실질부가가치와 우리나라 실질GDP의 성장률이 제시되어 있다.

- 저작권 산업 실질부가가치 성장이 GDP 성장보다 더디게 성장
- 2006~2008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4.19%, 저작권 산업 실질부가가치 성장률은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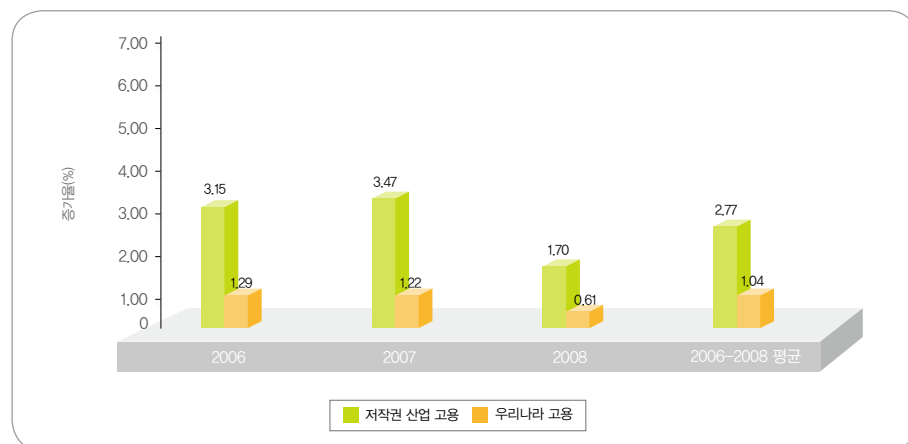
[그림 3-4]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그림 3-5〉에는 저작권 산업의 고용과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

2006~2008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저작권 산업 고용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다 약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저작권 산업 고용 증가율



4.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전체 저작권 산업의 실질산출액, 실질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높은 GDP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저작권 산업의 고용은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창출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 산업 실질GDP 기여도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기여도의 격차가 한국(3.1%) vs 미국(8.0%)로 매우 크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전체 저작권 산업 GDP 기여도의 격차가 핵심 저작권 산업의 GDP 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핵심 저작권 산업 중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비디오 산업은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들 취약분야의 육성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저작권법의 목적 중 보호와 규제 측면만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운영과 같은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제공 및 자유이용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SW 활용기반구축, 저작권 등록제도, 법정허락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분산적인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안전성과 시장 신뢰성이 취약한 저작권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권리관리정보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라이선스 거래비용의 절감 및 투명한 정산·분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는 통합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확대와 저작권 이용 계약 지원을 통한 저작권 권리 처리의 편리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정품여부와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 인증 체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 통합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통합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된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와 ICN (Integrated Copyrights Number ;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이하 ICN이라 한다) 부여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3-5]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ICN 부여⁷¹⁾

구분		2008년	2009년	합계
음 악	국 내	37만건	15만건	38.5만건
	해 외	—	10만건	10만건
어 문		40만건	40만건	80만건
방 송(대본)		—	1.1만건	1.1만건
합 계		77만건	52.6만건	129.6만건

* ICN :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식별을 위한 고유한 문자열 또는 번호체계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저작물 정보와 저작(권)자 정보로 구성되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6]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성 항목

구분		구성 항목
저작물 정보	공통	제목, 국내외 구분, 신작 및 대리중개 여부
	음악	작사, 작곡, 편곡, 가수, 연주, 음원제작자, 앨범명, 발매년도 등
	어문	작가, 번역, 도서명, 발행국가, 매체형태, 발행년도 등
	방송	제작자, 연출, 원작명, 출연진, 방송일시, 방송매체 등
저작(권)자 정보		권리자명, 대표자명, 주민번호(8자리), 사업자번호, 신작일자, 예필명, 사망일자 등

71) 2010년 3월 31일 만료된 사업으로 누적 158만건을 부여하였다.

음악 온라인 ICN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사업자(유통사) 및 음반제작사가 직접 저작물 메타정보와 저작권자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부여된 ICN을 활용하여 이용 계약 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ICN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ICN 운영시스템 확대를 위한 운영관리지침을 발간하는 등 ICN 활용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영화·음악분야의 ICN 활용 확산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음악 서비스사업자 5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⁷²⁾

[그림 3-6] 음악 온라인 ICN 등록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업무협약서 개요〉

협약 당사자

-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 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 5개사 **
 - * 음악신탁 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 음악유통 5개사 : 네오위즈박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미디어, 엠넷미디어, KT뮤직
- 영화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영화진흥위원회

72) 2010년 1월 영화진흥위원회 및 음악 서비스사업자 5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

- 영화저작물 및 음악 유통 5개사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베이스 공유 협력
- 영화저작물 및 음악 유통 5개사 저작물에 ICN 부착
- 유통 5개사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특징점(음악분야) 추출 협력

(2) CLMS 구축 확대

2008년 5월 오픈한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이하 CLMS라 한다)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사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기능하게 하는 시스템(저작물 정보검색 및 권리 확인 ⇒ 사용 신청 ⇒ 사용 승인 및 계약 체결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이다.

[표 3-7] CLMS 이용 현황

연도	계약신청(건)	계약체결(건)	계약체결률(%)	비고
2008	407	147	37	2008년 5월 시스템 오픈
2009	750	353	47	

1) 음악분야 CLMS 저작권 이용 계약 확대

2008년까지 구축된 음악분야 전송권 부문 이외에 복제권 이용 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통합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방송권, 공연권을 이용할 때에는 음악분야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2) CLMS 고도화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저작권 의식 확대로 소규모 이용자의 합법적 저작권 이용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만의 이용조건을 등록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온라

인으로 신청하고 권리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이용계약을 체결 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저작권 신탁단체 이외 음악 유통사업자의 참여, 활용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3-7] 음악 분야 CLMS 메인 화면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영화진흥위원회, 음악분야 신탁 단체 및 유통사, 저작권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참석 하에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다양한 발제 및 토론의 장인 컨퍼런스를 개최(2010년 1월 26일)하였다. 광운대학교 권현영 교수의 '디지털저작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거래소의 역할' 주제 발표를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영화진흥위원회의 '부가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리얼네트웍스의 '디지털저작권 글로벌시장 확대 방안' 발제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수행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내 권리 찾기 캠페인

'내 권리 찾기'란 저작물 중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권리를 찾고 보상금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2009년에는 포털사이트·지하철·잡지 등에 홍보물의 게재

를 통해, 저작권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내 권리 찾기 캠페인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림 3-8] 내 권리 찾기 캠페인



내 권리 찾기 사이트 메인화면



내 권리 찾기 지하철 광고게재 사진



내 권리 찾기 DM 및 포스터 이미지



내 권리 찾기 Daum 초기 배너 게재 화면

(5)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시스템 구축 고도화

권리인증 사실 및 권리인증서 발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권리인증기관의 시스템과 연동, 권리인증 정보조회 및 전송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사업자들의 환경을 고려, PHP·ASP·JAVA 언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용허락 인증서 검증 모듈 SW를 개발하였으며 이용허락 인증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분리구축을 수행하였다.

(6) 실무추진팀 구성 및 운영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이슈 협의, 운영 지침 정비, 국내외 협력 및 연계 방안,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업무 실무추진팀을 운영하였다.

1) 음악 분야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의 권리 확인 방안 마련 및 ICN의 서비스 사업자 매칭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음악신탁단체, 민간유통사,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 회의를 9회 개최하였다.

2) 방송 분야

방송저작물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및 ICN 체계 마련 검토 등을 위해 방송신탁단체, 방송제작사, 케이블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 회의를 4회 개최하였다.

3) 저작권 인증 분야

저작권 인증고시 및 법개정안 마련 등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학계, 저작권 관련 단체, 저작권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 회의 11회, 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다.

(7) 저작권 인증 연구

저작권 인증에 대하여 다음 4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첫 번째로 ‘저작권 인증에 대한 해외사례 및 한·중·일 상호인증을 위한 연구’ 둘째,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연구 셋째, ‘권리인증과 거래인증 및 이용허락인증과의 상호 연계’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저작권 인증 마크를 통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

는 글로벌 저작권 인증 마크 및 UI 마크 디자인 도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유이용 사이트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일정기간(저작자 사망 후 50년, 우리 법 기준)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새로운 창작물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모든 저작물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만료 저작물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이다.

2006년 말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유이용 사이트는 현재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이용허락표시 저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자유이용 관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해 제공 자료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내용 및 사이트를 널리 알리고자 각종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기증, 기증 저작물 이용허락 등 기증관련 업무가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이용 사이트 내에 저작권 기증관련 프로세스를 탑재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기증 저작물을 쉽게 검색 및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기증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허락표시제도 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CL마크가 활성화되면 저작자들은 좀 더 손쉽게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허락 할 수 있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작자가 원하는 저작물 제공범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CCL을 통하여 권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CCL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시스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유이용 사이트는 2006년 말 저작권이 만료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 및 이용활성화 저작권 기증업무 신설에 따른 기증 관리 프로세스 도입 등 그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표 3-8] 자유이용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저작권 만료	저작권 기증	이용허락표시
2006년	저작권 만료 데이터베이스 구축(17,331건)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른 기증관리시스템 개발	CCL, 정보공유 연대 등 관련 사이트 링크
2007년	저작권 만료 데이터베이스 구축(5,091건)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증관리시스템 보완	-
2008년	저작권 만료 데이터베이스 구축(2,000여건) 사이트 이용활성화 홍보	기증관리단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기증관리시스템 보완	CCR 프로토타입 구축
2009년	저작물 형태 변환 모바일 플랫폼 개발 저작권 만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속(10,000여건)	기증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업로드	CCR 프로토타입 보완

저작권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 어문저작물 위주로 수집·구축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용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제공하고자 그 범위를 음악, 사진, 미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3-9]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분류	1차 구축량(건) 2006년	2차 구축량(건) 2007년	3차 구축량(건) 2008년	계
어문저작물	16,900	3,843	235	20,978
미술저작물	30	752	1,111	1,893
음악저작물	1	216	556	773
사진저작물	-	280	182	462
계	16,931	5,091	2,084	24,106

자유이용 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일반 이용자들의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나 자유이용 사이트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저조하였으나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포함한 공유저작물 등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이용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3-10]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활용 현황

구분	조회수 (A)	원문보기 (B)	다운로드 (C)	활용률	
				원문검색 실시율 (B/A)	다운로드실시율 (C/A)
2007년	45,343	22,570	10,785	50%	24%
2008년	123,894	14,659	20,041	12%	16%

2009년도 자유이용 사이트 운영 사업은 다양한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 자유이용 사이트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 자유이용 사이트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부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1) 저작권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확대 구축

1)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을 위한 지침 정비

2009년에는 기존에 조금씩 구축해오던 저작권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안정적인 저작권 만료 저작물 수집·제공·운영을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

우선, 현행법에 의해서는 저작자 사망 이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 되지만 구법 적용시기의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기준 등을 고려, 이로 인한 만료 저작물 수집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저작권 만료 저작물 선정 기준을 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문·미술·사진·음악 등 저작물의 각 분야별 자료수집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자유이용 사이트를 통한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제작 형태도 통일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정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추가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존 24,000여건이던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2009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및 제공 건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어문 저작물 중 기존에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어 이용자의 내용 활용에 불편을 끼쳤던 일부 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구축·제공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자유이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 24,000여건에서 총 35,000여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간 이용자들의 요구는 많았으나 400여건만이 제공되던 사진저작물의 경우 2,300여건이, 2,000여건만 제공되던 미술저작물의 경우 3,000여건이 추가 구축되어 향후 이용자들의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또한, 어문의 경우 총 2,100여건의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던 콘텐츠를 텍스트형태로 재구축하여 제공,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층 증진시켰다.

이렇게 텍스트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활용이 매우 용이해져 출판업 등 해당

분야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텍스트로 제공되는 어문저작물들의 경우 대형 온라인 서점의 요청으로 무상 제공되어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을 통하여 e-book으로 제작, 서비스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정보도 기존에 구축된 400여건 외에 700여건을 추가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자의 저작물들이 저작권이 만료 되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1]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분류	1~3차 구축량(건)	4차 구축량(건)	5차 구축량(건)	계
어문저작물	20,978	0	5,992	26,970
미술저작물	1,893	486	2,689	5,068
음악저작물	773	21	0	794
사진저작물	462	—	2,388	2,850
만료 저작물 소계	24,106	507	11,069	35,682
저작자정보	400	200	520	1,120

3) 일자리 창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년 실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으며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을 실시, 향후 단순 데이터베이스 입력 업무 외에 저작권 관련 업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용 인력의 총 20%를 소외계층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도 제공하였다.

[표 3-12] 일자리 창출 현황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투입 M/D	179	898	1,426	1,801	1,736	2,089
월 투입 M/M	18	29	48	58	58	67
소외계층 투입 M/M	0	0	11	15	16	15

* M/M(Man-Month) :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1명이 1달간 일하면 1M/M

[표 3-13]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 대상 교육 실시 현황

차수	교육명	교육일
1	전문교육 : 저작권 일반 1	2009년 11월 24일
2	전문교육 : 저작권 일반 2	2009년 12월 1일
3	전문교육 : 디지털콘텐츠 및 모바일 오픈마켓	2009년 12월 11일
4	전문교육 : 저작권 일반 3	2009년 12월 17일

(2) 자유이용 사이트 홍보 확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많지만 그에 비하여 정작 자유이용 사이트와 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포함한 공유저작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자유이용 사이트의 홍보 및 이를 통한 저작권 나눔 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 애국가 관련 기증 홍보

저작권 기증 1호인 ‘애국가’의 기증자 고 로리타 안 여사(고 안익태 선생 유족)의 합장식이 2009년 7월 21일 진행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기증에 대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 이를 통하여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저작권 기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증자인 로리타 안 여사의 추모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많은 이들

이 그 뜻에 감사하고 고인의 영면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였으며, 합장식 행사 지원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그림 3-9] 고 로리타 안 여사 추모 사이트 운영



[그림 3-10] 고 로리타 안 여사 합장식 지원



2) 홍보 이벤트

자유이용 사이트 관련 홍보는 단순히 사이트의 존재 여부만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들의 내용, 제공 저작물의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이트 홍보와 제공 콘텐츠 이용활성화, 그리고 이렇게 활용된 저작물의 기증을 통한 저작권 나눔 의식 확산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만료 저작물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기증으로 유도하는 ‘2차 저작물 작성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저작물을 편곡, 연주 등 이용자의 의도대로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 이를 출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출품작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14편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수상자 중 본인이 만든 2차 저작물 기증을 희망한 10명의 작품을 기증받아 자유이용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3) 자유이용 사이트 기능 개선

1)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능 추가

다양한 유무선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 채널을 제공하고자 모바일 사이트(2G용)를 개발, 휴대폰을 통한 자유이용 사이트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및 이용신청조회, 만료 저작물, 저작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만료 저작물 조회를 통하여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미술, 사진저작물은 모바일 화면에 맞게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 만료 저작자의 정보도 검색·제공하고 있다.

2) 양방향 커뮤니티 기능 개발

자유이용 사이트의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 간의 보다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사이트 친밀도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RSS 서비스,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였다.

RSS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 및 회원들에게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 등의 최신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포하고 이용자들은 RSS 리더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자유이용 사이트 및 제공 정보와 관련하여 뉴스레터 발송을 실시,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 소식을 요약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회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림 3-14] 자유이용 사이트 메인페이지(RSS 서비스)



[그림 3-15] 자유이용 사이트 뉴스레터



3)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이트 기능 개선 지원

모바일 자유이용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소개 및 정보이용안내, 이벤트, 공지사항, 기증

자유이용 사이트는 2008년부터 CCL 지원을 위하여 CCR(Creative Commons Repository)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차 프로토타입 구축에 이어 2009년에는 CCR사이트가 모든 CCL부착 저작물의 종합 정보제공 사이트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토타입의 확대구축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CCK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외 CCL 활동 및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등록, 검색,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CCR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확대·구축하였으며, 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의 표준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탑재하였다.

[그림 3-16] CCR 프로토타입 메인 페이지



[그림 3-17] CCR 프로토타입 검색 화면



2009년부터 공공콘텐츠의 민간 활용 촉진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유저작물 중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만료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활용을 돕고자 '자유이용 사이트'를 구축·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에 구축된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앞으로는 저작권 만료 저작물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이용 사이트를 점차 확대 발전 시켜 공유저작물 전체로 그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정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향후 저작권 만료 예정 저작물·저작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CCL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작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와 이용자들의 편리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이용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이 저작물의 창작, 공유저작물의 활용 및 2차적 창작 등에 이르는 저작물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창작 역량을 제고하고 저작권 공유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오픈소스SW란, 소스코드⁷³⁾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⁷⁴⁾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Python·PHP·Perl 언어, Eclipse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SW들이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PC와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시장에 안드로이드, 심비안 등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 플랫폼 바람이 불고 있다.

[표 3-14] OSI의 오픈소스SW 정의

번 호	정의 내용
1	Free Redistribution : 자유로운 재배포
2	Source Code Open : 소스코드 공개
3	Derived Works : 개작(파생저작물)의 허용

73) Source Code, 원시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컴파일 과정을 거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SW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스코드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74) GNU's Not UNIX, Richard Stallman이 비공개 운영체제인 유닉스를 대체할 완전한 공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4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 저작자의 소스코드 원형유지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7	Distribution of License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한 권리는 해당 SW를 재배포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 특정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없음
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 다른 SW를 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음
10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 특정 기술이나 특정 인터페이스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도록 할 수 없음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최신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 비용 절감, 기술 중속 방지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자국 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많은 SW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임베디드 SW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시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하다.

특히 국내 중소 SW개발업체의 경우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상용화된 검증서비스를 외면하고 있어 잠재적 SW저작권 침해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여부를 쉽게 검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제공 및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오픈소스SW 관리체계 및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국내 중소 SW개발 업체들로 하여금 향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오픈소스SW의 안정적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의 주목적이다. 더불어 올바른 오픈소스SW의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오픈소스SW 관리체계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은 크게 ①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시스템(CodeEye) 구축, ③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이하 OLIS라 한다) 기능 강화, ④ 검사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및 서버장비 도입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각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5] 오픈소스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오픈소스SW 관리체계 및 활용기반 구축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오픈소스SW 관련 정보 등 소스코드 수집 및 분류 • 소스코드 파일 단위의 700만건 이상 수집 • 수집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 토픽, 개발언어, 운영체제 등으로 분류 • 오픈소스SW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등 라이선스 정보를 메타정보로 변환 • 오픈소스SW 비교 및 라이선스 검사를 위한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데이터(원시코드)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시스템 구축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한 비교·분석 엔진 개발 • 단계별 검사 프로세스 모델 수립 및 구현 • 검사 입력 및 결과 데이터 처리(가공, 전송 등)를 위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OLIS 기능 강화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기반의 통합 환경 구축 • 각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조건 및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기반 강화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오픈소스SW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오픈소스 SW 관리 체계 및 활용 기반 구축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한글화 정비 및 신규 라이선스 조사·분석	2009년 12월 까지 추가된 OSI 승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한글화 및 사용 방법·조건 분석(현재 74종 라이선스 한글화 완료) 2008년 기준 수행한 72종 라이선스 주요내용을 일반 사용자가 보다 이해 하기 쉽게 용어 등 정비
	오픈소스SW 자동 수집기 및 검색엔진 솔루션 도입	- 오픈소스SW 관련 정보 등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동 웹크롤러(web crawler) 도입 및 적용 - 오픈소스SW 프로젝트 및 소스코드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및 적용
	오픈소스SW 색인 서버 도입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색인 서버, 크롤러 서버, 비교·분석·검사 서버 등 HW 도입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인덱싱을 위한 색인 서버 1종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을 위한 크롤러 서버 1종 - 오픈소스SW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비교·분석을 위한 검사 서버 1종

2009년 12월 기준으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데이터베이스 건수는 파일 단위 860만건이며, OLIS 기능 고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픈소스SW 비교·분석·검사 시스템인 코드아이(CodeEye)⁷⁵⁾ 개발을 완료하여 정식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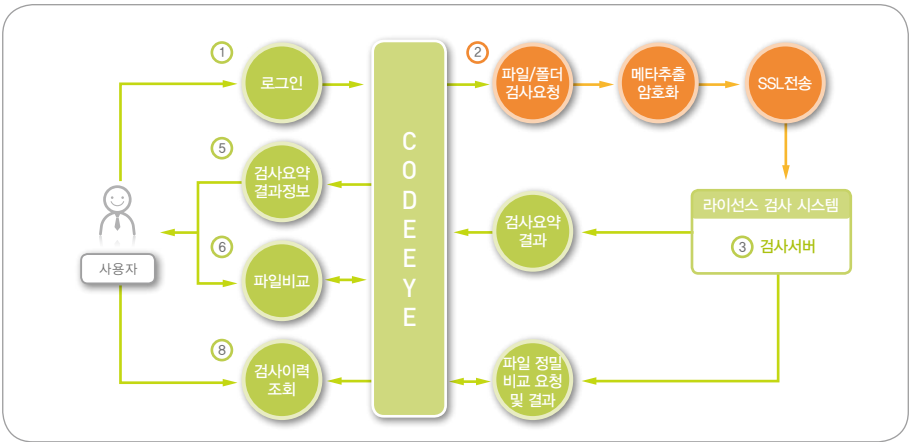
코드아이(CodeEye)는 웹 버전과 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며, 주요 특징 및 검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7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수행을 위한 웹·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사용자SW 및 서버 시스템

[표 3-16] 웹 버전과 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클라이언트 버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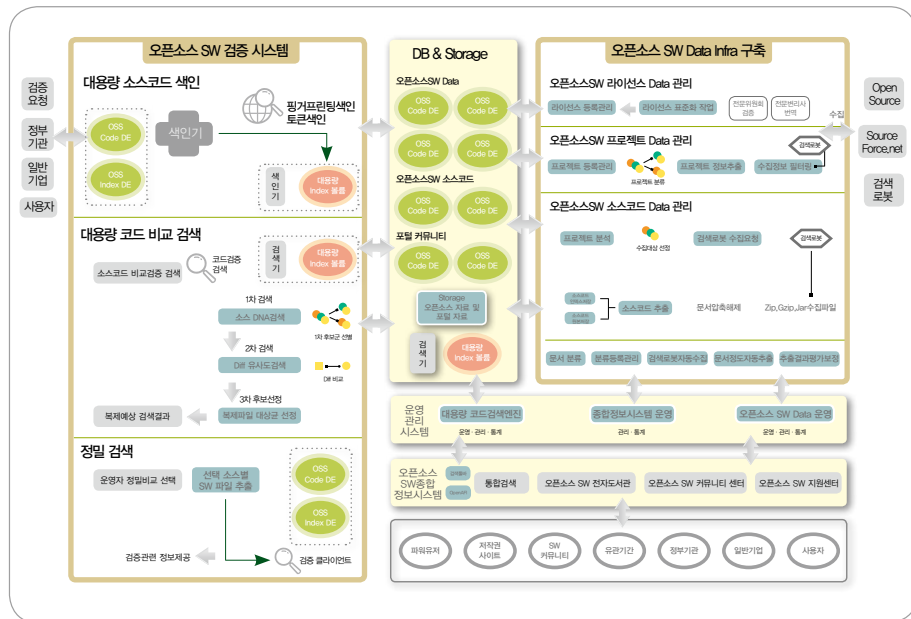
구분		웹 버전	클라이언트 버전
검사 요청	단일 언어	O	O
	다중 언어	X	O
	유사율 지정	O	O
	파일	O(10)	O
	폴더	X	O
	검사 대상 지정	X	O
	암호화	X	O
진행 상태	진행상태 모니터링	X	O
	검사 취소	X	O
검사 결과	검사 요약 결과	O	O
	파일 비교(7일제한)	O	O
	보고서	O	O
	보고서 - 인쇄	O	O
	보고서 - Export	X	O(.pdf)

[그림 3-18] 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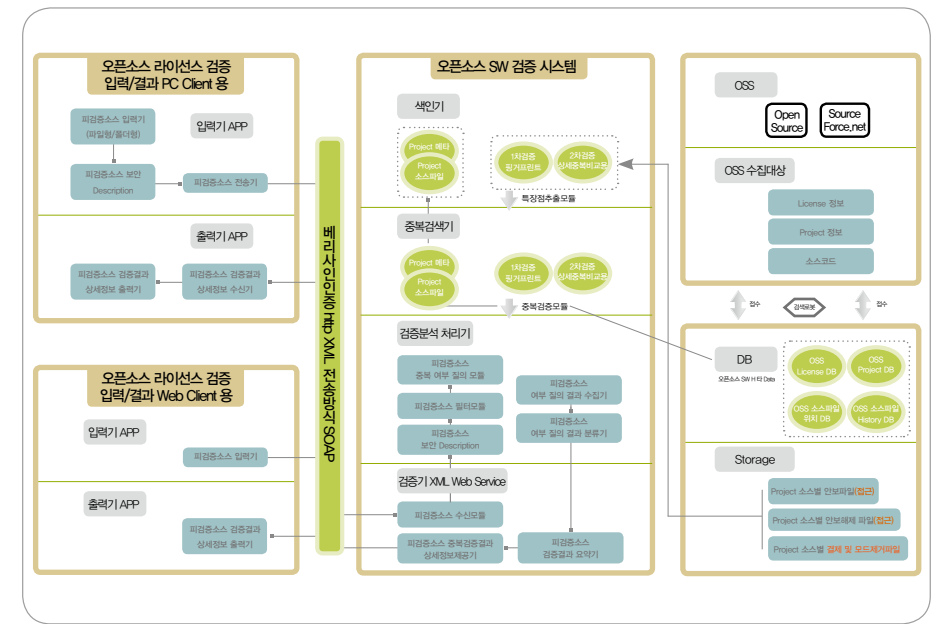


또한 코드아이(CodeEye)의 전체 시스템 개념도 및 비교·분석·검사 시스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9] 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그림 3-20] 코드아이(CodeEye) 비교·분석·검사 시스템 개념도



이와 같은 코드아이(CodeEye) 사업을 통해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자사의 SW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유형별 데이터베이스구축의 건을 지속적으로 확대·축적하여 국내 유일의 오픈소스SW 데이터웨어하우징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다.

더불어 알기 쉬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분석 템플릿 및 각종 오픈소스SW 데이터베이스제공 등을 통해 중소 SW개발업체의 기술력 강화 및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올바른 오픈소스SW의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배포시 창작자(개발자)가 정의해 놓은 사

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라이선스로는 GPL,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러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복제·수정·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자들은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SW’ 쪽으로 간주한다. 즉 ‘오픈소스SW는 공짜이다’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국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전담 조직을 갖추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담자를 배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분쟁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컨퍼런스와 논문 공모전,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 공모전 등을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일반사용자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건전한 오픈소스SW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크게 ① Free Opensource Software License Insight Conference 개최, 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 ③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④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었다.

국제 컨퍼런스의 경우, 2009년 4월 16일에 ‘Free Opensource Software License Insight Conference’라는 주제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IT기

업인 및 SW개발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오픈소스SW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⁷⁶⁾와 OSI(Open Source Initiative)⁷⁷⁾ 소속 전문가를 비롯한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략가를 초빙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거버넌스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논의하였다.

[그림 3-21] 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내외 귀빈



[그림 3-22] 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전경



[표 3-17] 오픈소스SW 컨퍼런스 세션별 핵심 내용

구분	주제	핵심 내용
제1세션	A Common-Sense Introduction to the GNU Licenses	- 자유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인 GPL를 비롯하여, LGPL, 및 AGPL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배포자간의 사용허락 범위와 준수 사항을 상세히 발표 - 또한, 프리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 라이선스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소개

76)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자유SW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배포·개작의 자유와 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사용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본부는 미국 보스턴에 있다.

77)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OSI에서는 공개 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OSD, Open Source Definition)해 놓고 이 정의된 규정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이용촉진의 일을 한다. OSI는 오픈소스SW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로서 실질적인 본부를 두고 있지는 않다.

제2세션	Beyond 'Using' Open source	• 오픈소스SW 거버넌스와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조직적, 기술적 이슈들에 대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오픈소스SW의 수집과 사용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발표 • 또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리 및 비즈니스 정책간의 장·단점을 분석·발표
제3세션	Successful Business Models in Open Source	• 오픈소스SW는 '협력'과 '코드' 및 '커뮤니티' 라는 강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강점들이 어떻게 기업의 이윤 창출과 연결되어 지는가에 대하여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용에 참조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를 위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형'을 주제로 발표 • 또한 Vyatta등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하드웨어와 오픈소스SW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
제4세션	Situation of Free Open Source Software Licence Copyright Dispute and Reducing Plan	• 저작권법에 근거한 오픈소스SW의 복제금지조항 등 법률적 보호 방안과 라이선스 준수에 따른 예외사항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률적 해석 •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업의 피해와 분쟁 등을 사례중심으로 발표
제5세션	한국에서의 FOSS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사례	• 한국에서의 FOSS 프로젝트와 FOSS의 활용현황 및 FOSS 라이선스와 관련한 소송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 • 또한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공동개발 및 공유 차원의 라이선스 준수 노력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단으로써의 FOSS 활용의 필요성을 발표
제6세션	프리오픈소스SW 공정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간·배포하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등 SW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소개 •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리오픈소스SW 데이터베이스 및 라이선스 검사 시스템을 구축·서비스 하는 등 프리오픈소스SW의 공정 이용 활성화 정책 발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거버넌스 및 법제도 개선 관련 논문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 관련 활용사례 수기의 두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일반 기업 및 대학(원), 연구기관, 개인 등 다양한 응모자들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수상작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총 8편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향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 및 관련 교육 시 참고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그 밖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및 컨설팅,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교육(강좌)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 SW개발자 및 사용자의 무지로 인한 불법적인 오픈소스SW의 사용 방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더욱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사전등록이 조기 마감되는 등, 국내 SW개발자들에게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각 주제별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도와 관련 질문이 쇄도하는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부 활동과 정책에 대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오픈소스SW에 대한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및 자유로운 오픈소스SW 이용 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등 국내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자유로운 활용기반 마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오픈소스SW의 저변확대 및 공정이용환경 조성이 정착기에 들어선 해외 선진국의 오픈소스SW 활성화 전략 관련 서비스 모델을 조사·분석 하였다.

이는 국내외 오픈소스SW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질의 정보공유 확대 및 새로운 정보의 국내 진입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효과적인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내외 오픈소스SW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최신의 오픈소스SW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4월 17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와의 MOU 체결을 통해 건전한 오픈소스SW 사용 환경 조성 및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오픈소스SW 저작권분쟁 방지 및 오픈

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의식 조성을 위한 각종 업무 및 정보 교류를 비롯하여 OLIS 및 오픈소스SW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6월 16일에는 글로벌 오픈소스SW 커뮤니티 네트워크 채널인 SourceForge, Net을 운영하고 있는 소스포지 본사를 방문하여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웨어하우스 및 라이선스 검사 시스템 구축 등 오픈소스SW 관련 사업 소개를 통해 SourceForge, Net측의 많은 관심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오픈소스SW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연계 등 양 기관의 공조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내 오픈소스SW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구성·운영을 통해 오픈소스SW 분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3-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OSI MOU 체결식



이러한 오픈소스SW사업을 통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함으로써 최신의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오픈소스SW 활용 전략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와의 협력 및 상호교류를 통해, 건전한 오픈소스 SW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발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OSI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OSI 홈페이지와 OLIS 사이트 간의 연계로 OLIS의 국내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선진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 구축의 기반을 닦았다.

한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워킹그룹 보고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자료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에 대하여도 저작권 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존속기간(보호기간) 내에는 어느 때나 등록이 가능하며,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고 보호되나, 각국에서는 법적 효과가 상이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등록의 효력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미치므로 필요한 경우 각 국가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제도 운영 :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의 발생에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는 상관이 없으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 특히 저작물의 대량 이용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이 존재하며 그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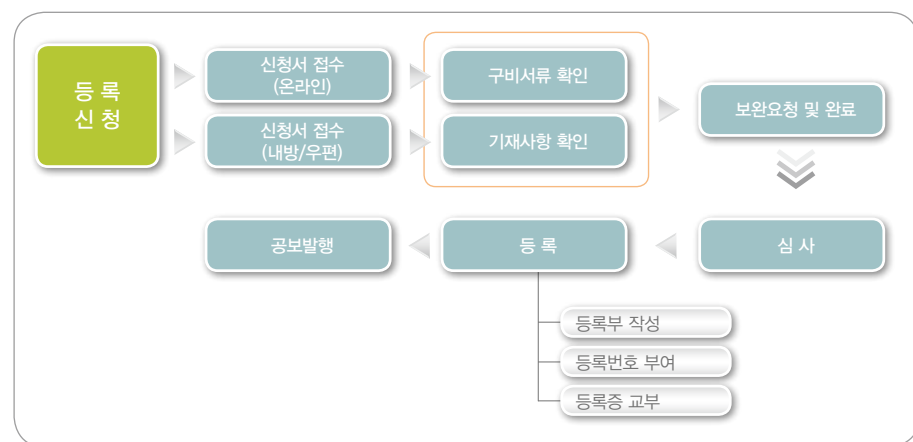
그리고 등록을 통해 추정력을 얻어 사후 입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로서 정부 조달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등록이 되어야 하는 등 등록의 필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 등록업무의 절차

1) 등록업무 처리절차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전까지 저작권 등록은 크게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구분되어 각각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었고, 아직 등록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등록절차는 ① 등록상담 ② 신청서 작성 ③ 등록신청 및 수수료납부(지방세 대납 실시) ④ 심사 ⑤ 등록부 등재 ⑥ 등록증 교부 ⑦ 공보 발행 ⑧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3-24]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절차



가. 신청서접수 및 수수료 수납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저작물단위별로 신청하였는지, 해당서류(공통 첨부서류와 개별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접수를 하고 수수료를 수납한다.

나. 등록심사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신청에 대한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다. 저작물별로 지정된 등록전문관은 등록 신청된 신청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비 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저작권 등록은 형식심사로서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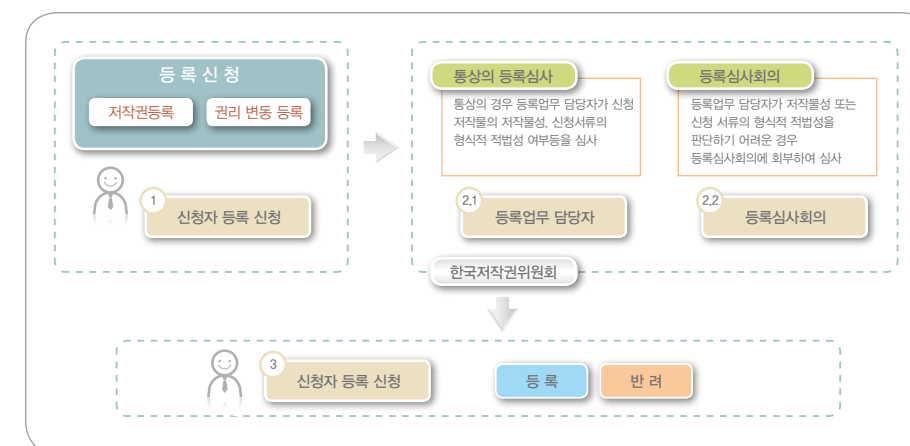
다. 등록부 작성 및 등재

등록심사과정을 거쳐 등록부가 작성되며, 등록부에는 저작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물의 내용 등 등록저작물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에 등록증이 발송된다.

라. 등록공보 게시 등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등록 사실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게시·공개되며,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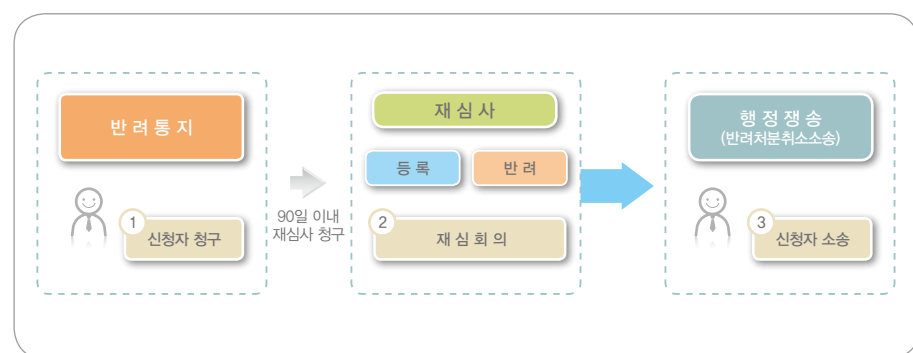
[그림 3-25] 저작권 등록심사 처리절차



2) 반려 및 재심 절차

등록심사 시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사의견을 도출한 후 등록가부를 결정한다. 등록심사회의에서 등록반려가 결정 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90일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해당 저작물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심회의를 통해 저작권 등록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림 3-26] 저작권 등록 반려 및 재심 절차



3)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저작권 등록은 임의 등록제로 운용됨에 따라 저작물인지 여부, 등록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췄는지 여부 등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등록된 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록의 공식적 효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법 제136조 제2항). 다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허위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 등록의 효과

1) 추정력 발생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로 추정되며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 음반의 고정, 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일,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등록하면 각 등록된 연월일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 등이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저작자가 침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란 법률행위의 유효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권리변동 사실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권리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요건의 등록을 통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작권재산권의 2중 양도의 경우 양도등록을 먼저 마친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여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프로그램배타적발생권의 권리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과 같은 일반승계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4조).

3)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다만,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을 표시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자 표시에 따라 보호기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업무상(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창작 후 50년이나 저작권 등록을 통해 공표 연월일을 등록하게 되면 공표 시 기준으로 50년간 보호되므로 사실상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4)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하면 관세청 고시(2010-33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로써 캐릭터나 도안이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복제품,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국내유입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3) 온라인등록 '원스톱 서비스'

1) 온라인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이 2003년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http://www.sors.or.kr>)과 2004년 일반저작물(<http://www.cros.or.kr>)로 각각 오픈되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저작권 등록업무를 온라인화한 것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등의 업무는 물론 '나의 신청·등록현황' 등 메뉴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3만여 건에

달하는 저작권 등록정보도 검색·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3-27] 일반저작물 등록시스템



<http://www.cros.or.kr>

[그림 3-2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온라인등록시스템



<http://www.sors.or.kr>

2) 통합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 추진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출범과 저작권 등록 업무의 통합

2009년 7월 23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효율적인 저작권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서비스 향상과 저작권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원서비스별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별도 구성하고, 민원업무별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민원 업무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 국가 저작권 정보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나. 등록 저작물 관리의 효율화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저작권 등록시스템의 통합구축과 함께 등록 복제물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제물 디지털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등록 저작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은 2008년 프로그램저작물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일반저작물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 시 제출되는 다양한 매체의 저작물에 대한 영구보관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향후 저작권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비교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복제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복제물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으며 화재 시 복제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스프링클러 방식의 소화설비를 가스식으로 변경하였다.

(4) 저작권 등록업무 개선

1) 등록 수수료 체계 정비

등록 민원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수수료 정비작업을 시행하였다.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로써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등록 신청,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면제하였다.

또한, 저작권 등록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권리변동 등록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의 10,000원(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이 감액되며, 등록사항 변경 등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의 1,000원이 감액 되었다.

[표 3-18] 저작권 등록 변경된 수수료 체계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및 저작물 구분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20% 포함)	납부 총액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 등록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오프라인	일반 저작물	30,0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0,000원)	1,800원 (상속3,600원)	31,8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1,800원)
		컴퓨터 프로그램	60,0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0,000원)	1,800원 (상속3,600원)	61,8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1,800원)
	온라인	일반저작물	20,000원	1,800원 (상속3,600원)	21,800원
		컴퓨터 프로그램	50,000원	1,800원 (상속3,600원)	51,800원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출판권의 권리 변동등록 (양도·질권·처분제한 포함) • 출판권 설정 등록	오프라인	일반 저작물	40,0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5,000원)	27,600원	67,6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42,600원)
		컴퓨터 프로그램	70,0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15,000원)	13,800원	83,800원 (11건이상 등록시 11번째부터 28,800원)
	온라인	일반저작물	30,000원	27,600원	57,600원
		컴퓨터 프로그램	60,000원	13,800원	73,800원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오프라인		3,000원	1,800원	4,800원
	온라인		2,000원	1,800원	3,800원
• 등록부 열람, 사본교부, 신청	오프라인		1,000원	없음	1,000원

2) 저작권 등록 심사기준 수립 및 등록업무 처리 개선방안 연구

국내외 주요 등록기관의 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등록 업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저작권 등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등록 심사기준 수립 및 등록업무처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2009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록의 심사기준 및 등록기관의 심사권 범위 정립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방안, 등록실무 개선 방안, 조직 인력 확대 방안,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의 4개 부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 저작물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등록제도개선은 물론 등록심사 지침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기관통합에 따른 저작권 등록업무의 일원화에 따라 저작권 등록제도 안내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관련기관 등 총 328곳에 배포하였다. 또한, SW다량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바뀐 저작권 등록제도에 대한 안내와 다량 등록 시 업무편의를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등록을 활성화하여 등록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4) 등록제도 악용사례의 방지와 온라인상의 거래 안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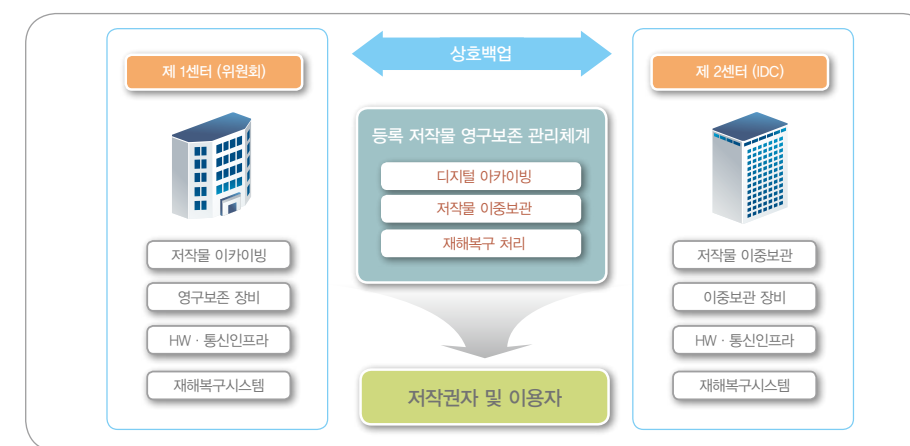
저작권 등록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로 등록한 자가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법제도, 실무운용 및 조직인력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한 등록심사 절차 개선과 직권말소제도의 도입, 등록담당인력 증원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저작물 특성별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프로그램복제물의 물리적 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의 신설, 등록 복제물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검색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다.

5) 등록 저작물 보존 및 관리 강화

등록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즉, 자연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거의 100여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업무가 시작된 1987년 이래 총 26만여 건이 등록되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복제물의 대부분이 CD·DVD매체로 제출되고 있으나, 저작물에 따라 종이(어문저작물), VHS-Tape(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어, 장기적 보관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등록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실시되었다.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은 등록 저작물의 아카이빙(오프라인 저장매체(복제물 등)의 손상 등 HW·SW의 기술적 퇴화 시에도 원형 유지를 통한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일련의 모든 행위)과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3-29]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체계



한편, 재난·재해, 도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저작물을 포함한 등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재해복구체계(이중보관체계)도 함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75,600여건의 등록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이 완

료되었으며, 기관 통합에 따라 일반저작물 분야로 아카이빙이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19] 등록 저작물 아카이빙 구축계획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저작물	프로그램(118,000건)			미술·사진 (36,000건)	음악·어문 (36,000건)	영상·어문 (36,000건)	기타 (15,000건)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저작물의 안정적 보존 및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아카이빙된 등록 저작물은 향후 저작물의 비교검색시스템 구축시의 기본 데이터로서 저작권 중복등록과 허위등록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활용된다.

(5) 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및 저작권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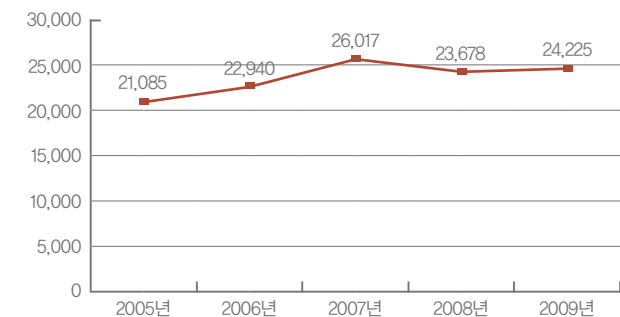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이 컴퓨터를 매개로 함으로서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이루어져 저작권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저작권 등록건수(2009.12.31 기준)는 총 24,225건으로 저작물별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년 대비 일반저작물의 등록은 33.7%,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은 5.9% 증가하였고, 향후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성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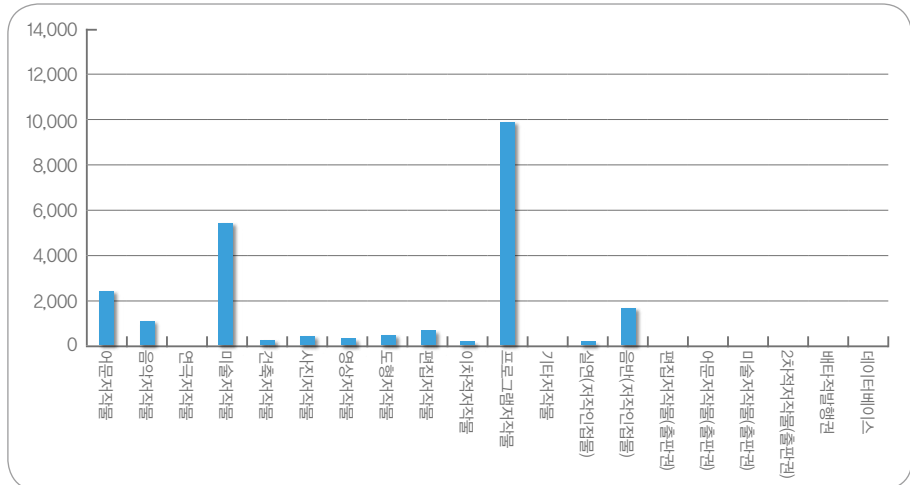
[표 3-20] 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및 저작권 등록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
일반저작물 등록	9,245건	12,369건	33.7%
프로그램저작물 등록	11,192건	11,856건	5.9%

[그림 3-30] 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그림 3-31] 2009년 저작권 등록 현황



[표 3-2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현황

종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저작물	어문저작물	1,521	1,792	1,890	1,875	2,309
	음악저작물	313	362	659	744	987
	연극저작물	4	14	3	16	27
	미술저작물	4,816	3,779	3,599	4,278	5,075
	건축저작물	145	132	210	99	117
	사진저작물	1,048	3,877	6,350	2,993	378
	영상저작물	732	723	660	247	238

저작물	도형저작물	265	440	564	506	400
	편집저작물	696	796	1,101	1,414	1,079
	이차적저작물	795	180	252	197	277
	프로그램저작물	10,528	10,686	10,623	11,190	11,855
	기타저작물					
저작인접물	실연	2	61	24	4	93
	음반	184	68	36	73	1,366
출판권	편집저작물		2	4		3
	어문저작물	5	4	2	3	
	미술저작물					
	이차적저작물			1	2	2
배타적발행권		4	13	1	2	1
데이터베이스		27	11	38	35	18
총 계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5. 법정허락

(1)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의 배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비자발적 이용허락이 허용될 때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장 제5절에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강제허락의 형태로 크게 3가지의 법정허락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제52조)의 3가지이다.

이 규정들은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89조)이나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 제97조)의 이용에 준용되기도 한다.

1) 제도 소개

법정허락 제도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당연히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특별한 이용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2) 법정허락의 대상

법정허락의 대상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 등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등의 경우까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3) 보상금의 지급

이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권리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의 공탁은 저작재산권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4) 법정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정허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1조) 셋째, 판매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2조) 넷째,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인접물인 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저작권법』 제89조, 제97조)일 때이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정허락을 통한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

[표 3-22]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근거	내용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	제50조 내지 제52조 준용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	제50 및 제51조 준용

(2) 법정허락의 절차

법정허락의 승인과 보상금의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이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1)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저작권법』 제50조)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의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열거하고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때 가능하다.

나.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조회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경우 가능하다.

〈공고의 내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광고자 및 연락처

2) 이용승인 신청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 ·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 ·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승인 신청에 따른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승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나 자신의 성명, 명칭(이하 성명 등 이라 한다) 또는 예명 · 아호 · 약칭 등(이하 이명 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승인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법정허락의 승인과 보상금의 결정을 제5분과위원회의 담당업무로 지정하고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있다. 법정허락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5) 승인의 통지 또는 기각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①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②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③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④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⑤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①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이가 성립된 경우, ③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④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6) 보상금의 공탁

「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내용〉

「저작권법」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공탁금액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공탁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표 3-23] 법정허락의 절차(제50조 기준)

내용		주체	비고
신청전	• 상당한 노력 해당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0일간 공고 저작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증거	신청인	
	• 보상금 산정 시장 가격을 반영	신청인	

진행중	•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신청인	
	•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청 내용 관보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의뢰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청 내용 관보 게시 행전안전부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 내용 관보 게시 15일간 공고	행전안전부	
	• 분과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	
	• 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승인후	• 승인의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	
	• 승인 내용 게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개월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 보상금의 공탁	신청인	
	• 보상금 공탁 사실 공고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인	
	• 보상금 공탁 사실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3) 법정허락 실적

법정허락 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신청되어 처리된 법정허락은 모두 26건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정허락 건수는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4] 법정허락 현황				
신청연도	신청저작물(제호 및 종류, 저작자명)			승인여부
1998	The Mechanics of Human Movement	어문	Bernard J. Hopper	승인
1999	기을 등 작사/작곡 105편	음악	백남석 외 다수	승인
2001	차레차레 등(작사/작곡 64편)	음악	김신자 외 43명	승인

2001	그네 등(작사/작곡 9편)	음악	박연숙 외 14명	승인
2001	함께 지켜요 등(시/산문 11편)	어문	류지영 외 다수	승인
2001	시집가는 날, 종각	영상	동아영화사(이병일), 팔월프로덕션(청남)	승인
2002	어디만큼 왔나(도서)	어문	우효종	승인
2003	벌레는 기어가요 등 (동요/동시/동화 44편)	음악/ 어문/ 미술	최경애 외 다수	승인
2004	한글500년기념우표 등(7점)	미술	오주환 외 4명	승인
2004	Teorie e storia dell'architettura	어문	Manfredo Tafuri	승인
2004	소파 방정환 선생 관련 사진(9점)	사진	불명	승인
2005	검은머리	영상	김진모	승인
2007	최후의 증인, 피막	영상	김경애	승인
2008	다찌마와리	영상	불명	승인
2008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영상	김경애	승인
2008	자유결혼, 매춘	영상	동아영화사(이병일), 춘우영화사(한용수)	승인
2008	여사장	영상	효성영화사(엄문근)	승인
2008	최후의 증인	영상	김경애	승인
2008	날개	영상	모닝컴퍼니(이선재)	승인
2009	초등학교 4/5/6학년 국어과 산문,운문	어문	이봉 외 6명	승인
2009	최후의 증인	영상	김경애	승인
2009	내가 말했잖아	음악	이연희	승인
2009	뒤뚱뒤뚱 아기오리	음악	불명	승인
2009	검은 머리	영상	김진모	승인
2009	화분	영상	김형근	승인
2009	여로(작사)	음악	이남섭	승인

2009년에 신청된 법정허락 건수는 모두 7건으로 이들은 심사결과 모두 이용이 승인되었다. 이는 저작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이 증대되어 저작물의 이용 시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법정허락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7건은 모두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이다. 그중 각종 영화제의 회고전에서 상영이 예정된 고전 영화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신청대상은 주로 어문·영상·음악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다.

[표 3-25] 2009년 법정허락 세부 내용

신청인	신청저작물(제호 및 종류, 저작자명)			이용방법	승인여부
한원진 (레이시시스템)	초등학교 4/5/6학년 국어과 산문, 운문	어문	이봉 외 6명	에듀넷서비스	승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최후의 증인	영상	김경애	상영	승인
김태민	내가 말했잖아	음악	이연희	음반제작	승인
웅진싱크빅	뒤뚱뒤뚱 아기오리	음악	불명	출판	승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검은 머리	영상	김진모	상영	승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화분	영상	김형근	상영	승인
조성형	여로(작사)	음악	이남섭	삽입이용	승인

(4) 법정허락의 활성화 방안

1)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특히 신청인이 독일에 거주하는 ‘여로’의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3-32] 화상 통화를 통한 신청인의 의견 청취 장면



2)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법정허락의 처리기간을 보면 제도의 특성상 신청일로부터 최소 3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특정 저작물에 편중되는 등 아직까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제고된 만큼 법정허락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자체의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현황

국내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⁷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가 1988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신탁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 집중관리단체들이 2000년 이후 신탁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해오고 있다.

현재 각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활동 중에 있으며 음악분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상분야는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방송분야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어문분야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공공콘텐츠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마지막으로 뉴스 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언론재단 등 12개 단체가 저작권을 관리 중이다.

[표 3-26]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영역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상 음반 콘텐츠 저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 저작물 방송권

78)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권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권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의미한다.

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 전송권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콘텐츠 복제, 전송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등의 공연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공공 및 언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뉴스 저작권

2. 활동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복제권·대여권 등을 관리하며,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음악문화 발전을 꾀하는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이다.

지난 1964년 설립 당시, 총 56명의 저작자로 시작된 KOMCA는 2000년도까지 36년간 가입한 저작인 수가 약 3,900여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8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 2008년도에는 약 9,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11월에 10,000번째 저작자가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KOMCA는 저작권료 징수에 있어서, 지난 1990년대 초까지 100억대에 이르던 저작권료가 조만간 1,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9년도 KOMCA 징수액은 870여억원으로 징수목표액을 8.1% 초과달성하였다.

[표 3-27] 최근 5년간 KOMC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연도	정회원	준회원	신탁자	출판사	총계	비고
2005	598	5,627	.	78	6,303	6,000번째 회원가입
2006	630	6,306	.	90	7,026	.
2007	704	7,254	.	104	8,062	.
2008	699	8,045	.	111	8,855	.
2009	767	8,294	1,027	114	10,202	10,000번째 회원가입

2009년 KOMCA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는 유흥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분배규정 개정 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1992년 이후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지상파에서의 음악 방송사용료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표 3-28] KOMCA 2009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관	항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음악 사용료 수입	방송사용료	16,251,000	17,201,406	106%
	전송사용료	19,560,000	23,691,569	121%
	웹캐스팅사용료	1,100,000	926,003	84%
	광고사용료	718,000	831,271	116%
	녹음사용료	11,520,000	11,301,610	98%
	영화사용료	206,000	124,775,500	61%
	출판사용료	929,000	1,032,971	111%
	공연사용료	28,892,000	29,091,217	101%
	외국입금사용료	1,350,000	2,858,317	212%
합 계		80,526,000	87,059,142	108%

이외에도 18년 동안 사용해 왔던 KOMCA 심볼마크를 교체하고, KOMCA 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음악저작권 무료순회특강의 범위도 초·중·고교생과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 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3개 단체장(KOMCA,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을 공동대표로 하는 ‘저작권선진화포럼’을 출범시켜, 국내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와 제도에 대하여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공연권 확대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KOMCA는 또 관계 당국의 단속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불법 음악의 유통에 대해서도 음악 저작자들을 단속에 직접 참여시켜, 저작자들의 권익보호와 불법 침해음반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 예로 저작권보호센터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와 국도휴게소, 지역 축제 행사장 등에서 침해조사활동을 펼쳐, 2009년 한 해만 총 340개 회사에서 유통한 불법 침해음반을 적발, 이들 업체로부터 약 4억 5천6백여 만원을 징수하였다.

지속적인 단속 결과, 음반시장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해 주고 있는 음반 승인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반 도·소매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침해조사를 실시, 음반증지의 부정사용 등의 침해유형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고가의 음반에 비교적 저가인 민요증지를 부착 판매한 음반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적용함으로써 음반업계에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네이버(NHN)와 음악콘텐츠 산업발전과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문화 환경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음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중국 길림성 지역에 서버를 두고 우리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서비스 해 온 중국 사이트 ‘오투스카이(http://www.o2sky.com)’와 ‘아이엠디제이(http://www.imdj.net)’를 적발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와의 공조를 통해 2009년 10월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긴급 체포(형사처벌) 및 사이트 폐쇄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림 3-33] KOMCA 음악저작권 무료순회특강



[그림 3-34] KOMCA 저작권선진화포럼



(2)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KAPP라 한다)는 국내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신장과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위탁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음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1년 설립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저작권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APP는 2009년 현재 콘텐츠사업팀, 미디어사업팀, 법무팀, 정보화사업팀, 경영전략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0개 회원사가 가입, 국내 1,450개 음반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17만 1천여 곡의 저작권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표 3-29] KAPP 최근 4년간 연도별 신탁 및 보상회원 증가현황

연도	신탁회원	보상회원	합계	증가치
2006	650	178	828	
2007	886	235	1,121	293
2008	1,164	314	1,478	357

2009	1,461	381	1,842	364
------	-------	-----	-------	-----

* 준회원 개념이 2010년도 총회를 통해 정관에서 삭제 (과거에는 보상금 회원이 준회원이었음)

* 현재의 정회원 구성은 신탁회원 + 보상금 회원임

특히, 2009년도에는 ICN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UCI)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애플사의 iTunes스토어를 통하여 81개국에 국내 음원을 공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저작권접권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의 징수, 분배와 함께 2009년 9월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음악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 사업자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는 등 신탁 및 보상금을 통해 75억의 징수 성과를 이루었다.

KAPP는 과거 벅스와 소리바다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스트리밍과 P2P서비스의 유료화를 이끌어낸 이후 현재는 웹하드 사업자들의 불법 음원 공유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및 유료화 전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제고 및 합법 다운로드 유도를 위해 불법음원근절 캠페인인 ‘불끈운동’을 연 4회 개최하여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 및 ‘저작권 상생 협의체’를 개최하여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음원유통 국제표준화 기구인 DDEX(Digital Data Exchange)⁷⁹⁾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한 바 있다. DDEX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표준코드가 관리되지 않아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로 국내 음원을 수출할 경우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9) 소니뮤직, BMG뮤직, 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AOL, 애플, MS 등 디지털 음악콘텐츠사업자 등이 가입한 DDEX는 온라인상에서의 음원 유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발족되었다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FKMP라 한다)는 저작권법상 대중가수, 연주자, 국악인, 클래식 등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와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로 1988년 설립되었다. FKMP는 국내외 음악실연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국내외 음악문화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과 직업능력 개발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무를 통해 저작권관련 법령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수령 및 분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KMP에는 2009년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500여 명의 실연자가 개인 회원으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리모음회, 한국연예인예술협회 가수위원회와 연주위원회, 한국음악협회, 한국국악협회가 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표 3-30] FKMP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인원	270	305	412	766
회원 누적인원	1,751	2,056	2,468	3,234

실연자에게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를 실연자 개인이 일일이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TV·라디오·인터넷·각종 행사 등지에 자신의 노래나 연주곡이 쓰일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접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 역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받아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징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FKMP가 음악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곡은 40만여 곡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실연자권리찾기 캠페인 및 한국음악실

연자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음실련 소식’과 같은 회보집 발간, 세계저작권인접권단체협의회(SCAPR)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4)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

1962년 설립된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원들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작권 관리 업무를 시행함과 아울러, 방송 문예의 향상 발전 및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TRWA에는 2009년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송사 등을 통해 방영된 2,206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3-31] KTRW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인원		114	67	144
회원 누적인원	1,881	1,995	2,062	2,206

KTRWA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신탁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회원들이 저술한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의 국내 방송현장은 물론 해외 각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KTRWA의 저작권 관리사업 실적은 국내 유사 단체의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저작권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 학술단체와의 연계,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저작권 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능한 신인작가의 발굴을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을 운영하고 월간 ‘방송작가’를 발행하는 등 대외 홍보사업과 방송작가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작가상 수여제도, 회원 재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KOSA라 한다)는 시·소설·수필·논문·희곡 등의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진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1984년 설립되었다.

KOSA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어 저작권자의 계약상 피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KOSA에는 2009년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280명의 개인회원과 70개의 단체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 위탁 관리를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협회 조사요원을 서점 등 저작물 유통시장에 파견해 저작물 불법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협회 신탁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를 저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일체의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한다.

[표 3-32] KOS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연도	분류		증감치	합계
	개인	단체		
2005	1,867	60		1,927
2006	1,984	60	117	2,044
2007	2,044	62	62	2,106
2008	2,161	65	120	2,226
2009	2,340	70	184	2,410

이와 함께 매년 세미나와 포럼이 있으며, 2009년에는 ‘새로운 시대 저작권의 효율적 실현’의 주제로 개최되었다. 더불어 계간지인 ‘저작인’ 발행, 대언론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

1954년 설립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나리오 작가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3명이 근무, 1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3-33] KSW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증가인원	4	3	5	3	
회원 누적인원	121	124	129	132	준회원 15명 포함

[그림 3-35] KSWA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안성기 초청 토요특강



KSWA는 신인작가를 발굴·양성하고,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지 및 영화 관련 출판 사업 및 시나리오 문예의 진흥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7)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KRTRA라 한다)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 사무국, 신탁 관리팀, 보상금 사업팀, 운영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OSA, 대한출판문화협회, KOMCA, KTRWA, 한국학술단체연합회, KSWA가 회원단체로 있다.

[표 3-34] KRTR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858	44	1,858	44	2,193	66
한국방송작가협회	1,744	0	1,744	0	2,171	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24	0	129	0	132	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7,499	0	8,432	0	10,202	0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0	(54)	0	(54)	0	(54)
대한출판문화협회	0	(387)	0	(387)	0	(387)
협회 직접 신탁	57	341	141	338	319	368
계	11,282	385	12,304	382	15,017	434

KRTRA의 주요 사업으로는 복사·전송권 신탁관리, 저작권 대리중개 등 저작권의 집중 관리업무를 들 수 있으며 2003년에는 도서관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보상금 단체로 지정되어 교과용 도서 및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 등의 보상금을 징수 및 분배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정회원으로서 해외 복제권집중관리협회 등과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라 한다)는 1994년 창립된 한국영화 현역프로듀서

들의 협의체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6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001년에는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에 11월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FPA는 저작권 보호와 부가관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 활동, 캠페인 동영상 제작, 단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화산업안정화와 제작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온라인상 불법복제 관련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고 공동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2009 모니터링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제4회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s) 컨퍼런스, 영화 불법공유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영화제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한국영상산업협회(KMVIA)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KMVIA라 한다)는 영상(영화)저작권자의 권익보호 및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공연권, 2006년)하고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영상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상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올바른 영상문화의 육성과 문화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 인가되었다.

2009년 76개사(정회원 65개사, 특별회원 9개사)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획관리팀, 저작권관리팀, 저작권징수팀으로 구성되어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3-35] KMVI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증가회원	22개사	11개사	7개사	6개사
누적회원		33개사	40개사	46개사

KMVIA는 영상저작물 신탁관리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 저작권사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분쟁 조정, 영상배급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불법 영상물 일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단속과 감시업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건의 등의 활동을 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굿다운로더 캠페인과 같은 대국민 홍보 캠페인들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작물을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3-36] KMVIA 굿다운로더 캠페인



(10)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KBPA라 한다)는 방송실연자인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의 저작인접권을 보호·신장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 되었다. 2009년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표 3-36] KBPA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가입년도	2001~2006	2007	2008	2009
증가(명)		374	237	437
인원(명)	2,241	2,615	2,852	3,289

KBPA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로부터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에 회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KBS·MBC·SBS·EBS·OBS·SBS 등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9개 지역 민간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CATV방송사의 만화채널·온미디어·CJ미디어·MBC 드라마넷·CU미디어·중앙미디어큐채널 등 모두 31개 채널과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다.

이외에도 KBPA는 체계적인 권리확보 및 권리신장을 위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저작권제도와 방송콘텐츠의 권리보호 연구’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분기별로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있다.

[그림 3-37] KBPA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세미나



(11)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라 한다)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⁸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해 2009년 5월 출범하였다. 2009년 현재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8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1조에는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3-37] KOCCA 연도별 신탁 기관 증가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탁기관 증가	15	3	3	2	1
누적기관수	15	18	21	23	24

KOCCA는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방송영상콘텐츠·게임·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 산업 등의 콘텐츠 제작 및 창작활성화를 지원, 킬러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공공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위탁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술(CT) 개발 및 융합형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며, 견본시 개최 및 투자·금융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2009년 실시한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연구’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12) 한국언론재단(KPF)

1962년 설립된 한국언론재단(이하 KPF라 한다)⁸¹⁾에는 2009년 118명이 근무, 48개의 언론사가 회원으로 소속되어있다. KPF는 KPF 포럼, 언론토론회 등 사회적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외 뉴스메이커를 초청해 언론인과 심층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언론인 저술·기획취재·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표 3-38] KPF 연도별 신탁·회원 증가현황

연도	참여 매체수	증감
2006	35	
2007	45	10
2008	55	10
2009	59	4

이외에도 KPF는 언론인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언론인을 양성하고 언론인 재교육을 실시하며, 저널리즘의 신뢰회복과 질을 높이고, 미디어 산업과 경영, 미디어 정책, 미디어 수용자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업무를 지원, 대행하고 있다.

81) 2010년 2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동원, 신문발전위원회 3개 기구의 통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출범하였다.

부록

2009 저작권 통계

1. 심의
2. 조정
3. 감정
4. 상담
5. 저작권도서관
6. 침해
7. 해외 사무소
8. 교육
9. 홍보
10. 등록
11. 법정허락
12. 임치
13. 기타

2009 주요 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보호센터
3. 저작권 유관 학회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09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주요 기관 주소록

저작권법

2009 저작권 통계

1. 심의

(1) 심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심의	3	17	11	25	8	15	14	6	99
교과용도서 보상금	1	1	1	1	1	-	-	-	5
도서관보상금	1	1	1	1	1	-	-	-	5
계	5	19	13	27	10	15	14	6	109

(2) SW지적재산권 심의

1) 전체위원회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회)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회의개최 (서면결의)		2	2	3 (1)	2	3 (1)	4 (2)	2 (1)	4 (1)	4 (1)	7 (3)	8 (1)	4 (2)	8 (4)	10 (6)	8 (6)	3 (2)	74 (31)
안건	보고	6	4	3	3	4	3	6	9	7	7	8	4	9	13	7	4	97
	의결	5	3	6	2	5	10	8	21	13	13	15	9	12	22	14	4	162
	심의	—	—	—	—	—	—	—	—	—	—	—	1	—	1	—	—	2
	계	11	7	9	5	9	13	14	30	20	20	23	14	21	36	21	8	261

2) 분과위원회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회)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회의개최 (서면결의)	-	-	1	1	-	1 (1)	2	4 (2)	4 (2)	4 (2)	1	4	5 (1)	27 (23)	104 (104)	70 (70)	228 (205)
심의안건	-	-	1	1	-	1	6	11	6	4	1	4	9	378	11,927	10,951	23,300

* 2007년 4월 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운영으로 심의 안건 대폭 증가

3) 감정전문위원회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회의개최	2(2)	13(9)	21(11)	9(1)	20(1)	21	30(1)	28	20	164(25)
심의안건	2	22	21	9	20	21	31	32	23	181

* () : 서면결의

2. 조정

(1) 조정(구 저작권위원회)

1)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2009년 7월 22일 이전)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 ⁸²⁾
1988	5	5	—	—	—	—	—	10	50.0
1989	2	4	2	—	—	—	—	8	33.3
1990	8	6	1	—	—	—	—	15	57.1
1991	14	7	4	—	—	—	—	25	66.7
1992	10	12	7	—	—	—	—	29	45.5
1993	14	6	7	—	—	—	—	27	70.0
1994	12	32	2	—	—	—	—	46	27.3
1995	14	21	—	—	—	—	—	35	40.0
1996	9	8	1	—	—	—	—	18	52.9
1997	12	14	2	—	—	—	—	28	46.2
1998	24	19	8	—	—	—	—	51	55.8
1999	8	16	8	—	—	—	—	32	33.3
2000	10	12	5	—	—	—	—	27	45.5
2001	22	27	14	3	1	—	—	67	44.9
2002	49	43	16	—	—	1	—	109	53.3
2003	26	50	33	—	—	2	—	111	34.2
2004	34	31	8	—	—	—	—	73	52.3
2005	40	15	12	—	—	—	—	67	72.7
2006	27	21	43	—	—	—	—	91	56.3
2007	17	14	13	—	—	—	—	44	54.8
2008	23	19	7	—	—	—	—	49	54.8
2009	8	2	6	—	—	—	—	16	80.0
계	388	384	199	3	1	3	0	978	50.3

2)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009년 7월 22일 이전)

연도 분야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어문	6	5	6	13	19	18	30	12	10	6	13	8	7	19	32	29	14	31	24	13	9	4	328
음악	2	0	0	1	1	1	2	13	6	5	9	0	1	3	7	29	3	1	30	4	15	1	134
연극	0	1	0	1	0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	5
미술	0	1	0	4	2	6	6	7	1	11	20	14	9	26	23	4	33	12	5	8	5	5	202
건축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1	1	1	0	0	0	—	7
사진	0	1	7	1	4	2	6	1	1	2	4	3	1	10	20	41	13	13	16	8	10	4	168
영상	0	0	0	1	1	0	1	0	0	0	1	1	3	4	16	1	1	0	1	0	3	—	34
도형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2	0	—	7
편집	0	0	0	0	0	0	0	1	0	3	3	2	0	1	8	6	6	6	6	4	4	1	51
2차적 저작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3
저작 인접물	2	0	2	4	2	0	1	1	0	1	0	3	3	0	0	0	2	1	6	5	1	—	34
데이터 베이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2	—	5
계	10	8	15	25	29	27	46	35	18	28	51	32	27	67	109	111	73	67	91	44	49	16	978

(2)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1)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2009년 7월 23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각하	반려	기각	진행중	계	성립률 (%)
2009	11	6	3	—	—	—	13	33	—
계	11	6	3	—	—	—	13	33	—

82) 조정성립률=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100

2)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2009년 7월 23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 인접물	데이터 베이스	계
2009	6	2	1	2	-	7	-	-	10	-	1	4	-	33
계	6	2	1	2	-	7	-	-	10	-	1	4	-	33

(3) SW 지적재산권 분쟁해결(2009년 7월 22일 이전)

1) 분쟁조정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7	계
신청	4	-	4	5	13	13	16	18	20	24	27	33	34	13	6	230
처리	성립	2	-	2	1	4	3	3	4	7	3	13	11	7	6	68
	불성립	2	-	1	3	4	6	9	8	3	2	4	4	5	1	52
	취하	-	-	1	1	5	4	3	2	7	11	5	11	7	2	60
	기일전종결	-	-	-	-	-	-	1	4	3	8	5	7	15	3	49
회의 개최	6	-	7	9	16	17	17	24	17	11	32	42	24	15	9	246

* 처리건수 : 당해 년도 신청건수 기준

2) 알선(간이조정)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7	합 계
신청	-	2	5	11	13	13	17	7	3	71
처리	성립	-	1	4	5	8	4	10	-	32
	불성립	-	1	-	-	-	-	-	-	1
	취하	-	-	1	4	3	6	5	7	29
	기일전종결	-	-	-	2	1	1	1	-	5
	중단	-	-	-	-	1	2	1	-	4
진행중	-	-	-	-	-	-	-	-	-	
회의 개최	-	-	-	-	-	-	11	0	-	11

* 처리건수 : 당해 년도 신청건수 기준

3. 감정

(1) 연도별 감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2	계
신청	1	2	1	3	1	8	28	28	22	26	39	48	46	44	297
감정								9(1)	17(4)	14(5)	20(8)	33(18)	32(20)	23(11)	148(64)
자체공동	-	-	-	-	-	-	-	1	8	6	11	25	27	23	101

* () : 전년 이월 건수

(2) 최근 7년간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완성도(하자)	유사도	개발비산정	기타	계
2002	9	17	-	2	28
2003	5	23	-	-	28
2004	8	14	-	-	22
2005	4	21	-	1	26
2006	8	23	1	7	39
2007	16	29	1	2	48
2008	11	27	1	7	46
2009	13	23	1	7	44

(3) 2009년 월별 감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접수	완성도(하자)	8	1	2	1	1	4	-	-	-	3	1	-	21
	유사도	13	1	2	3	2	3	2	2	3	-	2	2	35
	개발비산정	1	-	-	-	-	-	-	1	-	-	-	-	2
	기타	3	1	1	-	-	2	2	1	-	1	-	-	11
	합계	25	3	5	4	3	6	5	3	3	4	3	2	69

* () : 전년 이월 건수

4. 상담

(1) 연도별 상담 건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1				83	42	38	52	10	17	37	22	10	311
1992	41	28	67	43	41	44	29	27	28	35	26	26	435
1993	37	74	60	39	53	50	72	59	52	54	34	46	630
1994	58	49	40	68	55	67	53	58	64	32	41	61	646
1995	47	40	44	53	65	79	53	43	47	42	55	46	614
1996	65	72	60	52	56	60	62	50	49	55	44	52	677
1997	38	37	41	59	70	78	93	117	95	102	98	85	913
1998	111	122	200	178	162	217	184	175	186	133	198	185	2,051
1999	197	144	249	277	252	293	270	232	228	207	221	214	2,784
2000	229	260	316	241	200	262	291	215	267	288	311	233	3,113
2001	229	297	442	412	371	362	379	401	375	216	276	281	4,041
2002	354	318	428	452	503	342	488	485	428	436	442	321	4,997
2003	418	364	579	495	437	573	388	397	410	420	399	320	5,200
2004	308	360	427	341	347	412	378	272	316	295	319	327	4,102
2005	510	302	532	536	682	920	711	599	666	648	704	631	7,441
2006	706	667	1,929	2,821	2,486	1,997	1,679	1,835	1,716	1,607	1,844	1,935	21,222 (14,548)
2007	3,555	4,483	5,077	4,975	3,087	4,373	3,825	2,676	2,627	7,985	5,158	5,048	52,869 (47,382)
2008	5,977	4,485	5,136	4,329	5,036	4,158	7,046	3,915	3,872	4,177	3,483	4,575	56,189 (50,931)
2009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61,387)
계	17,166	18,264	32,069	21,899	19,305	21,585	22,785	14,757	16,044	19,539	17,142	17,895	238,450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2) 2009년 상담 통계

1) 월별,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유형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온라인	자동상담	3,866	5,583	15,637	5,587	4,739	6,447	6,107	2,317	3,722	1,926	2,666	2,790	61,387
오프라인	전화상담	385	531	724	784	564	738	544	711	772	743	699	636	7,831
	내방상담	18	23	7	16	8	18	7	21	18	28	24	21	209
	서신상담	1	3	9	1	2	1	2	4	1	4	5	1	34
	메일상담	16	22	65	57	47	56	72	138	88	69	73	51	754
	소 계	420	579	805	858	621	813	625	874	879	844	801	709	8,828
상담총계		4,286	6,162	16,442	6,445	5,360	7,260	6,732	3,191	4,601	2,770	3,467	3,499	70,215
자동상담비율		90%	91%	95%	86%	88%	89%	92%	73%	81%	70%	77%	80	87%

2) 저작물 ·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저작물 또는 이용 유형		상담 건수	비율(%)
저작물 유형	어문저작물	12,898	18.4
	음악저작물	6,473	9.2
	연극저작물	2,198	3.1
	미술저작물	5,050	7.2
	건축저작물	2,017	2.9
	사진저작물	7,766	11.1
	도형저작물	1,648	2.3
	영상저작물	9,015	12.8
	프로그램저작물	1,594	2.3
	데이터베이스	867	1.2
	실연	3,057	4.4
	음반	3,137	4.5
	방송	2,530	3.6
	외국인저작물	1,615	2.3
	기타저작물	3,099	4.4
이용 유형	법정허락	1,162	1.7
	양도	1,226	1.7
	설정출판	2,264	3.2
	보호기간	1,038	1.5
	위탁관리	1,248	1.8
	기타 이용유형	313	0.4
전체 이용 건수		70,215	100

(3) SW 지적재산권 종합상담 실적

1) 최근 5년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조정 · 알선 · 중재관련	330	199	271	206	126
감정 관련	219	120	99	141	173
SW임치 관련	154	48	114	75	11
불법복제 관련	735	259	436	481	262
저작권 관련	713	658	640	794	419
기타(등록포함)	437	475	445	569	269
계	2,588	1,969	2,005	2,266	1,260

2) 2009년 월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분쟁 조정 · 알선 관련	전 화	10	13	26	19									68
	홈 페이지	-	1	-	2									3
	방 문	3	3	9	6									21
	계	13	17	35	27	0	0	0	0	0	0	0	0	92
감정 관련	전 화	18	26	22	21	23		10						120
	홈 페이지	-	1	-	-			-						1
	방 문	3	-	-	-			1						4
	계	21	27	22	21	23	0	11	0	0	0	0	0	125
S/W 임치 관련	전 화	3	0	1	-									4
	홈 페이지	1	-	1	2									4
	방 문	-	-	-	-									0
	계	4	0	2	2	0	0	0	0	0	0	0	0	8
불 법 복 제 관 련	전 화	30	44	59	47									180
	홈 페이지	2	4	6	2									14
	방 문	-	-	-	-									0
	계	32	48	65	49	0	0	0	0	0	0	0	0	194
저 작 권 관 련	전 화	38	48	60	87									233
	홈 페이지	4	5	9	8									26
	방 문	-	8	9	6									23
	계	42	61	78	101	0	0	0	0	0	0	0	0	282
기 타 등 록 포 함	전 화	36	30	46	55									167
	홈 페이지	7	6	10	10									33
	방 문	-	-	-	-									0
	계	43	36	56	65	0	0	0	0	0	0	0	0	200
합 계		155	189	258	265	23	0	11	0	0	0	0	0	901

5. 저작권도서관

(1) 연도별 자료입수 현황

(2009년 12월 31일 현재)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기증	50	125	346	360	328	310	342	431	123	92	118	113	115	150	91	43	31	15	97	235	295	237	329	4,376
구입	0	112	214	82	104	49	12	152	144	73	74	97	80	138	63	70	50	183	86	265	175	48	265	2,536
계	50	237	560	442	432	359	354	583	267	165	192	210	195	288	154	113	81	198	183	500	470	285	594	6,912

* 2009년 7월 22일 이전 통계는 저작권위원회만 포함

(2) 구독 정기간행물 현황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해외	계
기증	100	7	107
구입	32	35	67
계	132	42	174

* 총 보유 정기간행물 : 235종(폐간, 기증 중단된 것 등 포함)

6. 침해

(1)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없음	기 타	
2006	18,227	18,903	23	1,473	11,426	4,214	1,767
2007	25,027	25,079	26	1,637	15,195	6,713	1,508
2008	90,979	91,015	28	3,975	51,255	32,607	3,150
2009	89,410	89,206	67	3,956	27,150	58,033	—

(2) 저작권법위반 소년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타	
2006	611	611	0	31	389	153	40
2007	2,832	2,824	0	76	1,865	823	60
2008	23,470	23,444	0	207	12,541	10,190	506
2009	22,169	22,200	0	17	2,936	19,247	—

- * 접수 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 처리 인원은 해당 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 * 불기소 중 기타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각하
-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 시행된 개정소년법상 나이<19세미만> 미반영)

(3) 저작권법위반 사범 통계

순번	해당청	2005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2006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2007년 (기소유예 인원/총 인원)
1	서울중앙지검	72명 / 2,840명	1,141명 / 4,852명	408명 / 4,297명
2	서울동부지검	5명 / 657명	23명 / 490명	19명 / 812명
3	서울남부지검	16명 / 587명	173명 / 1,366명	504명 / 2,864명
4	서울북부지검	0명 / 455명	65명 / 508명	141명 / 719명
5	서울서부지검	8명 / 509명	44명 / 655명	132명 / 1,334명
6	서울의정부지검	18명 / 599명	29명 / 762명	230명 / 1,321명
7	인천지검	11명 / 983명	37명 / 1,112명	31명 / 1,729명
8	수원지검	24명 / 1,332명	172명 / 1,854명	111명 / 2,632명
9	춘천지검	1명 / 448명	14명 / 441명	22명 / 635명
10	청주지검	7명 / 371명	6명 / 426명	13명 / 452명
11	대전지검	12명 / 625명	66명 / 840명	63명 / 1,041명
12	대구지검	19명 / 1,389명	17명 / 1,466명	59명 / 1,888명
13	부산지검	10명 / 1,293명	34명 / 1,360명	168명 / 2,053명
14	울산지검	2명 / 459명	6명 / 397명	30명 / 592명
15	창원지검	11명 / 1,048명	19명 / 1,098명	43명 / 1,362명
16	광주지검	5명 / 757명	20명 / 871명	8명 / 1,036명
17	전주지검	8명 / 509명	13명 / 602명	20명 / 617명
18	제주지검	2명 / 382명	1명 / 370명	3명 / 238명
합계		231명 / 15,243명	1,880명 / 19,470명	2,005명 / 25,622명

(4) SW 불법복제 단속·점검 연도별 현황

(단위: 개, 종, 건)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2	계
점검 기관수	674	1,324	2,315	1,050	1,760	2,514	2,537	2,172	2,090	2,005	809	19,250
SW 체크 리스트	8종	23종	50종	995종	660종	1,426종	1,620종	1,747종	572종	782종	822종	
단속 기관 SW 설치 수량				80,975	180,590	140,169	146,909	156,981	143,916	148,331	59,087	1,056,958
불법 복제율 (%)	0.88	0.42	9.5	8.23	14.68	25.18	20.93	17.11	26.59	28.84	35.77	
상담	400	500	2,400	130	250	358	735	280	1,660	141	73	6,927

(5) 부정복제물 신고 접수 및 처리 연도별 현황

(단위: 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2	계
오프라인	신고접수	—	—	85	76	52	30	35	23	85		386
	처리	—	—	85	76	52	28	32	16	45		334
온라인	모니터링	—	—	—	340	124	500	652	2,098	11,927	35,345	50,986
	신고접수	—	—	—	—	8	184	76	47	—	262	577
	시정권고	—	—	—	—	—	—	—	372	11,927	35,345	47,644
	경고	—	—	—	—	—	—	—	372	1,112	13,466	14,950
	삭제/전송중단	—	—	—	—	—	—	—	—	10,747	21,840	32,587
	계정정지	—	—	—	—	—	—	—	—	68	39	107
	적발금액 (억원)	—	—	—	—	—	—	—	—	306	254	560

* 모니터링 신고는 07.4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정권고 도입으로 통계에서 제외, 2008년부터 시정권고 이행에 따른 적발액 조사

7. 해외 사무소

(1) 해외 법률 컨설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도	분야	구분		건수	비고
2007	조사컨설팅			36	※ 중국판권보호중심
	상담 (126)	면담		32	
		전화		2	
		온라인		92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컨설팅 (53)	북경	법률자문	27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자문	26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215	
2008	상담 (188)	면담		12	
		전화		10	
		온라인		166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컨설팅 (65)	북경	법률자문	27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자문	38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253	
2009	상담 (252)	본부 (169)	면담	-	
			전화	11	
			온라인	158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북경 (32)	면담	10	
			전화	22	
			온라인	-	※ 이메일
		방콕 (51)	면담	15	
			전화	15	
			온라인	21	※ 이메일
	컨설팅 (50)	북경 (50)	법률자문	16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자문	34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합 계			302	
총 계				770	

(2) 해외 권리정보 확인(인증) : 중국

(2009년 12월 31일 현재)

분야 / 구분			요청 건수	처리 건수	보류 건수
2007년	오프라인	영상	420	407	13
		음악	1	—	1
		소개	421	407	14
	온라인	영상	144	144	—
		음악	12	12	—
		어문	23	23	—
		기타	15	15	—
		소개	194	194	—
	합계		615	601	14
2008년	오프라인	영상	1,505	1,484	21
		음악	8	8	
		어문 기타	1	1	
	온 라 인	※ 저작권 정보 전시 · 홍보 중심으로 관리방법 전환			
	합계		1,514	1,493	21
2009년	오프라인	영상	540	435	105
		음악	686	686	—
		어문 기타	—	—	—
	합계		1,226	1,121	105
총계			3,355	3,215	140

(3) 중국 저작권등록 지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지원대상	신청포기	지원 건수	심사계류	반려	등록완료
2007년	시범지원	70	9	61	—	2	59
	업무지원	3	1	2	—	—	2
	합계	73	10	63	—	2	61
2008년	업무지원	※ 법률 컨설팅으로 관리방법 전환					
총계		73	10	63	—	2	61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현지 이벤트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건수	행사명(개최일)
2006년	국내	3	• 저작권 해외진출 설명회(9월, 서울) • 제2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서울) • '아시아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서울)
	해외	2	• 제1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9월, 북경) • 중국 국제판권교역추진회 참가(5월, 장사)
	합계	5	
2007년	국내	1	• '아·태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서울)
	해외	3	• 제3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9월, 북경) • 한·태 저작권 세미나 개최(9월, 방콕) • 태국 왕실 주최 IP Fair 참가(11월, 방콕)
	합계	4	
2008년	국내	2	• 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5월, 서울) •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9월, 서울)
	해외	7	• 한·중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교역 촉진 세미나(2월, 북경) • 한·태 저작권 교류 활성화 워크숍(4월, 방콕) • 중국 내 한국저작권 온라인 침해 실태 및 구제조치 설명회(6월, 북경) • 동남아 4개국 저작권 컨퍼런스(10월, 방콕) •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참가(10월, 북경) • 한·인니 저작권 세미나 개최(11월, 자카르타) • 한·중 저작권 교류 및 중국 내 저작권 보호 설명회(12월, 북경)
	합계	9	

2009년	국내	3	• 서울 저작권 포럼(6월, 서울) • 한·일 저작권 포럼(10월, 서울) • WIPO STUDY VISIT PROGRAM(12월, 서울)
	해외	11	• 한국 콘텐츠 쇼케이스 참가(1월, 방콕) • 동남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월, 자카르타) • 한·인니 저작권 심층 워크숍(5월, 자카르타) • 중국 내 한국저작권물 침해조사 결과보고 및 저작권 보호 설명회(5월, 북경) •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6월, 북경) • 태국 IP fair 행사 참가(6월, 방콕) •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체결(9월, 북경) • 중국 제2차 국제판권박람회 참가 및 저작권 보호 설명회(10월, 북경) • 한·태 저작권 포럼 개최(11월, 태국) • 한·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보고회 개최(12월, 중국) • 중국 국제 영상·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12월, 중국)
	합계	14	
총계		32	

8. 교육

(1) 교육 사업 실적 (2006~2009년)

1) 교육·연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사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저작권연구학교	—	15개교(수도권)	23개교(전국)	27개교(전국)
저작권체험교실	836명(20개교)	745명 (전국, 20학급)	3,479명 (전국, 79학급)	4,215명 (117개 학급)
특수분야교사연수	80명(2회)	80명(2회)	75명(2회)	76명(2회)
원격교원직무연수	—	1,209명(1회)	2,727명(5회)	3,305명(7회)
저작권아카데미	678명(22회)	229명(10회)	259명(10회)	199명(10회)
저작권문화학교	179명(4회)	175명(4회)	178명(4회)	154명(6회)
저작권 전문가 포럼	250명(5회)	130명(2회)	—	—
저작권 강사 양성	—	93명(3회)	71명(3회)	3회(재교육)
저작권 지킴이 연수	50여명(1회)	—	161명(3회)	7,812명(72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607명(39회)	9,098명(78회)	21,605명(122회)	93,977명(374회)
지재권의날 기념 세미나	200여명	—	—	—
문화산업 실무자 교육	—	—	15명(1회)	—
WIPO 협력프로그램 운영	—	4명(1회)	2명(1회)	4명(1회)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15명(1회)	26명(1회)
교과서 집필진 워크숍				44명(1회)
공무원 대상 저작권 위탁교육			86명(3회)	1회
총 계	4,900명	11,763명	17,996명	109,772명

* 교육인원 총계에 연구학교 인원은 제외 함

2) 2009년 교육·연수 사업 실적

사업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작권 연구학교										27개교 (22,680명)
저작권 체험학교										117개교 (4,215명)
특수분야 교사연수					40명 (1회)					
원격교원 직무연수				1,670명 (2회)	165명 (1회)	174명 (1회)	224명 (1회)	157명 (1회)	1,048명 (1회)	
저작권 아카데미				11명 (1회)	44명 (2회)	-	53명 (2회)	46명 (2회)	13명(1회)	32명 (2회)
저작권 문화학교	-	-	-	-	74명 (3회)	-	31명 (1회)	20명 (1회)		29명 (1회)
저작권 강사 양성									26명 (1회)	47명 (2회)
찾아가는 저작권교육	2,064명 (17회)	5,541명 (30회)	2,371명 (18회)	2,664명 (11회)	11,183명 (28회)	5,137명 (22회)	11,169명 (40회)	18,667명 (50회)	10,671명 (37회)	5,199명 (27회)
저작권 지킴이 연수	230명 (3회)	877명 (7회)	1,030명 (11회)	1,183명 (11회)	630명 (5회)	709명 (6회)	683명 (6회)	387명 (3회)	1,090명 (11회)	993명 (9회)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26명 (1회)									
총 계	2,320명 (21회)	6,418명 (37회)	3,401명 (29회)	5,528명 (25회)	3,277명 (21회)	2,495명 (24회)	2,855명 (23회)	3,149명 (20회)	12,848명 (43회)	6,300명 (41회)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009년 7월 부터 통계 통합 산출)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실적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비고
1차	2월 14일	서울중앙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62	미성년자
2차	3월 27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10	성인
3차	3월 31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58	성인
4차	4월 21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07	성인
5차	4월 22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98	성인
6차	4월 23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95	성인
7차	4월 24일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123	성인
8차	4월 28일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164	성인
9차	4월 29일	창원	창원대학교	105	성인
10차	4월 30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85	성인
11차	5월 7일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116	성인
12차	5월 9일	수도권지역	저작권교육원	64	미성년자
13차	5월 12일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92	성인
14차	5월 13일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101	성인
15차	5월 14일	인천	저작권교육원	108	성인
16차	5월 15일	울산	가족문화센터	76	성인
17차	5월 19일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106	성인
18차	5월 20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08	성인
19차	5월 21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97	성인
20차	5월 28일	대전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106	성인
21차	5월 29일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56	성인
22차	6월 3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16	성인
23차	6월 4일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101	성인
24차	6월 11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11	성인
25차	6월 12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10	성인

구분	연수일	지검	장소	이수자	비고
26차	6월 13일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65	미성년자
27차	6월 16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12	성인
28차	6월 17일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105	성인
29차	6월 18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97	성인
30차	6월 23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28	성인
31차	6월 26일	창원	창원대학교	118	성인
32차	6월 30일	대구	계명대학교	120	성인
33차	7월 2일	인천	저작권교육원	107	성인
34차	7월 8일	대구	계명대학교	166	성인
35차	7월 10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22	성인
36차	7월 15일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133	성인
37차	7월 15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102	성인
38차	8월 19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17	성인
39차	8월 19일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176	성인
40차	8월 20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12	성인
41차	8월 25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02	성인
42차	8월 26일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123	성인
43차	8월 26일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9	성인
44차	9월 2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	124	성인
45차	9월 15일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114	성인
46차	9월 16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17	성인
47차	9월 18일	대구	계명대학교	191	성인
48차	9월 24일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36	성인
49차	9월 30일	서울남부	저작권교육원	101	성인
50차	10월 8일	인천	저작권교육원	107	성인
51차	10월 9일	의정부	저작권교육원	107	성인
52차	10월 28일	부산	부산대학교	173	성인

53차	11월 3일	서울중앙	저작권교육원	136	성인
54차	11월 4일	서울북부	저작권교육원	134	성인
55차	11월 4일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75	성인
56차	11월 5일	춘천	KIST 강릉분원	69	성인
57차	11월 13일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00	성인
58차	11월 14일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9	성인
59차	11월 20일	서울서부	저작권교육원	129	성인
60차	11월 24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37	성인
61차	11월 26일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155	성인
62차	11월 27일	전주	국립전주박물관	109	성인
63차	11월 28일	호남지역	전주정보영상진흥원	17	미성년자
64차	12월 4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	95	성인
65차	12월 8일	인천	저작권교육원	142	성인
66차	12월 9일	수원	저작권교육원	106	성인
67차	12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154	성인
68차	12월 12일	수도권지역	저작권교육원	53	미성년자
69차	12월 12일	영남지역	부산평생교육원	30	미성년자
70차	12월 17일	창원	창원대학교	229	성인
71차	12월 18일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93	성인
72차	12월 19일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91	성인
총 72차				7,812	

(3) 저작권연구학교 운영현황

연도	지역	학교수	운영학교 명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서울	5	개명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신목중학교 연서중학교	자운고등학교
	인천	3	—	제물포여자중학교 부평서중학교	선인고등학교
	경기	7	병점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영문중학교 병점중학교 별내중학교	의정부여자고 성지고등학교
소계		15개교	4개교	7개교	4개교
2008	서울	8	군자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효문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중경고등학교
	경기	8	고현초등학교 발안초등학교 목암초등학교	별망중학교 수일여자중학교 호평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인천	5	용유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능허대중학교	도림고등학교
	전남	2	순천왕지초등학교	청산중학교	—
소계		23개교	11개교	8개교	4개교
2009	서울	5	명원초등학교 고척초등학교	성재중학교 방배중학교	오금고등학교
	경기	2	양지초등학교	함현중학교	—
	부산	2	운송초등학교	—	반여고등학교
	대구	2	대구왕선초등학교	침산중학교	—
	인천	6	인천완정초등학교	남인천여자중학교 제물포중학교 청학중학교	계양고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	1	—	월곡중학교	—
	충북	2	—	청주중앙중학교	충주고등학교
	전북	2	왕궁남초등학교 정읍이평초등학교	—	—
	경북	3	송정초등학교	광평중학교	수비고등학교
	제주	2	—	성산중학교	함덕고등학교
소계		27개교	9개교	11개교	7개교
총계		65개교	24개교	26개교	15개교

(4) SW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 교육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계
교육 · 설명회	횟수	11	5	20	43	90	78	12	20	20	33	50	159	217	214	94	1,066
	참가 인원	—	—	—	5,600	7,538	3,731	1,014	2,114	2,010	4,885	6,717	68,655	87,062	98,596	19,311	307,233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횟수	—	—	—	—	—	—	—	—	—	—	—	—	1	—	1	2
	수료 생	—	—	—	—	—	—	—	—	—	—	—	—	27	—	17	44
아카 데미	횟수	—	—	—	—	—	—	2	3	4	4	5	5	6	3	—	32
	수료 생	—	—	—	—	—	—	47	112	86	112	180	163	215	117	—	1,032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009년 7월부터 통계 통합 산출)

(5) 정품 SW 관리 컨설팅 · 보급교육 연도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컨설팅	4	16	82	139	164	82	51	538
보급교육	—	—	—	—	—	—	50	50

9. 홍보

날짜	행사명	대상	내용
3월 2일~ 11월 30일	'저작권 보호의 날' 기념 저작권 퀴즈대회	일반인	• 9회, 총 11,605명 참여 • 저작권 퀴즈대회 이벤트를 통해 매월 500명을 추천하여 음악이용권(MP3 150곡 다운로드) 증정
3월 30일~ 4월 26일 (온라인)	'세계지적재산권 의 날' 기념행사	일반인	• 저작권 퀴즈대회 이벤트를 통해 총 10,000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증정(93,600명 응모)
4월 24일~ 25일 (오프라인)			• "Hello SW Copyright! 2009"와 연계하여 부스운영 및 관람객 참여 이벤트 진행
매월 26일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	일반인	• 총 10회 (온라인2, 오프라인8), 34,267명 참여 • 저작권 서명운동, 저작권 보호 홍보물 배포 등 일반인 참여 이벤트 개최
지속추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홍보	일반인 및 청소년	• 저작권 기증제도 홍보 및 안내(4월 25일~4월 29일, 네이버광고) • '저작권의 모든 것(http://twww.copyright.go.kr)' 및 '싸이월드 타운(http://town.cyworld.com/copyright26)' 운영
4 ~ 12월	IP(지적재산권) 논문공모전	대학 (원)생	•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공동주최, 대학(원)생 대상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 산업재산권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 논문마감(9/20) : 총 47편 ※ 저작권 분야(23편), 산업재산권 분야(24편) - 제4회 대학(원)생 IP우수논문공모 시상식(10월 29일) ※ 시상(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 해외연수(11월 16일~21일, 미국동부지역) ※ 저작권청, 특허상표청, 연방순회법원 등 5개 기관
지속추진	교환광고를 통한 저작권 홍보 (월간 저작권문화 게재)	일반인	• 교환광고를 통해 저작권 홍보 진행 - 한국음원제작자협회(2월)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4월) - 방송작가협회(5월) - 특허청(7월) - 한국음원제작자협회(7월)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8월) - 한국방송실연자협회(8월) - 게임물등급위원회(9월)

6~12월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수상집 발간	청소년	• 전국 교육청 등에 안내 및 홍보 - 전국 초·중등학교에 대회 포스터 및 수상집 발송 - 접수 : 총 3,855명 - 제5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발표 (11월 3일) ※ 대상(대통령상 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 9명, 입선(60명), 최우수(1개교), 우수(3개교)
9월 1일~30일	지하철 방송 "GO 대한민국"	일반인	• 개정저작권법 관련 홍보 - 지하철(1, 3, 4호선)내 모니터 TV 송출(총 2,040개) - 9월 1 ~ 30일(1개월간), 총 120회(1일 4회)방송
10월 21일 ~23일	청소년 저작권 교육드라마	청소년	• 청소년 저작권 교육드라마 - 방송사 : EBS - 특집드라마 청소년 저작권 교육드라마 - 10월 21일 ~ 23일, 총3편, 3일간(20:00~20:30)송출
12월	군장병 및 청소년 저작권 만화책자 보급	군장병 및 청소년	• 군장병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12월, 100,000부) •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12월, 100,000부)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드라마· 애니메이션 보급	청소년	•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드라마·애니메이션 DVD 제작·보급 - 제작수량 : 35,000장(2DVD/1세트) - 배포처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청소년협회 등 11,966기관
	한국저작권판례집 제작	일반인	• 한국저작권판례집(12) : 2,000부
12월 8일 ~10일	저작권 인식확산 을 위한 언론사 (협찬) 공동기획	일반인	• 디지털타임스 공동기획 특집기사(3회) - 일자 : 12월 8일 ~ 10일(3일간)

10. 등록

(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종류		연도	'87~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저작물	어문 저작물	804	56	127	64	84	64	218	495	625	822	991	1,521	1,792	1,890	1,875	2,309	13,737	
	음악 저작물	36	15	35	1	21	112	290	101	214	248	238	313	362	659	744	987	4,376	
	연극 저작물							1	6	2	11	5	4	14	3	16	27	89	
	미술 저작물	667	89	66	13	50	159	712	1,774	2,842	2,919	2,435	4,816	3,779	3,599	4,278	5,075	33,273	
	건축 저작물				4	1	78	453	262	184	161	285	145	132	210	99	117	2,131	
	사진 저작물	5	1			1	4	18	43	93	339	736	1,048	3,877	6,350	2,993	378	15,886	
	연사 저작물	425	30	29	186	41	20	109	473	287	432	800	732	723	660	247	238	5,432	
	도형 저작물	25		1	1	6	5	24	49	91	88	19	265	440	564	506	400	2,484	
	편집 저작물	39	3	3	2	2	16	106	273	427	658	706	696	796	1,101	1,414	1,079	7,321	
저작 이행권	이차적 저작물							7	99	193	772	846	795	180	252	197	277	3,618	
	프로그램 저작물	22,382	7,060	9,736	7,700	7,582	7,836	13,854	11,018	10,062	9,939	10,299	10,528	10,686	10,623	11,190	11,855	172,350	
	기타 저작물									1								1	
저작 인접권	실연								1		1		2	61	24	4	93	186	
	음반		162						14	37	21	49	82	184	68	36	73	1,366	2,092
출판 권	편집 저작물								2			2		2	4		3	13	
	어문 저작물										6	3	5	4	2	3		23	
	미술 저작물											4						4	
	이차적 저작물											1			1	2	2	6	
배타적 발행권	2	3						1	1		7	5	4	13	1	2	1	40	
데이터 베이스											2	14	27	11	38	35	18	145	
총계		24,385	7,419	9,997	7,971	7,788	8,294	15,807	14,634	15,042	16,454	17,471	21,085	22,940	26,017	23,678	24,225	263,207	

(2) 2009년 등록 통계

1) 월별 등록 건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1,588	1,903	1,707	1,667	1,211	1,388	1,553	2,270	1,647	2,542	2,203	4,546	24,225

2)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illegible]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	2		4	1			2					6	15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양도등록		1											1
데이터베이스 등록 사항변경등록								1	1				2
배타적 발행권 등록									1				1
총 건 수	1,588	1,903	1,707	1,667	1,211	1,388	1,553	2,270	1,647	2,542	2,203	4,546	24,225

11. 법정허락

(2009년 12월 31일 현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건수	0	3	2	1	3	2	1	1	6	7	26

12. 임치 (SW 임치서비스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2	계
임 치 계 약	신규	3	4	4	2	11	18	19	49	62	121	155	448
	갱신	-	2	1	2	2	6	19	17	48	65	97	259
	사용권 자등록	-	-	-	-	-	44	44	13	21	59	47	228
	소계	3	6	5	4	13	68	82	79	131	245	299	935
기 타	최신본 임치	-	-	-	-	-	-	5	8	18	14	17	62
	기술 검증	-	-	-	-	-	-	1	1	1	-	-	3
	소계	-	-	-	-	-	-	6	9	19	14	17	65
합계		3	6	5	4	13	68	88	88	150	259	316	1,000

13. 기타

(1) SW 지적재산권 종합정보 서비스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2	계
지재권 정보데이 터베이스 구축	65,289	9,853	11,662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532	101,663
방문자수	-	-	-	-	-	-	-	-	-	-	119,824	119,824
계	65,289	9,853	11,662	9,339	679	1,157	1,082	719	918	433	120,356	221,487

* 지적재산권 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은 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데이터 이관(2009년 7월)

* 방문자수는 2009년 7월부터 집계

(2) 중소기업 등 SW 관리체계 기반 구축

1) 점검용SW 배포 현황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계
점검용SW 무료배포	5,260	11,021	37,295	29,371	45,491	34,801	47,940	211,179

2) 점검용SW 관리 현황 연도별 현황(2009년 7월 22일 이전)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Key List	572	210	40	822
상담	122	141	60	323

* 2007년 초에 Key-list체계 변경으로 2007년부터 통계관리

2009 주요 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일자	주요 활동
2009년 1월 29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 세미나 개최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세미나 개최
2009년 3월 26일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 관련 불법음원 근절 운동 '불끈운동 거리 캠페인' 실시
2009년 4월 14일	'저작권교육원' 개소
2009년 4월 24~25일	정품SW 사용의식 고취를 위한 'Hello, SW Copyright 2009' 개최
2009년 5월 6일	'2009 한·인도네시아 저작권 심층 워크숍' 개최
2009년 6월 4일	2009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2009년 6월 17일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원
2009년 7월 28일	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09년 8월 11일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
2009년 8월 26일	제2기 저작권문화학교 야간과정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워크숍 개최
2009년 8월 28일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09년 9월 3일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체결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저작권 문화 UCC 제작 온라인 이벤트' 실시
2009년 9월 8일	저작권아카데미 사서과정 개최
2009년 9월 12일	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 과정 개최
2009년 9월 18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홈페이지 담당자 무료 교육 실시

2009년 9월 19일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 실시
2009년 9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생협약체 및 저작권 포럼 발족
2009년 9월 28일	제31기 저작권 문화학교 일반과정 개최
2009년 10월 15일	군장병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군법무관 대상 저작권 교육 개최
2009년 10월 21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드라마 개발, EBS에서 방송
2009년 10월 22일	제1회 기술소위원회 개최
2009년 10월 29일	저작권아카데미 출판인 과정 개최
2009년 11월 12일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
2009년 11월 19일	한·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 개최
2009년 11월 23일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관련 제9차 협의체 워크숍 개최
2009년 11월 25일	제1회 저작권 포럼 개최
2009년 11월 26일	광운대와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2009년 11월 30일	제8기 저작권문화학교 단기과정 개최
2009년 12월 3일	저작권아카데미 문화산업인 과정 개최
2009년 12월 8일	"WIPO STUDY VISIT 2009" 행사 개최
2009년 12월 9일	‘내가 말하는 저작권, 저작권은 ()다’ 온라인 이벤트 실시 ‘2009 저작권 전문강사 연수’ 개최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2009년 12월 10일	저작권 청소년 강사 연수 개최
2009년 12월 14일	표절위원회 발족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2009년 12월 16일	저작권아카데미 표준교재 발간 배부 ‘독일에 조국을 알린 한국인 감독 – 법정허락을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
2009년 12월 17일	제4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개최 ‘2009년도 기술위원회’ 개최
2009년 12월 18일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 체계 구축
2009년 12월 21일	“Fun Fun 저작권 UCC 공모전” 개최 프랑스 저작권법 번역서 발간 배포 개정 저작권법 반영한 상담사례집 발간

2. 저작권보호센터

일자	주요 활동
2009년 1월 20일	저작권 클린포럼 ‘CCL과 클린사이트 연계 방안, 유비쿼터스 세상의 저작권, 건전한 저작물 유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 개최
2009년 2월 17일	저작권 클린포럼 ‘P2P, 웹하드 합법 서비스 모델 유형분석’ 개최
2009년 3월 17일	저작권 클린포럼 ‘영상물 저작권 보호 및 유통활성화 방안’ 개최
2009년 4월 8일	‘클린사이트 연구 워킹그룹 발족식’ 개최
2009년 4월 15일	월간 ‘저작권 보호’ 창간
2009년 4월 15일 ~ 5월 31일	‘대한민국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 시상식’ iMBC와 공동주관
2009년 5월 7일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저작권 보호 기술교류 MOU 체결
2009년 5월 25일	저작권 클린포럼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2009년 6월 4일	‘집중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09년 6월 23일	저작권 클린포럼 ‘포털 저작권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법적인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권리자·OSP 상생방안’ 개최
2009년 6월 29일	‘미국의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 및 프로그램’ 보고서 발간
2009년 6월 30일	‘노래반주기 기반 공연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09년 7월 1일	클린사이트 첫 지정 및 홈페이지 오픈(신청 접수 시작)
2009년 7월 1~31일	클린사이트 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 진행
2009년 7월 9~10일	클린사이트 지정 심사 평가단 워크숍 개최
2009년 8월 26일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2009년 8월 27일	‘서울클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발간
2009년 9월 24일	저작권 클린포럼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가상세계와 저작권,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 개최
2009년 10월 7일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2009년 10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 ‘ICOP 기술 세미나’ 개최
2009년 10월 15일~ 11월 13일	소리바다와 ‘클린 그린 캠페인’ 공동 이벤트
2009년 10월 28일	저작권 클린포럼 ‘공정이용 도입의 필요성’ 개최

2009년 11월 12~13일	클린사이트 워킹그룹 워크숍 개최
2009년 12월 12일	'저작권클린 대촉제' MBC 쇼! 음악중심과 공동 개최
2009년 12월 16일	ICOP-II (영상) 시연회 개최
2009년 12월 29일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창간
2009년 12월 30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연구',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보고서 발간

3. 저작권 유관 학회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of Digital Property Law
설립연도	2001년 4월 6일
학회장	이 상 정
학회연혁	2001년 4월 6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2001년 6월 8일 서울제신청 학회설립 인가 신청 2001년 6월 28일 학회설립 인가 2001년 7월 20일 학회설립 등기 2001년 7월 26일 비영리 사업자등록 2001년 11월 30일 디지털재산법연구 창간호 발행 2002년 2월 28일 송상현선생 화갑기념집 발행 2004년 5월 30일 송영식선생 화갑기념집 발행 2005년 12월 25일 양병회교수 정년기념호 발행
설립목적/기능	인터넷과 디지털환경의 도래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디지털재산이 대량으로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재산은 그 보존과 이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래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이다. 그러나, 디지털재산의 침해에는 비용 및 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복제의 질이 원본과 같다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재산은 침해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재산을 보호하고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재산의 창출을 유도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일이다. 또한 디지털재산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여 디지털 재산의 제작자와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신속·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재산과 관련된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자 우리가 다른 나라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며, 정보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산업이다. 디지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또 하나의 법의 임무로 디지털재산법학회는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거래에 관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환경정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설립연도	2006년 4월
학회장	홍 승 기
학회연혁	2006년 2월 창립총회 2006년 3월 제1회 월례사례연구회 개최 2006년 4월 사단법인 설립인허가 - 문화관광부 2006년 4월 제1회 창립 심포지움
설립목적/기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 및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학술 연구와 회원 교류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교류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법학 분야에 있어서 학문과 산업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주요 활동내역	〈월례사례연구회(매월)〉 2009년 2월 제15회 월례사례연구회 안재형, 외주드라마 관련 저작권분쟁 사례연구 2009년 4월 제16회 정기총회 및 월례사례연구 양지연, 온라인 광고와 개인정보보호 2009년 6월 제17회 월례사례연구회 정준모, 게임물등급 심의관련 판례의 분석과 전망 2009년 7월 제18회 월례사례연구회 서우식, 한국영화산업의 전망
	2009년 9월 제19회 월례사례연구회 염규호, 미국 Entertainment 의 동향 2009년 10월 제20회 월례사례연구회 안건형,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중재 2009년 11월 제21회 월례사례연구회 권오형, TV 프로그램 포맷 유통의 실제 2009년 12월 제22회 월례사례연구회 안혁, RS-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엔탈서비스 사건)

2009년 주요 활동내역	〈춘계학술세미나 및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1.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 • 일시 : 2009년 4월 22일(수), 14:00~17:4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2층)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디지털재산법학회 2. 공동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13일(금), 13:00~18:30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401호 • 주최 : (사)한국저작권법학회/(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구포럼〉 • 주제 :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물 판매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사례분석 • 일시 : 2009년 9월 3일(목), 17:00~18:00 • 장소 : 법무법인 다래 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특허청서울사무소 소재 건물) 〈게임법포럼〉 • 주제 : 게임관련 저작권법제 연구 • 일시 : 매월 1회
발행물 목록	〈디지털재산법연구 제8권 통권12호(2009년 12월)〉 1. 이기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현황 및 문제점 연구 2. 손승우, 인터넷포털에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3. 오병철, 이-러닝 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4. 최경진,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제도 5. 이수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최신 쟁점-미국판례와 미국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6. 김형렬, 중국 관련 게임저작권분쟁의 주요 쟁점
	〈연구용역보고서〉 1.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발행 2. 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저작권의 보호, SKTelecom 발행
홈페이지	http://www.digitallaw.kr
학회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상정 교수 연구실 전화, 02)961-0741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일교수 연구실 전화, 02)2220-0981

2009 연구내역	활동내역	〈연구용역 보고서〉
		1. 한일공동영화제작계약관계 및 법적논점, 일본국제영상진흥협회, ELN 발행 2. 저작권신탁단체 관리운영지침 연구, 문화관광부 발행 3. 영화 및 음악에서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문화관광부 발행
	발행물 목록	학술지(년1회 발간) 엔터테인먼트법학 (Entertainment Law Journal)
	홈페이지	http://www.kels.or.kr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5층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변호사 홍승기 전화: 02)501-4240

(3) 한국인터넷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인터넷법학회
	(영문)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설립연도	2002년 9월 5일
학회장	최 승 원
학회연혁	2002년 9월 5일 학회창립 2007년 4월 ~ 2009년 3월 박균성 회장 (경희대학교 법대) 2009년 4월 ~ 2010년 3월 소재선 회장 (경희대학교 법대) 2010년 4월 ~ 현재 최승원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설립목적/기능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인터넷법학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발표 및 교류를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을 법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다른 외국과의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보호문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다지면서 학술의 보급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009 연구내역	〈정례 학술 및 세미나〉 1. 정기학술대회 일자 : 2009년 6월 29일(월)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101호/401호/403호 주제 : 인터넷 현상과 법규범의 충돌 -새로운 법질서의 정립은 가능한가?- 2. 한국인터넷법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학술대회 일자 : 2009년 8월 21일(금)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1층 회의실 주제 : 신뢰기반의 정보사회 마련을 위한 법 · 정책적 과제 3. 동계학술대회 일자 : 2009년 12월 21일(월) 장소 :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국제홀 주제 : 인터넷에 있어서 이용자보호
	〈공동학술세미나〉 1.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공동 학술세미나 일자 : 2009년 9월 10일(목)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강당 주제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 ·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4)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of Copyright Law
설립연도	1985년 3월 16일
학회장	이 상 정
학회연혁	1985년 3월 16일 학회설립 2001년 2월 21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2001년 6월 8일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허가 2001년 7월 2일 사단법인 설립등기 2001년 7월 5일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2001년 9월 20일 비영리 사업자등록 2002년 5월 31일 저작권연구 창간호 발행
설립목적/기능	한국저작권법학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자국의 산업발전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열한 국제간 경쟁양상에서 산업자체도 보다 큰 경제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저작권재산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저작권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감하여 저작권법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저작권관련 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 제도의 향상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저작권관련 세미나 및 학술연구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해석하고, 기술적 논리와 법률적 논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내의 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연구와 활동 그리고 의견을 모아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저작권 문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09 연구 내역	〈준계학술세미나 및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1. 저작물이용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방안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일시 : 2009년 4월 3일(금), 14:00~18:30 장소 :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삼성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 주최 : 한국저작권법학회 주관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 공동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일시 : 2009년 11월 13일(금), 13:00~18:30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401호 주최 : (사)한국저작권법학회/(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 연구 실적	발행물	1. 6월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제1분과 배병호, 인터넷 실명제와 법적 문제 황성기, 인터넷 포털과 법적 문제 김재광, 온라인 행정정보의 상업적 이용
		제2분과 최경진, Web 2.0 시대의 민사법적 과제 김현철, 온라인침해에 대한 행정명령제도 - 개정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오병철,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충돌과 그 해석-서울고등법원 2008. 9. 23. 2008나70720판결-
		제3분과 정완,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신동일, 스팸메일의 형사책임 황태정, 사이버공간상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2. 2009 한국인터넷법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정찬모,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김재광, 국가 전체 차원의 사이버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영일, 사이버범죄 퇴치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3. 2009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민호,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규정,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 정책적 지원방안 박영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연락처		4. 2009 한국인터넷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인터넷에 있어서 이용자보호' 자료집
		최경진, 가상세계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와 이용자보호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홈페이지
		http://www.itlaw.or.kr
연락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원 교수 (법학관 416호 교수연구실)
		전화, 02)3277-3503, 이메일, klla@ewha.ac.kr

2009 연구 내역	활동내역	〈저작권 포럼〉 일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4:00 ~ 18:00 장소 : 저작권교육원(서울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하위 16층)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발행물 목록	〈연구용역 보고서〉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개선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홈페이지	없음
	학회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상정 교수 연구실 전화. 02)961-0741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413호 신재호 교수 연구실 전화. 055)751-6682

(5) 한국정보법학회

학회명	(한글) 한국정보법학회
	(영문) Korea Association For Informedia Law
설립연도	1996년 4월
학회장	최 성 준
학회연혁	1996년 4월 학회 창립 1996년 4월 제1회 세미나 개최 1997년 6월 제1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1997년 12월 정보법학 창간호 발간 연 1회 심포지움 개최(총 4회의 국제심포지움 개최) 연 3회 세미나 및 연 5~6회 사례연구회 개최 연 3회 정보법학 발간 2007년 정보법학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설립목적/기능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9 연구 내역	활동내역	〈정례 세미나(3월 총회, 6월 국제, 9월 야외, 12월 정기)〉 1. 3월 정기총회 일자 : 2009년 3월 10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공간정보통제의 법적 문제 2. 제13회 정기 심포지움 일자 : 2009년 6월 20일(토)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 주제 : 융합콘텐츠와 법 :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3. 9월 야외 세미나 일자 : 2009년 9월 19일(토)~20.(일) 장소 : 한화리조트설악 주제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IPS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개정 저작권법상의 계정정지 및 게시판정지, 특허권 소진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정보법학회 공동 국제세미나 일자 : 2009년 10월 29일(목) 장소 : 롯데호텔 에메랄드홀 주제 : 국내외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최근 경향과 국제재판관할 문제 5. 12월 정기세미나 일자 : 2009년 12월 8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개인화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사례연구발표회〉 1. 2월 사례연구회 일자 : 2009년 2월 10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다음, 네이버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관련 분쟁 2. 4월 사례연구회 일자 : 2009년 4월 14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3. 5월 사례연구회 일자 : 2009년 5월 12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원격방송프로그램저작서비스와 저작권 4. 7월 사례연구회 일자 : 2009년 7월 14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포탈의 책임범위에 관한 최근 해외동향 5. 11월 사례연구회 일자 : 2009년 11월 10일(화) 장소 : 역삼역 중식당 루안 주제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문제

2009 연구 동향	발행물 목록	〈학술지(4월, 8월, 12월 연 3회 발간)〉 1. 정보법학 13-1호(2009년 4월) 신혜은, 특허발명의 원활한 이용과 시험·연구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리서치물 특허에 관한 연구 김병일, 어문저작물 전송서비스와 저작권 권리처리 박익환, 저작권 사용료 관련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독일의 중재소제도를 중심으로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이규호, 저작권침해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종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일반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오병철, 전자학습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 2. 정보법학 13-2호(2009년 8월) 나종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융합 콘텐츠 이용 계승균,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홍대식,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경쟁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황창식,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양면시장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및 대법원의 티브로드 강서방송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선희, 방송통신시장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쟁점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 황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 문제—지상파방송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근을 중심으로 이숙연,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조용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김은기,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손실보상 이충훈,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정차호, 윤기승,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관련 해석론 및 입법론 3. 정보법학 13-3호(2009년 12월) 김병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박태일,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이규호,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이대희, 구글 도서검색과 인터넷상 도서이용의 과제 정연덕, Google 'Street View'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문제점 조정욱, WIPO 조정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경향 비교 한상욱, 세계에 내세울 만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홈페이지 http://www.kafil.or.kr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김병일 교수 전화. 02)2220-0981

(6)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학회명	(한글)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영문) Korea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ion	
설립연도	2008년 1월 17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학회장	박 영 길	
학회연혁	2008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08년 4월 20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및 상호학술교류협정 체결(장소 : 중국 무한) 2008년 8월 28일 임원 등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적산권중심 등 방문 2008년 9월 24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창립 국제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4일 임원 등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등 방문 2008년 12월 30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위탁연구 수행(과제명 :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 제도) 2009년 5월 8일 임원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산권중심·중국화남이공대학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설립목적/기능	한중지적재산권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학술 교류 및 협력, 연구회 또는 강연회 개최, 학회지 등 서적 발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등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9 연구 내역	활동 내역	〈정기 국제세미나〉 일자 : 2009년 1월 21일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주제 :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국제세미나 〈정기 국제세미나〉 일자 : 2009년 12월 18일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주제 :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발행물 목록	〈자체 및 연구용역 보고서〉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발행
	기타	〈상호교류협정 체결〉 2009년 중국의 길림대학 법학원과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협정 체결
홈페이지	없음	
연락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422호 박영길 회장 전화. 02)413-7473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문)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설립연도	1964년 3월
단체연혁	1964년 3월 8일 협회설립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1964년 3월 15일 협회 창립총회(제1회) -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총회원 56명) -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 1964년 6월 19일 협회 설립 인가(문교부 : 문편발 제1732호) 1978년 2월 11일 제15회 정기총회 -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1986년 7월 20일 협회 회보(음악저작권) 창간 1987년 4월 10일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준회원 가입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취득,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1995년 4월 25일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정회원 승격 1996년 9월 11일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1997년 6월 14일 회관건립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 2000년 4월 7일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2004년 10월 18~22일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2009년 12월 23일 임원 개선 임시 총회 - 제21대 신상호 회장 당선
설립목적/기능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복제권·대여권 등을 관리하며,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음악문화 발전에 힘써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법 음악의 제조, 유통, 판매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국가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문화강국, 경제강국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 연 구 내 역	활동 내역	1. 순회특강 2. 협회 CI 공모전 개최 및 CI 변경 3. 'KOMCA 서비스현장' 제정 4. KOMCA 45년 편찬사 발간 사업 추진 5. '저작권선진화포럼'을 통해 협회 현안 사업 추진 6. CISAC 회의참석 및 해외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업무협력 7. 중국 불법사이트 폐쇄 조치 8. 통합 전산화(S) 시스템 구축사업 9. 불법음반 단속 실시 10. 전 매체에 대한 침해구제 활동 11. 인터넷 상 UCC, 블로그, 카페의 음악사용에 대한 징수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 진행 12. 노래연습장 및 유흥, 단란주점 분배규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3. '작품가점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발행물 목록	1. 음악저작권회보 발간(격월간 연 6회) 2. 오프라인 홍보물 'KOMCA 브로슈어' 제작 3. 2009년도 제46차 정기총회 자료 제작
홈페이지		http://www.komca.or.kr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관 전화. 02)2660-0400(대) 팩스. 02)2660-0401(대)

(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영문) Korean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KAPP)
설립연도	2001년 09월 05일
단체연혁	2001년 9월 5일 창립총회 2001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인가 취득(문화체육관광부) 2001년 12월 27일 저작권접권 관련 보상금징수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03년 3월 17일 신탁관리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03년 7월 1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료화 추진 2004년 1월 1일 협회보 '음원가족' 발간 2005년 9월 7일 벅스 서비스 전면 유료화 유도 2007년 3월 14일 디지털음원유통 국제 표준화 기구 DDEX 가입 2007년 3월 16일 임시총회 및 임원 선출 2007년 6월 13일 ECL 제도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2007년 8월 24일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한국저작권위원회, KBS,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07년 12월 6일 불법음원 근절 국민운동본부 공동 발족(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엠넷미디어) 2008년 1월 31일 국내음악저작물 통합메타데이터 구축 2008년 2월 20일 임시 총회 및 임원 선출 2008년 3월 13일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4월 1일 국내 음악저작물 표준음악저작권 관리번호 발급 및 배포 2008년 5월 1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온라인 계약 시행 2008.11.21 웹하드 협의체 1차 유료화 합의(주요 웹하드 업체 12개사) 2009년 3월 25일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2009년 7월 10일 웹하드 협의체 2차 유료화 합의(주요 웹하드업체 20개사) 2009년 9월 14일 판매용 음반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10월 6일 다음,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2009년 11월 1일 음악콘텐츠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UCI) 등록기관 선정 2009년 12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협약체결
설립목적/기능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신장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음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저작권 음악 산업에 발전을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2009년 국내 주요 활동	활동내역	1. ICN과 UCI 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RA)으로 활동 – ICN : 저작권관리번호 – UCI :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2. 불공운동캠페인(연 4회 진행) –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인식 제고 및 합법 다운로드 유도
	발행물 목록	1. 회보 '음원가족' 연 2회 발행 – 주요 음악업계 트렌드 뉴스 및 기고문 전달
	기타	1. 노동부 – 청년인턴기관 운영기관 지정 – 전반적인 음악산업에 고급 인력 투입 및 유도 지원 2. 해외단체와의 업무 교류 – WIPO/한국저작권위원회 교류 행사 관련 3개국(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 대표자 협회 방문 → 협회 및 국내 음반시장 소개 3. 세미나 및 포럼 1)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 일자 : 2009년 7월 14일(화)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 CCMM 빌딩 12층 주제 : 공연권 제한 폐지 및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 2) 저작권 상생협의체 –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스마트폰 관련 협의체 참석
	홈페이지	http://www.kapp.or.kr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7 서원빌딩 3층 전화. 02)3270-5900 팩스. 02)711-9735

(3)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단체명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FKMP)
설립연도	1988년
단체연혁	1988년 6월 법인 설립 198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접권관리단체(판매음반방송사용보상금 관리 단체)로 지정 200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 허가 2002년 12월 연합회소식 '창간호' 발간 및 배포 2008년 1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로 법인명 변경 2008년 1월 홈페이지 개편(www.fkmp.kr) 2008년 9월 음실련회보 "음실련소식" 발간 2008년 3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08년 10월 사무실 이전(강서구 염창동) 2008년 11월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콘서트 공연 개최 2009년 9월 공연보상청구권 관리단체 지정 2009년 12월 한국음악실연자대상시상식 개최
설립목적/기능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강화 등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음악실연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 옹호사업 2. 국내외 음악실연에 관한 조사·연구 3. 국내외 음악문화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4. 음악실연자의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직업능력 개발 및 활동지원 5. 음악실연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발굴 포상 6.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신탁관리업무 7. 저작권관련 법령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수령 및 분배업무 8.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실연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사업 9.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10. 기타 음실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9 주요 활동	활동 내역	1.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일 자: 2008년 8월 ~ 2009년 3월 31일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분배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발 회원의 개별 등록곡 열람 및 실연자 개인의 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분배내역 확인 2. 음실련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 개최 일 자: 2009년 6월 22~23일 장 소: 상천유스호스텔(경기가평) 3. 분배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일 자: 2009년 7월 31일 장 소: 도레미빌딩 회의실(5층) 4. 음악실연자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지상파 방송사,라디오방송사,유관단체회보에 캠페인 진행 저작권접권 홍보포스터 배포 및 실연자권리찾기캠페인 홍보 5. 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 회원들이 신규로 접수한 곡에 대해 검증 및 등록 실연곡 검증 음악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등록 및 보완 6.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저작권접권 단체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업내용 소개
	발행물 목록	1. 2009 한국음악실연자대상시상식 진행 일자: 2009년 7월 31일 장소: 국립국악원 예약당 수상자 : 가수-송대관, 연주-김동석, 국악-묵계월, 순수음악-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진 : M.C-이상벽, 연주-김춘광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목관5중주단, 황용주, 김영임, 박상민, 김용임, 이자연, 배일호, 김동석, 송대관 1. 음실련소식(11호) 음실련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회원인터뷰- 박인수, 김영임, 인순이, 김원용 저작권 이슈- 국제조약가입에 따른 기대와 전망 2. 음실련 소식(12호) 회원인터뷰- 신영희, 김세환, 김동규, 송태호 저작권접권 논문- 노래방과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접권 논문- 국제조약상 음악실연자의 보호 등 다수 3. 음실련 20년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20년사 정리 대중음악 가창,연주,국악,순수음악분야 근현대사 정리 저작권접권 논문 등 다수 4. 대한민국연주자 저자 김인배 우리나라 대중연주분야 근 현대사 정리 5. 근현대주요녹음실 및 레코딩뮤지션들의 시대별 활동 동현황 저자 음실련 주요녹음실 및 연주인들의 시대별 계보 정리

2009 연구 내역	기타	1. 음악실연자 체육대회 개최 일자: 2009년 5월 12일 장소: 목동운동장
		2. 실연자권리찾기캠페인(저작권접권 홍보) 진행 홍보매체 : 라디오방송사, 원음방송, 광주원음방송, 전주교통방송 홍보내용 : 저작권접권 홍보 및 실연자 권리찾기 캠페인 홍보
		3. 세계저작권접권단체협의회(SCAPR) 가입 추진 실연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2010년 SCAPR가입을 목표로 실무 협의
		4. 일본저작권접권관리단체(CPRA) 교류 업무 추진 한·일 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상호관리를 위한 업무교류 추진 2010년 상호관리협약 체결을 위한 신뢰구축 및 정보교환
		홈페이지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 7층 전화. 02)745-8286	

(4) 한국방송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방송작가협회
	(영문) Korea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62년 2월
단체연혁	1962년 2월 15일 한국방송극작가협회 창설(초대 이사장 이서구 선출) 1969년 9월 18일 국제작가조합(WG)에 가입 1970년 2월 28일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 등록필(등록번호 270호) 1988년 4월 2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598호) 1988년 5월 14일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개원(초대 원장 이상현) 1988년 9월 20일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허가 취득(허가번호 26) 2008년 1월 15일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개관 2008년 2월 22일 임원 개선 임시 총회 - 김옥영 이사장 당선
설립목적/기능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방송 문예의 향상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작가 저작권 신탁 관리 2. 월간지 '방송작가' 등의 도서 출판 3. 외국의 방송작가 기구 또는 문화관계 인사와의 교류 4. 회원 복지 사업 5. 회원 및 후진양성을 위한 연수 등 교육사업
2009 연 구 내 역	발행물 목록 기타
	〈방송작가〉(월간 연12회 발간) Contents 여기 이 作家 作家 in 作家 Special Theme 이슈 앤 현장 방송작가 반세기 연출노트 프로그램 집필기 협회소식 해외통신 時代共感 Old & New 하이힐 생명보험 상식 저작권 상식 편집자의 말

홈페이지	http://www.ktrwa.or.kr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401호 전화: 02)782-1696

(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문) Korean Society of Authors
설립연도	1984년 3월
단체연혁	1984년 5월 19일 발기인회 소집, '한국저작권협회' 설립 1988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비영리 사단법인 정식출범 1989년 3월 16일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1994년 12월 15일 CISAC(세계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 가입 2008년 12월 23일 제10대 권대우 회장 취임
설립목적/기능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시, 소설, 수필, 논문, 희곡 등의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어 저작권자가 계약상 피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 연 구 내 역	활동내역 〈세미나 및 포럼〉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5주년 기념세미나-‘새로운 시대 저작권의 효율적 실현’ 일자 : 2009년 5월 19일(화) 장소 : 서울 중구 연세 빌딩 대회의실 주제 : 미분배 교과서 보상금 분배/국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미국 저작권 단체(CCC)운영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발행물 목록 〈저작권(격월간 연2회 발간)〉 1. 봄 · 여름호, 가을 · 겨울호 협회소식, 권두칼럼, 저작권행사, 저작권 판례, 저작권 시론, 회원동정, 회원신간, 저작권 Q&A, KOSA주요업무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korea.org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10 올림픽아센터 1020호

(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문)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54년 5월 (법인 : 1999년 12월 31일)
단체연혁	195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 1962년 7월 문화 예술단체 통합정책에 따라 (사)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분과위원회로 재창립 1992년 5월 영협정관개정으로 (사)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로 개칭 1980년 당해연도의 최우수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시상하는 '한국시나리오대상' 사업 시작 1992년 7월 협회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 개원 2001년 9월 저작권신탁관리허가 취득하고 2002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정착 및 '저작권신탁관리 및 대리중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 2002년 3월 (사)저작권단체연합회에 가입
설립목적/기능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시나리오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나리오저작물의 제반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주요내역	1. 부설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안성기 초청 토요일특강 일자 : 2009년 8월 22일(토) 장소 : 교육원 제1강의실 주제 : 영화시나리오와 영화배우 

2009 주요내역	활동내역	2. 역시 단편 시나리오 공모 마감: 2009년 6월 30일 고료: 100만원 시상식: 2009년 9월 9일 주최: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기타	부설 영상작가 전문교육원 제 33기, 34기 수료
	홈페이지	http://www.scenario.or.kr
	연락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8-1 캐피탈빌딩 202호 전화. 02)2275-0566

(7)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영문)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설립연도	2000년 7월
단체연혁	2000년 6월 19일 발기위원회, 설립 총회, 설립 이사회 개최 2000년 6월 19일 초대 이사장 취임(이기수) 200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195호) 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4호) 2003년 7월 27일 제2대 이사장 취임(이기수) 2003년 10월 17일 저작재산권자 단체 지정(문화관광부) 2004년 10월 1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정회원 가입 2006년 7월 27일 제3대 이사장 취임(조동성) 200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명칭 변경 2008년 3월 13일 학교교육목적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7월 27일 제4대 이사장 취임(조동성) 2009년 11월 2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출범
설립목적/기능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특정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이용자가 개개인의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가 적법, 신속, 간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2000년 7월 1일자로 설립되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창작을 가능케 하고 출판권자에게는 출판활동의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기도 하며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 주요 활동	〈교과용도서보상금 관련자 교육〉 1.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저작권위원회와 공동주관) 일자 : 2009년 6월 19일(금) ~ 2009년 6월 20일(토) 장소 : 라마다프라자(제주시 삼도동 소재) 주제 : 교과서 집필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실무 및 사례 2. 교과용도서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일자 : 2009년 6월 24일(수) 장소 :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역 소재) 주제 :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이해 및 실무

2009 주요 활동	활동 내역	〈세미나 및 포럼〉 1. 저작권 세미나 일자 : 2009년 4월 3일(금)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주제 :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결정방안(어문저작물 중심으로) 2. 복사사용료 분배를 위한 포럼 가. 1차 일자 : 2009년 3월 27일(금) 장소 : 뉴서울호텔(태평로 소재) 주제 : 복사사용료 분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분배 방안 마련 나. 2차 일자 : 2009년 5월 28일(목)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 복사사용료 분배 방안 마련 3. 저작권 선진화포럼 세미나 일자 : 2009년 11월 2일(월)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제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역사와 운영실태 /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발행물 목록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소식지(하반기부터 분기 1회)〉 1. 1호(7월) ○ 저작권법 개정안 비판 ○ 북토피아 사태로 본 전자책 저작권 보호 ○ 수업목적보상금 ○ 복사이용허락사업, 전자책 신탁사업 ○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안내 및 도서관보상금 현황 ○ 협회 소식 및 관련단체 동정, 보상금 분배공고 2. 2호(10월) ○ 저작권선진화방안 포럼 ○ 구글 북서치 ○ 북토피아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와 한국출판콘텐츠 출범 ○ 어문저작물 보호 현장 ○ 복사실태조사 추진 및 복사사용료 분배 ○ 교과용도서보상금 권리자 찾기 ○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안내 ○ 협회 소식 및 관련단체 동정, 보상금 분배공고

	기타	〈연구용역 보고서〉 1. 저작권사용료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 : 2009년 7월 ~ 2009년 8월 주제 : 시험지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1-4 대한빌딩 4층 전화. 02)2608-2036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문)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4년 2월
단체연혁	1994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창립총회 2000년 스크린쿼터감시단 분리 독립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LAPF) 가입 2004년 제1회 한·중·일 프로듀서 교류 및 포럼 개최(~2006) 2005년 문화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2007년 한국영화산업노조와 산별교섭 조인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필름과 MOU 체결 2007년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창립선언 및 총회(~현재) 2009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온라인불법복제 관련 합의
설립목적/기능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994년에 창립한 한국 영화 현역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한국 영화의 질적 성장과 세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와 부가판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산업안정화와 제작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마련 중이다.
2009 연도 내 주요 활동	활동내역
	발행물 목록
홈페이지	1. 온라인상 불법복제 관련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합의 2. 공동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모니터링, 다운로드 채증 3. 제4회 APN(Asia-Pacific Producers Network) 컨퍼런스 4. 씨네이알피시스템 운영
	2009 모니터링 연차 보고서
홈페이지	http://www.kfpa.net
연락처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7-9번지 보아스빌딩 503호 전화. 02)2267-9983

(9) 한국영상산업협회

단체명		(한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영문) Korea Movie and Video Industry Association (KMVIA)
설립연도		1999년 8월 4일
단체연혁		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자 협의회 1차 회의 1999년 (사)한국영상협회 법인설립허가 2003년 비디오(DVD)연감 발행(격년발행) 2005년 (사)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2006년 감상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업무 시행 2007년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참여 2009년 굿다운로더 캠페인 운동본부 지원 및 운영위원 참여
설립목적/기능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영화)의 저작권리자인 투자·배급사 및 홈 엔터테인먼트 제작·배급사들이 주요회원으로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기존 한국 영상음반협회에서 영상물의 차별성과 특수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영상분야를 분리하여 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자 협의회로 출범하였으며, 1999년 4월 20일 한국비디오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비디오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영상저작물(영화)의 권리보호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000년 (사)한국영상협회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국내 영상저작물(영화)의 보호와 발전,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는 유일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영화)에 대한 공연권리를 신탁관리하며, 저작권리의 보호와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도내역	활동내역	〈순회특강〉 대학교 관련학과 영화 저작권 특강 일자 : 2009년 9월 17일(목)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 주제 : 영화산업과 저작권 보호 특강
	기타	1. 저작권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단속활동 2. 영화인협의회를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활동 3. 굿다운로더캠페인 지원   
홈페이지		http://www.kmva.or.kr
연락처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63 미진빌딩 2층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전화. 02)3452-1001

(1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단체명		(한글)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영문)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Association
설립연도		2001년 8월 10일
단체연혁		2001년 8월 10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1501호 2002년 2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2002년 6월 16일 제 1대 송기운 이사장 취임 2002년 8월 31일 SBS 전국네트워크 지역민간방송사 특약체결 2003년 12월 5일 KBS MBC SBS와 방송권 특약체결 2004년 2월 28일 EBS와 방송권 특약체결 2004년 12월 2일 KBS MBC SBS 복제권 특약체결 2005년 6월 16일 제 2대 송기운 이사장 취임 200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창간 2006년 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504호로 이전 2006년 4월 13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조정48 실연의 방송이용에 따른 분쟁 2006년 6월 26일 KBS MBC SBS 전송권·미주지역 사용료·2차사용료 특약체결 2006년 9월 27일 일본 CPRA와 민방련 방문 2006년 11월 15일 방송실연자협동서 I 발간-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방송에 참여하는 실연자를 중심으로) 2007년 2월 9일 홈페이지 개설 (www.kbpa.kr) 2007년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4호로 이전 2007년 4월 28일 김기복 부이사장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 공로상 표창 2007년 6월 20일 독일 GVL 방문 2007년 10월 21일 영국 BECS 방문 2007년 11월 13일 프랑스 ADAMI와 스위스 WIPO 방문 2007년 12월 10일 방송실연자협동서 II 발간-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2007년 12월 31일 (주)온미디어 만화채널 투니버스 특약체결 2007년 12월 31일 KBS MBC SBS 특약체결-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 2008년 4월 16일 (주)재능스스로방송 특약체결 2008년 4월 25일 대원방송(주) 3개 채널 특약체결 2008년 4월 25일 중앙애니메이션(유) 특약체결 2008년 8월 21일 일본 CPRA와 PRE 방문 2008년 10월 13일 (주)온미디어 6개 채널 특약체결 2008년 10월 14일 (주)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특약체결

2009 연구 내용	단체연혁	2008년 10월 20일 (주)MBC드라마넷 2개 채널 특약체결 2008년 11월 1일 (주)씨제이미디어 8개 채널 특약체결 2009년 2월 9일 KBS MBC SBS 대만지역 사용료 특약체결 2009년 2월 11일 (주)엠넷미디어 2개 채널 특약체결 2009년 3월 20일 대의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 2009년 3월 31일 (주)엠티브이네트웍스코리아 특약체결 2009년 4월 30일 제1기 대의원 선출 2009년 5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 3기 임원 선출 2009년 6월 15일 제 3대 김기복 이사장 취임 2009년 10월 1일 (주)씨유미디어 3개 채널 특약체결 2009년 10월 10일 방송실연자협도서 Ⅲ 발간-저작권제도와 방송콘텐츠의 권리보호 연구 2009년 11월 6일 공공채널(KTV, NATV, OUN) 특약체결 2009년 11월 11일 (유)중앙미디어큐채널 특약체결 2009년 11월 31일 (주)중앙방송 특약체결 2009년 12월 15일 OBS 경인TV(주) 특약체결
	설립목적/기능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저작권접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으로 1999년 7월 1일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방송실연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권리확보 및 권리신장을 위해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설립했고, 2003년부터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해당 회원에게 분배를 하는 신탁 업무를 하고 있다.
2009 연구 내용	활동 내역	〈세미나 및 포럼〉 이호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그 해설을 중심으로 

2009 연구 내용	발행물 목록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14호부터 17호까지 분기별 발행 - 주요내용 1. 정기총회 개최 2. 정관개정- 대의원 제도 도입 3. 제3대 임원선출 및 신임 김기복 이사장 선출 4. 2009년 6월 15일 신임 이사장 취임 5. 2009년 10월 대의원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 〈방송실연자협회 도서 Ⅲ〉 - 저작권제도와 방송콘텐츠의 권리보호 연구 (2009년 10월 발행)
	홈페이지	http://www.kbpa.kr
	연락처	150-9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7 리버타워 604호 전화. 02)784-7802 팩스. 02)784-7805 메일. kbpa@kbpa.kr

(11)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체명	(한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문)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설립연도	2009년 5월	
단체연혁	2008년 8월 공공기관 2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2009년 1월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국회의결 2009년 2월 6일 개정법률 고시 2009년 2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 2009년 4월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초대 이재웅 원장 취임 2009년 5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2009년 6월 9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 2009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신화 창조 프로젝트 발표 2009년 11월 9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소(역삼동) 2009년 12월 28일 기능 중심 조직으로 개편(6본부 23개팀)	
설립목적/기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5월 7일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에 의거하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킬러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공공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위탁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 연구내역	발행물 목록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연구(2009년 5월 발간)
홈페이지	http://www.kocca.kr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전화, 02)3153-1114	

(12)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체명	(한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문) Korea Press Foundation(KPF)	
설립연도	2010년 2월 1일	
단체연혁	2010년 2월 1일 '한국언론재단'(1999), '신문발전위원회'(2005), '신문유통원'(2006) 등 3단체를 통합,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출범	
설립목적/기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2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에 의하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3개 기구의 통합으로 출범 하였으며, 미디어산업 지원기구로서 디지털시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뉴스 유통 인프라 구축, 읽기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3. 신문법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영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외 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9 연구내역	발행물 목록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뉴스 이용 매뉴얼)
홈페이지	http://www.newskorea.or.kr http://www.kpf.or.kr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 33번지 프레스센터	

(13)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단체명	(한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영문)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설립연도	2000년 5월
단체 연혁	1993년 3월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위원회 설립 2000년 5월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설립 - 김정 초대 회장 선임 2000년 11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식지 '소프트웨어저작권' 창간 2001년 6월 SRC(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사업 실시 2002년 3월 SCS(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증제) 실시 2002년 11월 온라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서비스 '체크(Check)' 실시 2003년 4월 전국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 실시 2004년 2월 제5회 정기총회 - 최한규 회장 선임 2004년 7월 SPC 회장단 미무역대표부(USTR) 방문 통상 현안 논의 2005년 3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2005년 4월 온라인 무료 소프트웨어 점검 서비스 'Click' 오픈 2005년 6월 SM(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 2005년 9월 소프트웨어발전센터 설립 2006년 3월 영국 FAST(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와 MOU 체결 2006년 3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자격검정 실시 2006년 10월 소프트웨어비즈니스센터 오픈 2006년 11월 '제1회 SW 저작권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2007년 2월 SDC(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비스) 실시 2007년 4월 초등학교 대상 '정품이 흐르는 교실' 실시 2007년 11월 중국 CSA(China Software Alliance) 및 일본ACCS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와 공동 MOU 체결 2008년 2월 제9회 정기총회 개최 - 김영만 회장 선임 2008년 7월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1급 자격검정 실시 2009년 6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개최 2009년 7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서약식 실시-구로디지털단지 2009년 11월 청와대 IT 특보 초청 특별 세미나 개최
설립목적/기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단체다. SW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SW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SW 가치 인식 제고, SW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SW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93년 'SW저작권 보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설립, 그 후 2000년 5월 현재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SW 자산관리 컨설팅, SW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 SW 저작권 보호 활동 및 불법복제 조사 활동, 교육·홍보·세미나·캠페인 개최 및 간행물 발간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 연 구 내 역	활동 내역	〈순회특강〉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 일자 : 2009년 1월 ~ 12월 장소 : 교육 신청 업체 주제 :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교육 2. 초등학교 대상 저작권 교육 '정품이 흐르는 교실' 일자 : 2009년 1월 ~ 12월 장소 : 교육 신청 학교 주제 : 저작권 개념 및 실생활 속에서의 저작권 위반 사례 3. 전국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저작권 방문 교육 일자 : 2009년 9월 ~ 12월 장소 : 교육 신청 업체 주제 : 저작권 개념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세미나 및 포럼〉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일자 : 2009년 6월 29일(월) 장소 : 서울시 여의도 안철수연구소 주제 : SW 업계 현장 순시/ SW 산업 및 저작권 보호 현황 소개 및 간담회 2. SW 스트리밍 세미나 일자 : 2009년 7월 14일(화) 장소 :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센터빌딩 주제 : SW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SW 저작권 침해 3. 하이테크정보 조찬 세미나 일자 : 2009년 9월 24일(목) 장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주제 : IT와 SW의 사회적 기능 재조명 4. 2009년 SW 자산관리 세미나 일자 : 2009년 10월 13일(화) 장소 :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주제 : SW 자산관리 개념 설명/ SW 라이선스 최신 동향/ 저작권 관련 정부 정책 설명 5. SW 라이선스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 일자 : 2009년 10월 23일(금) 장소 : 서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SW 라이선스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 6. 청와대 IT 특보 초청 특별 세미나 일자 : 2009년 11월 24일(화) 장소 : 서울 프라자호텔 주제 : IT, 그 영원한 숙제

2009 연구 실적	발행물 목록	1. 협회보 'SW 저작권'(계간 년4회 발간) - 협회 및 회원사 뉴스, SPC 주요 서비스 소개, IT 및 SW 최신동향 등 2. SW 저작권 상담사례집 - 기업이 알아야 할 100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2집 신규 발간 - 기업이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1집 수정 2쇄 발간 3. 소프트웨어와 법률 발간 -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5호 발간 : 저작권법 개정안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6호 발간 : 한·미 FTA, 한EU FTA, 저작권법 개정안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기타	1. AP&IPR 캠페인 기간 : 2009년 6월 ~ 12월 내용 : 산업군별 IPR 캠페인 진행(잡지광고 및 칼럼, DM 발송, 이벤트 등) 목적 : 주요 일간지 및 방송을 통한 문제 제기로 AP&IPR 이슈 부각, 중소 저작권사의 권익 보호 2. WORLD IT SHOW 2009 참가 기간 : 2009년 6월 17일 ~ 20일 내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소개 3. 소년보호교육기관 지원 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1월 내용 : 법무부와 공동 진행, 자립생활관에 PC 기증 및 중·고등학생용 저작권 만화책 제작 목적 : 올바른 저작권 인식 개선, 건전한 저작권 문화 형성 4. 경찰청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교육동영상 제작 기간 : 2009년 10월 ~ 2010년 1월 내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이유 및 사법기관의 단속 지원 활동 교육 5. SW 접근성 개발 기간 : 2009년 10월 ~ 2010년 2월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 진행, 회원사 등의 SW에 접근성 적용 지원 6. 온라인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 기간 : 2009년 10월 ~ 11월 내용 : NHN에서 운영하는 해피빈과 공동 진행, 온라인 SW 불법복제 예방 메시지 전달
	홈페이지	http://www.spc.or.kr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4-14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6, 7층 전화: 02)567-2567

2009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1. 박사학위 논문

연번	저자명	논문명	학위사항
1	신봉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작권관리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2	신찬호	著作物の 公正利用에 관한 研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3	심동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4	이규홍	著作権法上 技術的 保護措置의 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 憲法的 限界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5	이지향	국내 뮤지컬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실태조사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예술경영전공
6	전성태	저작권 간접침해의 규율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7	정필운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저작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8	조원영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불법복제가 정보재의 품질결정에 미치는 영향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전공
9	현지원	향기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 관련 서적

연번	구분	표지	저자	서명	출판사
1	기본서		서달주	2009년 개정법 까지 저작권법, 제2판	박문각
2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4판 증보판	세창출판사
3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4	연구서		김윤명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5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 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개정판	커뮤니케이션 북스
6			박덕영 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7			배대헌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진원사
8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위원회

9	연구서		최영목 외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10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1			방송통신 위원회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분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방송통신 위원회
12			한국 콘텐츠 진흥원	복미 저작권 보호와 합법 유통 활성화	한국콘텐츠 진흥원
13	교양서		김기태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 저작권 상담사례 200선	이채
14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 출판부
15			오익재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성안당
16			한정훈	저작권 오디세이 2009 : 57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디지털 저작권 해법	전자신문사

17	교육용 교재		국립중앙 도서관 사서능력 발전과	전자출판과 저작권과정	국립중앙 도서관
18			사법 연수원	저작권법	사법연수원
19	시험 대비 교재		신정아	저작권법의 정석, 제3판	한빛지적 소유권센터
20			황은정	저작권법 연습	한빛지적 소유권센터
21	세미나 자료		한국방송 영상산업 진흥원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참여주체별 입장 분석 및 기술개발 동향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22			한국출판 학회	출판저작권 수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 가?	한국출판학회
23	법령집		임승용	2009 개정 저작권법과 국제협약 : 음악 산업 · 영화 및 비디오 · 국제협약	중앙사

주요 기관 주소록

구분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	팩스
주 요 기 관	문화체육 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110-360)	www.mcst.go.kr	02-3704-9114	02-3704-9154
	한국저작권 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번지 서울강남우체국 6~7층(135-240)	www.copyright .or.kr	02-2660-0000	02-2660-0019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2번지 문화콘텐츠센터 12층(121-270)	www.kofoco.or.kr	02-3153-2700	02-3153-2708
	한국소프트웨 어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4-14 소프트웨어발전센 터 6,7층(135-280)	www.spc.or.kr	02-567-2567	02-567-2933
	한국저작권 법학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 504호 이상정 교수 연구실 (130-701)	없음	02-961-0741	02-961-0615
학 회	한중지적 재산권학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422호 박 영길 회장(138-953)	없음	02-413-7473	없음
	한국디지털 재산법학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제2법학관 510호 김병 일 교수 연구실(133-791)	www.digitallaw. .or.kr	02-2220-0981	02-2220-2784
	한국엔터테인 먼트법학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5층 엔터테 인먼트법학회 회장 변호사 홍승기(135-821)	www.kels.or.kr	02-501-4240	02-501-7831

학 회	한국정보 법학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김병일 교수(133-791)	www.kafil.or.kr	02-2220-0981	02-2220-2784
	한국인터넷 법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관 416호 최승원 교수(120-750)	www.itlaw.or.kr	02-3277-3503	02-3277-3503
신 탁 단 체	한국콘텐츠 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121-275)	www.kocca.kr	02-3153-1114	02-3153-1115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9 KOMCA빌딩(157-824)	www.komca.or.kr	02-2660-0400	02-2660-0401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7 서원빌딩 3층 (121-851)	www.kapp.or.kr	02-3270-5900	02-711-9735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 7층 (157-862)	www.fkmp.kr	02-745-8286	02-766-1034
	한국방송작가 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4층 (150-874)	www.ktrwa.or.kr	02-782-1696	02-783-3711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10 올림피아센터 1020호(135-935)	www. copyrightkorea. or.kr	02-508-0440	02-539-3993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1 캐피탈빌딩 202호 (100-273)	www.scenario.or.kr	02-2275-0566	02-2278-7202

신 탁 단 체	한국복사 전송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1-4 대한빌딩4층 (157-010)	www.copyright.or.kr	02-2608-2036	02-2608-2031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2-1 번지 2층(100-272)	www.kfpa.net	02-2267-9983	02-2267-9986
	한국영상 산업협회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 63 미진빌딩 2층(100-826)	www.kmva.or.kr	02-3452-1001	02-3452-1005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4호 (150-889)	www.kbpa.co.kr	02-784-7802	02-784-7805
	한국연론 재단	서울시 중구 태평로 33 프 레스센터 12층(100-750)	www.kpf.or.kr	02-2001-7114	02-720-8419

저작권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

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② 삭제<2009.4.22>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

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 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4.22]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절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

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4.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계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계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

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77조 (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권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권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저작권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87조 (저작권접권의 제한) ①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22>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제88조 (저작권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 (저작권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권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 (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

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권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

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 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4조 (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제119조 (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121조 삭제 <2009.4.22>

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

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 ④ 삭제 <2009.4.22>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송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 삭제<2009.4.22>

제135조 (저작권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142조 (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부칙 <제9785호, 2009. 7.3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09 저작권 연감 집필진

집필(외부)

오승중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팀장
정세영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김연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홍보팀 과장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최혜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관
각 저작권 유관 학회 및 신탁관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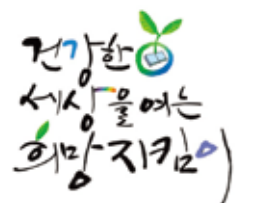
집필(내부)

김근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과장
김남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 선임
김시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 주임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현미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선임
남성현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주임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과장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과장
송희승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과장
신봉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 과장
이취주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상담팀
임광섭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선임
임기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과장
장승헌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 선임
정대용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과장
주자람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 주임
차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팀장
한효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홍보기획팀 주임
현영민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 팀장

기획 · 편집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
조문희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주임
박진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2009 저작권 연감

2010년 12월 20일 인쇄

2010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7층

전화 02-2660-0000 팩스 02-2660-0019

<http://www.copyright.or.kr>

인쇄 경성문화사

ISBN 978-89-6120-086-8 03010